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러시아 편 -

2017. 12.

---

연구총괄 신상화 부연구위원

연구자 노영에 전문연구원  
양지영 연구원

# 목 차

제1편 개관 .....	1
I. 일반 개황 .....	1
II. 경제 개황 .....	4
1. 주요 경제지표 .....	4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	6
3. 외국인 투자 동향 .....	8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	12
IV. 자유무역협정 현황 .....	15
제2편 통관제도 .....	20
I. 통관행정조직 .....	20
1. 통관행정 관련 조직 .....	20
가. 러시아의 통관행정조직 .....	20
나. 기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조직 .....	26
2. 통관 관련 법률 .....	27
가. 「관세법」 .....	27
나. 관세규정 개정 관련 .....	28
II. 과세가격과 납부세액산정 .....	30
1. 과세가격 .....	30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	30

2.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35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35
나. 기타 비용 .....	36
<b>Ⅲ.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b>	<b>39</b>
1. 품목분류 .....	39
가. 품목분류 체계 .....	39
나. 품목분류 사전결정(Preliminary Decision) .....	45
다. 미완성·미완성 형태, 미조립, 분해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	48
2. 관세율제도 .....	51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종류 및 형태 .....	51
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분포 .....	57
다.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종류 및 형태 .....	61
<b>Ⅳ. 감면 및 환급제도 .....</b>	<b>64</b>
1. 산업지원 및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관세의 감면 .....	64
2.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 및 환급 .....	66
가. 「유라시아경제연합 신관세법」상 관세의 감면 및 환급과 적용 요건 .....	66
나. 「러시아 신관세법」상 관세 환급 .....	81
<b>Ⅴ. 원산지 제도 .....</b>	<b>83</b>
1. 개요 .....	83
2. 특혜원산지 제도 .....	84
가. FTA에 따른 특혜관세 .....	84
나. 일반특혜관세 .....	85
3. 비특혜원산지 제도 .....	87
4. 원산지 사전결정 및 증명서 .....	88
가. 원산지 사전결정 .....	88
나. 원산지증명서 .....	89
<b>Ⅵ. 보세제도 .....</b>	<b>94</b>
1. 보세창고 .....	94
2. 보세운송 .....	96

<b>VII. 수출입 규제</b> .....	<b>99</b>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	99
가.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수출입 금지 물품 .....	99
나.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수출입 제한 물품 .....	100
다. EAEU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 .....	100
라. EAEU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 .....	101
마. 일부 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 금지 .....	106
바. 관세할당 .....	108
사. 무역구제 .....	115
2. 인증제도 .....	117
가. CU 인증 .....	118
나. 의료기기 인증 .....	123
다. 화장품 인증 .....	125
3. 기타 러시아 정부기관 인증 .....	127
4. 라벨링 .....	129
<b>VIII. AEO 제도</b> .....	<b>133</b>
1. 개요 .....	133
2. AEO 신청 조건 및 절차 .....	134
3. AEO 혜택 .....	135
<b>IX. 행정구제제도</b> .....	<b>137</b>
1. 개요 .....	137
2. 이의신청 .....	138
가. 이의신청 및 신청조건 .....	138
나. 이의제기 절차 .....	140
3. 항소절차(Appellate Procedure) .....	141
4. 간소화된 이의제기 절차 .....	143
<b>X. 벌칙</b> .....	<b>144</b>
1. 개요 .....	144
2. 「러시아 연방형법」상 관세 관련 형벌 .....	146

가. 제22장 경제활동 영역의 범죄 (Crimes in the Sphere of Economic Activity) .....	146
나. 제25장 사람의 건강과 공공도덕에 대한 죄 (Crimes Against Human Health and Public Morality) .....	150
<b>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b>	<b>152</b>
<b>I. 수입통관절차 .....</b>	<b>152</b>
1. 수입통관절차 .....	152
가. 서류준비 .....	152
나. 수입신고 .....	154
다.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	156
라. 세금납부 및 반출 .....	157
2. 기타 수입통관 .....	159
가. 개인용품 .....	159
나. 특송물품 .....	160
다. 항공운송 .....	161
<b>II. 수출통관절차 .....</b>	<b>163</b>
1. 수출 전 준비 .....	163
2. 수출통관절차 .....	165
가. 수출신고 및 화물검사 .....	165
나. 수출세 납부 및 선적 .....	167
3. 기타 수출통관 관련 절차 .....	170
<b>참고문헌 .....</b>	<b>172</b>

# 표 목차

## 제1편

〈표 1-Ⅱ-1〉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6
〈표 1-Ⅱ-2〉 러시아의 수출입 현황	6
〈표 1-Ⅱ-3〉 러시아 주요 국가별 수출액	7
〈표 1-Ⅱ-4〉 러시아 주요 국가별 수입액	8
〈표 1-Ⅱ-5〉 러시아 해외투자 현황(Outflows)	9
〈표 1-Ⅱ-6〉 러시아 해외투자 현황(Inflows)	10
〈표 1-Ⅱ-7〉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투자 동향	11
〈표 1-Ⅱ-8〉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2016)	11
〈표 1-Ⅲ-1〉 우리나라 대 러시아 교역액	12
〈표 1-Ⅲ-2〉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13
〈표 1-Ⅲ-3〉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수입품목	14
〈표 1-Ⅳ-1〉 러시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19

## 제2편

〈표 2-Ⅱ-1〉 통관수수료	37
〈표 2-Ⅱ-2〉 세관 호송 비용	37
〈표 2-Ⅱ-3〉 창고 보관료	38
〈표 2-Ⅲ-1〉 러시아의 관세 구분	52
〈표 2-Ⅲ-2〉 러시아의 수입대상국 분류에 따른 개발도상국 명단	53
〈표 2-Ⅲ-3〉 러시아의 수입대상국 분류에 따른 최빈국 명단	55
〈표 2-Ⅲ-4〉 러시아의 최종 양허세율 이행 계획(2012~2020)	57
〈표 2-Ⅲ-5〉 러시아의 2012~2016년 MFN 세율 구조	58

〈표 2-Ⅲ-6〉 2016년 러시아의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분포 .....	59
〈표 2-Ⅲ-7〉 품목별 관세율 수준 .....	60
〈표 2-Ⅲ-8〉 수출세 부과 예시 .....	62
〈표 2-Ⅳ-1〉 「EAEU 신관세법」 제4장 및 제5장상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통관절차 규정 .....	66
〈표 2-V-1〉 원산지증명서 종류 .....	90
〈표 2-V-2〉 원산지증명서 유형별 필요서류 .....	92
〈표 2-VII-1〉 EAEU 수출입 금지 물품 .....	100
〈표 2-VII-2〉 EAEU 수입 제한 물품 .....	102
〈표 2-VII-3〉 EAEU 수출 제한 물품 .....	104
〈표 2-VII-4〉 일부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 금지 식품 .....	106
〈표 2-VII-5〉 러시아의 대 터키 수입 금지 물품 .....	107
〈표 2-VII-6〉 2018년 유라시아연합 할당 적용 대상 물품 .....	109
〈표 2-VII-7〉 2017년 반덤핑 적용 현황 .....	116
〈표 2-VII-8〉 GOST-R 및 CU 인증 비교 .....	118
〈표 2-VII-9〉 CU 인증 취득 품목 .....	120
〈표 2-VIII-1〉 러시아 AEO 특징 .....	136

### 제3편

〈표 3-I-1〉 전자제출이 가능한 서류 .....	154
〈표 3-I-2〉 러시아 통관 지연 요인 .....	159

# 그림 목차

## 제1편

[그림 1-Ⅱ-1] 2012~2016년 연평균 환율 추이(RUB/USD) ..... 5

## 제2편

[그림 2-Ⅰ-1] 러시아 연방 관세청 조직도 ..... 24  
[그림 2-Ⅰ-2] 러시아 세관 조직도 ..... 25

[그림 2-Ⅲ-1] 우리나라 품목분류 예시(0901 11 0000) ..... 40  
[그림 2-Ⅲ-2] 러시아 TN VED 10단위 예시 ..... 40  
[그림 2-Ⅲ-3] 러시아 변경된 통일상품분류체계 확인 예시 ..... 42  
[그림 2-Ⅲ-4] 러시아 수입관세율 확인 예시 ..... 43  
[그림 2-Ⅲ-5] 러시아 수입규제 및 제세금 확인 예시 ..... 44  
[그림 2-Ⅲ-6] 러시아 사전결정 신청서 예시 ..... 47

[그림 2-Ⅴ-1]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조회 ..... 90  
[그림 2-Ⅴ-2]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 91

## 제3편

[그림 3-Ⅰ-1] 수입통관절차 ..... 152



# 제1편 개관

## I. 일반 개황

- 러시아(Russian Federation)는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음
  - 수도는 모스크바이며 주요 도시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카잔, 첼랴빈스크, 로스토프나도누, 우파,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등이 있음
  - 행정구역의 경우 21개 공화국(Republic), 9개 지방(Krai), 46개 주(Oblast), 1개 자치주(Autonomous Oblast), 4개 자치구(Autonomous Okrug), 2개 연방 특별시로 이루어짐<sup>1)</sup>
  
- 면적은 17,098,000km<sup>2</sup>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음
  -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겨울이 긴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음
  
- 러시아 인구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1.4억명임<sup>2)</sup>
  - 민족은 러시아인이 77.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타르인 3.7%, 우크라이나인 1.4% 등이 있음
  - 언어는 러시아어를 쓰고 있으며 문맹률은 0.3%임

---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러시아』 2013. 12

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6. 12,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isIframe=Y&menuid=007001003003&pagesize=10&boardtypeid=206&boardid=58199>(검색일자: 2017. 7. 15.)

## 2 제1편 개관

- 주요 종교로는 러시아 정교가 있으며 그 밖에 이슬람, 가톨릭, 유대교 등이 있음
- 대통령중심제이며 상원과 하원으로 된 내각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연방 중재재판소, 연방재판소로 구성된 사법기관이 있음
-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이며 여론조사기관 레바다(Levada)가 공개한 2017년 8월 기준 국정운영지지율은 83%임<sup>3)</sup>
  - 푸틴 대통령은 2012년부터 3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음
  - 2015년 9월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군사개입 이후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의회 연례연설을 통해 러시아 경제가 농업, 방산, IT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냄
- 2016년 9월의 총선거에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통합러시아당이 전체 의석의 76%를 획득함<sup>4)</sup>
  - 전체 450개의 의석 중에 343석, 공산당 42석, 자유민주당 39석, 정의러시아당 23석을 차지함
  - 하원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225석을 선출하는 데 지역구의 200곳이 넘는 곳을 여당이 차지함
- 2015년에 발족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로 구성됨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의 주도로 유럽연합 같은 연합체를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 부분이 국가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국제 사회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러시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sup>5)</sup>

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5\\_0000077425&cID=10101&pID=101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5_0000077425&cID=10101&pID=10100) (검색일자: 2017. 9. 1.)

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6. 12,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isIframe=Y&menuid=007001003003&pagesize=10&boardtypeid=206&boardid=58199>(검색일자: 2017. 7. 15.)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6. 12,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isIframe=Y&menuid=007001003003&pagesize=10&boardtypeid=206&boardid=58199>(검색일자: 2017. 7. 15.)

- 러시아는 자원 에너지가 주요한 사업으로 2015년 기준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의 경우 GDP의 27%, 재정의 43%, 수출의 63%을 차지함
- 2015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는 가스 생산에 관해 세계 2위를, 원유 생산은 세계 3위로 에너지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sup>6)</sup>
-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환율의 상승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함
- 국내 산업생산의 낮은 경쟁력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한 승용차류의 경우 자국 생산을 하지 못하거나 품질이 낮음

---

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6.12,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isIframe=Y&menuid=007001003003&pagesize=10&boardtypeid=206&boardid=58199>(검색일자: 2017. 7. 15.)

## II. 경제 개황

### 1 주요 경제지표

---

-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의 분쟁으로 2014년 초 시작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sup>7)</sup>
  - 러시아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EU는 2017년 7월이었던 경제제재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2018년 1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함<sup>8)</sup>
  
- 2015년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3.7%을 기록함
  - 2016년에 들어오면서 경제지표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2015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0.8%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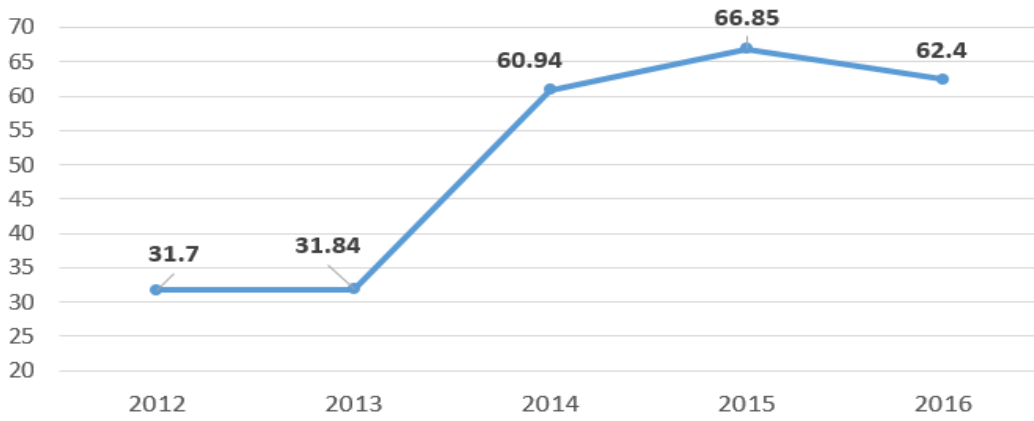
---

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6. 12,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isIframe=Y&menuid=007001003003&pagesize=10&boardtypeid=206&boardid=58199>(검색일자: 2017. 8. 15.)

8)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3/0200000000AKR2017062300760071.HTML?input=1195m>(검색일자: 2017. 8. 18.)

- 평균실업률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대의 수준을 유지함<sup>9)</sup>
  - 평균실업률이 유지되는 원인 중 하나로 외국노동자의 본국 귀환이 분석된 바 있음<sup>10)</sup>
  
-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2012년 4,865억달러, 2015년 3,198억달러로 감소한 뒤 소폭 증가하여 2016년에는 3,293억달러를 기록함
  
- 루블화 약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함
  - 식품의 수입 제재로 인해 국내 물가상승률이 2015년 15.5%까지 상승하였다가 2016년에 7.2%을 기록함
  
- 2012년 평균 환율이 1달러당 31.7루블이었으나 2015년 66.85루블까지 상승하여 수입품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됨

[그림 1-Ⅱ-1] 2012~2016년 연평균 환율 추이(RUB/USD)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검색일자: 2017. 9. 15.)

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6. 12,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isIframe=Y&menuid=007001003003&pagesize=10&boardtypeid=206&boardid=58199>(검색일자: 2017. 8. 15.)

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6. 12,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isIframe=Y&menuid=007001003003&pagesize=10&boardtypeid=206&boardid=58199>(검색일자: 2017. 8. 15.)

〈표 1-11-1〉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22,008	22,306	20,310	13,260	12,678
1인당 GDP(달러)	14,068	14,619	12,972	9,099	10,986
경제성장률(%)	3.6	1.3	0.7	-3.7	-0.8
물가상승률(%)	5.1	6.8	7.8	15.5	7.2
평균실업률(%)	5.7	5.6	5.2	5.6	5.8
외환보유액	4,865	4,696	3,381	3,198	3,293
환율(U\$1당)	31.70	31.84	60.94	66.85	62.4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검색일자: 2017. 9. 15.)

##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 2016년 기준으로 러시아 수출은 2,626억달러, 수입은 1,819억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은 21.2% 감소하고 수입은 1.4% 증가함

〈표 1-11-2〉 러시아의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012	5,246	9.7	3,160	11.0	2,086
2013	5,264	0.3	3,178	0.6	2,086
2014	4,921	-6.5	2,826	-11.1	2,095
2015	3,371	-31.5	1,794	-36.5	1,576
2016	2,656	-21.2	1,819	1.4	83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검색일자: 2017. 12. 20.)

□ 2016년 기준 러시아의 상위 5위 수출국은 네덜란드, 중국, 독일, 벨라루스, 이탈리아 순이며 우리나라는 7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1-3〉 러시아 주요 국가별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명	2015		2016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네덜란드	38,875	-42.6	29,244	-24.8
2	중국	28,515	-23.4	28,023	-1.7
3	독일	25,216	-31.5	21,102	-16.3
4	벨라루스	14,998	-22.1	13,952	-7.0
5	이탈리아	22,188	-37.8	11,922	-46.3
6	터키	19,453	-21.5	10,927	-43.8
7	한국	13,376	-24.3	10,059	-24.8
8	일본	14,416	-27.0	9,386	-34.9
9	미국	9,650	-7.8	7,535	-21.9
10	카자흐스탄	10,398	-24.2	7,369	-29.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검색일자: 2017. 9. 22.)

8 제1편 개관

- 2016년 기준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독일, 미국, 벨라루스 프랑스 순이며 우리나라는 8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1-4〉 러시아 주요 국가별 수입액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명	2015		2016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1	중국	34,549	-31.4	181,939	1.4
2	독일	20,183	-38.1	38,021	10.1
3	미국	11,049	-39.5	19,430	-3.7
4	벨라루스	8,373	-28.1	11,059	0.1
5	프랑스	5,876	-44.4	9,211	10.0
6	이탈리아	8,214	-34.9	8,607	46.5
7	일본	6,734	-37.9	7,844	-4.5
8	한국	4,535	-49.2	6,678	-0.8
9	폴란드	4,056	-42.1	5,116	12.8
10	우크라이나	5,607	-47.4	3,956	-2.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검색일자: 2017. 9. 22.)

### 3 외국인 투자 동향

- 러시아는 시장이 크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직접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서방의 제재와 원유 가격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FDI 투자액은 감소 추세임
- 2016년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377억달러로 2013년 1,936억달러 대비 23.87% 감소함<sup>11)</sup>

11) 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cbr.ru/eng/statistics/?Prtid=svs> (검색일자: 2017. 10. 22.)

- 2016년 기준 러시아의 주요 해외투자부문은 제조업(24.7%), 광산업(23.5%), 자동차 수리 도소매업(23.3%) 등임

〈표 1-11-5〉 러시아 해외투자 현황(Outflows)

(단위: 백만달러)

업종	연도			
	2013	2014	2015	2016
농업·어업	934	598	671	446
광산업	26,155	16,339	17,435	32,384
제조업	51,750	26,741	32,013	34,058
전기·가스 공급	2,831	3,251	1,120	1,143
건설업	5,771	4,812	2,078	1,983
자동차수리 도소매업	43,903	32,353	37,998	32,126
수송창고	2,899	3,607	2,262	3,697
숙박·음식서비스업	332	386	461	364
정보산업	5,305	3,072	2,466	1,701
금융업	31,102	31,625	18,714	14,124
부동산업	7,732	7,722	5,789	5,226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255	231	151	306
행정서비스업	488	833	203	216
헬스케어	446	341	139	132
엔터테인먼트	413	429	363	179
다른서비스활동	8,685	11,056	9,974	7,455
기타	3,388	2,599	1,275	1,667
총계	193,684	146,370	133,948	137,762

자료: 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cbr.ru/eng/statistics/?Prtid=svs>  
(검색일자: 2017. 10. 22.)

10 제1편 개관

- 2016년 기준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1,052억달러로 전년 대비 17% 감소함<sup>12)</sup>
  - 주요 해외직접투자 분야는 자동차수리 도소매업(28.9%), 제조업(27.7%), 금융업(10.2%) 순임

〈표 1-11-6〉 러시아 해외투자 현황(Inflows)

(단위: 백만달러)

업종	연도			
	2013	2014	2015	2016
농업·어업	314	628	401	587
광산업	19,054	11,794	5,946	10,080
제조업	35,256	25,568	25,174	29,174
전기·가스 공급	1,064	1,569	3,061	1,241
건설업	2,876	2,094	3,129	2,325
자동차수리 도소매업	23,362	29,113	34,001	30,426
수송창고	2,550	4,350	3,951	3,769
숙박·음식서비스업	146	293	350	285
정보산업	6,597	5,433	8,980	2,062
금융업	16,646	23,783	21,539	10,823
부동산업	6,004	8,552	5,450	4,826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80	152	61	291
행정서비스업	909	749	675	395
헬스케어	99	185	223	169
엔터테인먼트	383	287	513	218
다른서비스활동	5,632	7,186	12,318	6,821
기타	2,952	4,652	2,081	2,167
총계	124,465	124,338	127,095	105,223

자료: 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cbr.ru/eng/statistics/?Prtid=svs>  
(검색일자: 2017. 10. 22.)

12) 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cbr.ru/eng/statistics/?Prtid=svs>  
(검색일자: 2017. 10. 22.)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7개의 신규법인 외 신고 건수는 80건이 있으며 투자금액은 약 1억달러임
- 투자금액은 2015년 1억 7천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표 1-11-7〉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투자 동향

(단위: 건, 개, 백만달러)

연도	신고 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3	93	27	168	103	122
2014	92	21	135	120	114
2015	87	18	170	105	178
2016	80	17	153	103	1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자: 2017. 10. 29.)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순으로 투자금액이 유입되었음
- 제조업은 5천만달러, 광업은 1천 8백만달러, 농업은 약 1천만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

〈표 1-11-8〉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2016)

(단위: 건, 개, 천달러)

업종대분류	신고 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9	0	10,054	23	10,185
광업	6	1	18,315	6	18,278
제조업	25	2	90,451	22	50,887
도매 및 소매업	26	10	31,786	32	29,569
운수업	8	4	1,702	12	1,2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0	615	7	6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30	1	5
합계	80	17	152,953	103	110,8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자: 2017. 10. 29.)

###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의 수출은 47억달러, 수입은 86억달러로 무역 수지는 38억달러 적자임
- 2012년 이후 대러시아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수출이 약 100억달러, 수입은 약 156억달러를 기록함
- 2015년 기준 대 러시아 수출은 약 46억달러로 전년 대비 53.7% 감소하였음
- 대 러시아 무역적자는 2013년 기준 약 3억달러에서 2015년 약 66억달러로 증가함

〈표 1-Ⅲ-1〉 우리나라 대 러시아 교역액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금액	11,097	11,149	10,129	4,686	4,769
	증감률	7.7	0.5	-9.1	-53.7	1.8
수입	금액	11,354	11,496	15,669	11,308	8,641
	증감률	4.6	1.2	36.3	-27.8	-23.6
수지		-247	-346	-5,540	-6,622	-3,87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자: 2017. 12. 28.)

□ 2016년 기준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등임

○ 대 러시아 수출액은 2015년 대비 약 1.8% 증가함

〈표 1-Ⅲ-2〉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5		2016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차	938	-64.9	951	1.4
2	자동차부품	838	-39.6	728	-13.2
3	합성수지	242	-41.9	213	-12.0
4	플라스틱제품	130	-32.1	127	-2.0
5	고무제품	103	-50.5	124	20.2
6	철강판	130	-42.9	122	-6.3
7	기타기계류	89	17.2	120	35.5
8	레일 및 철구조물	28	-56.3	114	310.2
9	영상기기	162	-54.8	112	-30.8
10	건설광산기계	61	-80.2	111	80.8
총계		4,686	-53.7	4,769	1.8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자: 2017. 10. 20.)

- 2016년 기준 대 러시아 수입품목은 원유, 석유제품, 석탄, 천연가스 등으로 주로 에너지 관련 품목임
- 대 러시아 수입액은 2015년 대비 23.6% 감소하였으며, 10대 수입품목 중에 석탄, 합금철선철 및 고철, 곡실류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음

〈표 1-III-3〉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5		2016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원유	3,497	-17.8	1,951	-44.2
2	석유제품	2,271	-56.7	1,895	-16.6
3	석탄	1,672	2.5	1,727	3.3
4	천연가스	1,282	2.7	582	-54.6
5	합금철선철 및 고철	367	-42.1	373	1.7
6	어류	308	-7.1	300	-2.6
7	알루미늄	405	-28.7	293	-27.5
8	우라늄	300	20.5	234	-21.9
9	갑각류	207	27.1	205	-1.2
10	곡실류	84	41.3	184	118.9
총계		11,308	-27.8	8,641	-23.6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자: 2017. 10. 20.)

## IV. 자유무역협정 현황

- 러시아는 CIS 회원국(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을 대상으로 1994년 4월 양자 또는 다자간이 혼합된 유형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 CIS 회원국은 11개로 러시아·몰도바·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며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에 탈퇴하기도 하였으나 추후 재가입함
  
- 2000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에 타지키스탄이 참여한 EurAsEC(Eurasia Economic Community; 이하 EurAsEC)가 출범됨
  - 2007년 10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에 체결된 관세동맹(Customs Union) 조약에 따라 2010년 출범한 관세동맹이 EurAsEC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2014년 10월까지 존재하였음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2010년 1월 1일 관세동맹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7월 6일 통관 코드를 통합하고 3국 교역 물품에 대해 무통관을 실시하였음
  - 관세동맹은 3단계를 거쳐 설립되었음
    - 1단계(2009년 말까지): 각국 내의 비준과 조직 운영을 준비하는 준비단계
    - 2단계(2010년 상반기): 3개국 공통관세율을 도입하고 관세동맹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단계

## 16 제1편 개관

- 3단계(2010년 상반기 및 2011년 하반기): 세관 행정 및 통관 업무를 위해 2010년 4월 도입된 「관세법」 규정이 시행되며 관세동맹의 운용이 본격화되는 단계<sup>13)</sup>
- 2011년 7월 1일부터 역내 3국 간의 통관절차가 폐지됨<sup>14)</sup>
  
- 러시아는 3국 관세동맹과 별도로 2012년 새롭게 CIS 국가와의 FTA를 체결함
  - 새로운 CIS FTA는 기존의 11개국에서 4개국을 제외한 7개국과 체결되었으며 체결국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2012.9. 발효), 벨라루스(2012.9. 발효) 우크라이나(2012.9. 발효), 아르메니아(2012.10. 발효), 카자흐스탄(2012.12. 발효), 몰도바(2012.12. 발효), 키르기스스탄(2013.12. 발효)
  -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비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CIS 탈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2015년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3개국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을 출범시켰으며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게 되었음
  - 2014년 5월 29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EAEU 조약에 대한 서명이 완료됨
  - 아르메니아는 2015년 1월, 키르기스스탄은 2015년 8월에 유라시아연합 회원국이 되었음
  - EAEU는 공동의 행정, 사법, 은행 등을 출범시켜 2025년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 출범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EAEU는 기구운영을 위한 예산부담 및 의결권을 국가별로 배분하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CIS 체제와 차별화됨
  - 또한 CIS가 결정된 사안 준수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였다면 EAEU는 기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UN, WTO 등 국제기구에 등록되어있다는 차별점이 있음

13) 한국수출입은행,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과 우리의 협력방안』, 2017. 1

14) 한국수출입은행,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과 우리의 협력방안』, 2017. 1

- EAEU는 역내에서 4단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자 설립되었음<sup>15)</sup>
  - 1단계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동맹국과 공동경제구역을 통해 이행됨
  - 2단계는 자유로운 서비스의 이동으로, 2015년부터 EAEU에서 도입되어 2025년까지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3단계는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4단계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임
  
- 2016년 10월 베트남은 EAEU FTA 첫 체결국이 되었음
  - 2013년 3월 첫 협상이 시작된 후 8차례의 업무 협상 후 2015년 5월 29일 카자흐스탄에서 EAEU 회원국 및 베트남 총리가 FTA를 체결하게 되었음.
  - 거래품목 중 88%의 관세 인하를 합의하게 되었으며 합의 품목 중 59%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인하하고 그 밖의 29%는 5년에서 10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음
  - 베트남을 포함한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해 논의 중에 있으며 싱가포르와의 FTA를 위해 2016년 10월부터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였음<sup>16)</sup>
  
- EFTA와의 FTA는 2011년 1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 2014년 11월까지 7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고 뉴질랜드와의 FTA는 2011년 2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 2014년 11월까지 각 11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인하여 EFTA 및 뉴질랜드는 협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음
  
- 인도 및 이란은 각각 러시아와의 CECA 및 FTA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개시하였음
  - 이란의 경우 2014년 8월 및 9월에 협상 개시를 위해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음
  
- 터키와의 FTA는 터키 공군 F-16 전투기가 러시아 SU-24 폭격기를 격추한 여파로 인한 러시아와 터키 양국의 악화된 관계 속에서 FTA 추진이 중단되었음

15) 한국수출입은행,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과 우리의 협력방안』 2017. 1

16) 이재영·이철원·민지영, 『한국의 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투자 현황과 비즈니스환경 분석』, 2017. 5. 2

- 한국과 러시아는 2008년에 2차례에 걸쳐 FTA 체결을 추진한 바 있으나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협상이 좌초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2013년 5월 21일 5년 만에 한·러 FTA 재추진 의사를 밝힘
  - 한·러 FTA의 재추진은 한국이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됨
  
- 한·EAEU FTA의 경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의 대외무역 아카데미(RFTA)가 민간공동연구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sup>17)</sup>
  - 2015년 11월, 민간 차원에서 한국-EAEU 간 FTA 타당성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양측은 한-EAEU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2016년 8월에 발표하여 증명하였음
  - 2016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EAEU FTA 체결 관련 논의를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함
  - 2016년 10월 5일 모스크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주관으로 ‘한·EAEU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어 제1차 비공식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2015년부터 진행되었던 한-EAEU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토,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음
  - 2016년 1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협회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유라시아 경제포럼 2016’ 발표가 있었으며 이때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제2차 비공식 협의가 이루어짐
  - 2017년 4월 10일 한-EAEU 간 FTA를 통한 교역·투자,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제3차 정부 간 협의회가 있었으며 한국과 EAEU간 FT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향후 추진일정 등을 협의함
  - 한·EAEU FTA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확대는 물론 양측의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EAEU의 경우 통합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인증을 통합하는 부분과 HS Code 일치 부분이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는 등 제도 기반이 미비하여 단일시장으로서 접근하여 FTA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음

---

17) 이재영·이철원·민지영, 『한국의 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투자 현황과 비즈니스환경 분석』, 2017. 5. 2

□ EAEU의 구심점인 러시아의 재정적인 문제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제도 미비의 부분은 조속한 해결이 기대됨

〈표 1-IV-1〉 러시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기체결된 국가/공동체	협상 중인 국가/공동체	검토 및 조정 중인 국가/공동체
아르메니아 공동경제구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벨-카 관세동맹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몰도바 세르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CIS 우크라이나 베트남	EFTA <sup>1)</sup> (잠정중단) 뉴질랜드 <sup>1)</sup> (잠정중단)	이란(공동연구 개시) 이집트(공동연구 개시) 중국(비특혜 조약의 의무조항 승인 2016. 5.) 이스라엘 (의무사항 조정 중) 인도(공동연구 개시)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시리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르비아, 페루, 몽골, MERCOSUR, 칠레, 터키, 짐바브웨

주: 1) 러-벨-카 관세동맹의 일원으로 참여 중임  
 자료: Evgeny Vinokurov, "Eurasian Economic Union: Current state and preliminary results,"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Volume 3, Issue 1, p. 66 내용; 이재영 외 2인, 『한국의 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투자 현황과 비즈니스환경 분석』, 2017. 5. 2

## 제2편 통관제도

### I. 통관행정조직

#### 1 통관행정 관련 조직

---

##### 가. 러시아의 통관행정조직

- 러시아 관세청은 2006년 이후 경제개발 및 무역부<sup>18)</sup>가 담당하였던 관세 관련 정책, 규정 등의 개발 및 통제 기능을 이관받았음
  - 관세청은 세관, 해외사무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음
  - 단, 연방정부의 권한하에 경제개발 및 무역부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러시아 연방의 중앙은행, 집행기관, 지역 정부 등과 협업하고 있음
  
-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통상정책을 결정하고 재무부에서 관세징수 및 관세환급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 에너지산업부에서는 할당, 반덤핑, 특혜 세율과 관련하여 정책을 입안하며 기타 산업인증은 관련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

18) 현재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및 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Russian Federation)로 이원화되어 있음

- 러시아 연방 관세청은 2011년 이후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밀수방지국(General Department of Anti-Smuggling), 부패 방지국(Anti-corruption Department), 물품반출 후 세관관리 총괄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Control after the Goods Release)이 신설됨<sup>19)</sup>
  - 감사국(Auditing Directorate), 법령개발지원국(Law Development Legal Support Directorate), 내부안전국(Internal Security Directorate)이 폐지되었음
  
-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규정 입안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재무부 소속의 연방 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러시아 연방 관세청의 경우 재무부 산하가 아닌 총리실 소속 독립외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상부조직이 없었음<sup>20)</sup>
  - 국경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에 총리실로 이전됨
  
- 연방 관세청은 20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음<sup>21)</sup>
  - 조직·검사국(General Department of Organization and Inspection)
    - 조직·감사 총괄국은 관세청 각 국들의 활동을 감시 및 통제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활동 계획 조직 및 관세청의 조직에 따라 활동을 구조화함
  - 세관절차·세관통제국(General Department of Organization of Customs Processing and Customs Control)
    - 물품 및 차량의 이동에 따른 통관절차 관리, 특별 통관절차 및 세관 규정 적용 신청관리, 물품에 따른 통관절차 적용, 물품의 신고, 반출, 일시 수출입 등 관리 등을 담당함
  - 물류지원국(General Department of the Logistics Support)
    - 물류지원과 관련 경제정책 실행, 세관의 사회적, 기술적, 물질적 설비 개발 및 강화, 세관의 부지관리, 세관의 도장, ID 카드, 음식, 의류 등 물자관리 등을 담당함

19)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2012. 1, pp. 193~194

20)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2012. 1, pp. 193~194

21)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4&Itemid=1840](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4&Itemid=1840)(검색일자: 2017. 6. 20.)

## 22 제2편 통관제도

- 재정·경제국(General Financial and Economic Department)
  - 예산계획, 국제은행 개발기금 관리, 예산, 회계, 각 국별 임금관리 및 국별 특수 프로그램 재정관리 등을 담당함
- 관세심문·조사국(Department of Custom Inquiry and Investigation)
  - 관세범죄 관련 조사 보고서 및 증거 검사, 관세 관련 행정절차 및 내용 위반에 대한 조사, 결정 등을 담당함
- 무역장벽·통화·수출통제국(Department of Trade Barriers, Currency and Export Control)
  - 지재권 보호, 거주자 및 비거주자 외환 통제 및 물품 및 이동 통제, 군사 물품 수출 통제, 기술 불법 수출 방지 등을 담당함
- 관리서비스·인사국(Department of Government Service and Personals)
  - 인사정책, 직원 배치, 부서별 직원교육 관리, 진급 교육, 선발 배치 등에 관한 검사 및 통제 등을 담당함
- 관세통계·분석국(Department of Customs Statistics and Analysis)
  - 해외 무역 통계 시스템 지표의 지속가능성 확인 및 통계 수집 방법의 개선, 통계 지표의 신뢰성, 효용성 증가 등을 담당함
- 품목분류국(Good Nomenclature Department)
  - 물품 분류 관련 국가 정책 제안, 품목분류 관련 국제 사회의 논의 모니터링, HS 체계를 따른 러시아 자체 품목분류 TN-VED 개발 및 적용 등을 담당함
- 정보기술국(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Department)
  - 관세청 내의 정보 기술 지원 및 개발, R&D의 효과적 사용 지원, 기술, 정밀산업 시설 도입, 방사능 물질 통제 등을 담당함
- 밀수방지국(General Department of Anti-Smuggling)
  - 경제범죄와 관련된 밀수, 향정신성물질, 독성물질, 가스, 폭발물, 무기, 대량살상 무기, 군사 기술, 주요 원자재, 문화 관련 물품 등의 밀수 방지 등을 담당함
- 연방관세세입·관세규제국(General Department of Federal Customs Revenues and Tariff Regulation)
  -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 납부 및 행정처리 전반 관리, 관세 행정 위반 벌금 징수, 및 관리, 세수확보와 관련된 세관의 활동 조직 등의 활동을 담당함
- 물품반출 후 세관통제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Control after the Goods Release)
  - 조건부로 반출 된 물품의 폐기, 사용 등과 같은 조건 실행 여부 검사, 물품 반출 과 관련된 문서 확인 및 검사 등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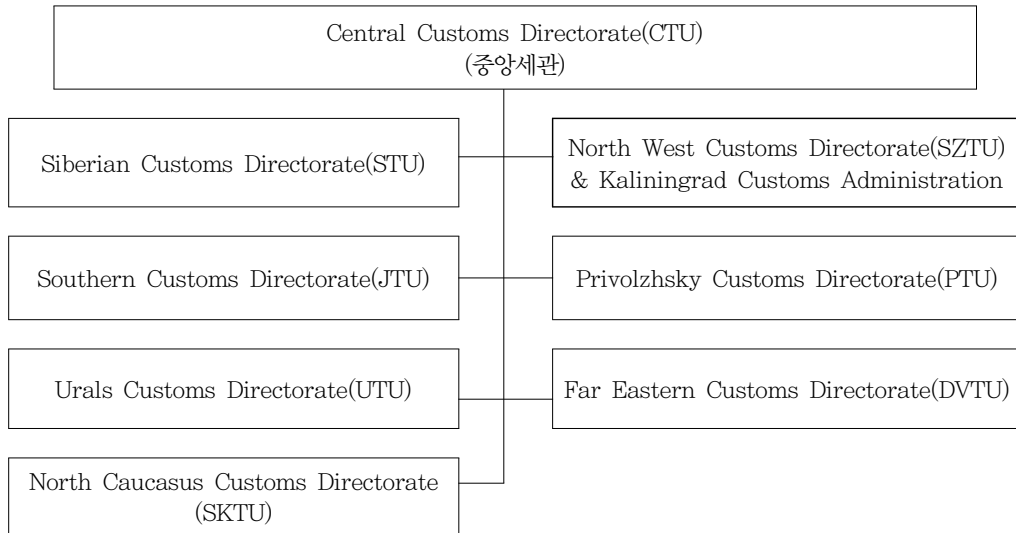
- 법무국(Legal Department)
  - 관세청의 이익보장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세관 관련 문제 및 각 부서의 질문 등에 대해 법적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함
- 행정국(Administrative Department)
  - 문서 업무 관련 방법 및 형식의 개선, 문서 형식의 통일, 문서 종류 삭감 등을 담당함
- 홍보국(Public Relations Department)
  - 세관 활동 홍보를 위한 미디어제작, 홍보물제작 등을 담당함
- 세관 협력국(Department of Customs Cooperation)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 해외투자자, 해외 경제활동 관련 활동 제안 및 조직, 국제협약 제안 및 준비 등을 담당함
- 통제·보정국(Control and Revision Department)
  - 회계감사 조직 및 실행, 관세청장에 의한 계획되지 않은 회계감사와 조사뿐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 집행기관의 결정에 따른 회계감사도 이행하고 있음
- 분석국(Analysis Department)
  - 연방정부 정책 집행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정보 제공, 세관 규정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 및 자료 분석, 러시아 연방의 사회 경제적 개발에 따른 러시아 관세청의 정책 집행을 위한 정보 및 활동 분석 자료 제공 등을 담당함
- 부패방지국(Anti-corruption Department)
  - 내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부패 방지 조사 및 폭로 행위, 세관 직원 및 관련자의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정보보안 활동 등을 담당함

[그림 2-1-1] 러시아 연방 관세청 조직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러시아』, 2013. 12;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2012. 1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그림 2-1-2] 러시아 세관 조직도



자료: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eng.customs.ru/index.php>(검색일자: 2017. 7. 25.)

- 러시아 상부 관세청 조직하에 8개의 세관이 하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8개의 세관은 다음과 같음
- 중앙 세관(Central Customs Directorate: CTU))
  - 시베리아 세관(Siberian Customs Directorate: STU)
  - 남부 세관(Southern Customs Directorate: JTU)
  - 우랄 세관(Urals Customs Directorate: UTU)
  - 북부 코카서스 세관(North Caucasus Customs Directorate: SKTU)
  - 북서 세관 및 칼리닝가드 세관(North West Customs Directorate: SZTU) & Kaliningrad Customs Administration)
  - 프리볼즈스키 세관(Privolzhsky Customs Directorate: PTU)
  - 극동 세관(Far Eastern Customs Directorate: DVTU)

## 나. 기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조직<sup>22)</sup>

- EAEU의 의사 결정기구는 최고 유라시아경제위원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와 유라시아 정부 간 위원회(Eurasian Intergovernmental Council)가 있음
  - 최고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정상들로 구성되어있으며 EAEU의 예산 감독, 주요 사안(예: EAEU 및 베트남과의 자유무역결의)에 대한 결정 등을 이행하고 있음
  - 유라시아 정부 간 위원회는 각국 행정부 수반들로 구성되어 'EAEU 산업협력 기본 방향'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
  
- 집행기구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이하 EEC)와 EAEU 재판소(Court of Eurasian Economic Union)가 있음<sup>23)</sup>
  - EEC는 각국을 대표하는 5인의 이사회와 의장을 포함한 14인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회원국에서 연방 장관의 지위를 가지며 이들은 최고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지명되며 의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4년간의 임기로 연임이 가능함
  - EEC는 EAEU의 예산, 조직구성원의 정원 등을 승인하고 통관, 교역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음
    - EEC의 사무국은 조약 집행을 감독,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 간 분쟁 조정 및 예산 집행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EAEU 재판소는 EAEU 조약 실행에 대한 논쟁, EAEU와 국제조약 간 논쟁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 기타 2022년까지 카자흐스탄에 EAEU의 금융 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임

---

22) 한국수출입은행,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과 우리의 협력방안』, 2017. 1

23) 한국수출입은행,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과 우리의 협력방안』, 2017. 1

## 2 통관 관련 법률

### 가. 「관세법」<sup>24)</sup>

- 2006년 5월 서명된 ‘Federal Customs Service Issues’에 따라 경제개발 통상부가 관할하던 세관 관련 국가 정책 및 법규, 관련법 통제 권한을 연방 관세청에서 이어받게 되었음
  - 2006년 7월 서명된 세관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Federal Customs Service)에서는 연방 관세청이 세관업무 및 관련법 규정의 초안 및 매년 업무 계획 및 지표 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연방 관세청이 무역과 관련된 법을 규제하는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10년 3국 관세 동맹 발족에 따라 「관세동맹의 관세법」(Customs code of the customs union; 이하 「공통관세법」)이 시행되었음
  - 「공통관세법」은 총 8장, 50절, 373조로 구성되어 총칙을 비롯하여 관세납부, 세관 감독, 통관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공통관세법」 발표에 따라 「러시아 신관세법」(Federal Law i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이하 「신관세법」)이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몇 차례 개정되어 2015년 10월 19일부터 개정본이 발효 및 시행되었음
  - 기존의 「관세법」(The Customs Code of Russian Federation)은 2011년 10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졌으며 이후는 「신관세법」에 따르고 있음
  - 「신관세법」은 총 8장, 47절, 325조로 구성되었으며 「공통관세법」을 바탕으로 총칙을 비롯하여 관세 납부, 물품 통관, 러시아 연방으로 수출입, 통관절차, 세관의 상품 분류 운영의 특징, 종결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신관세법」의 주요내용은 통관 비용 절감, 통관 소요기간 단축, 전자신고제도 도입 등임

24) 김앤장, 『외국 관세청의 법령 제정·집행 및 그 기능에 관한 연구』, 2012

- 통관에 필요한 수수료 총액의 한도를 최대 10만루블(한화 약 200만원)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관신고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2일 내 수입통관을 종료해야 함
- 또한 세관신고는 전자 형태로 하며 러시아 연방 「관세법」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구하고 있음

□ 2018년 1월 1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법」(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 신관세법」)이 발효됨<sup>25)</sup>

- 2017년 4월11일 에 대해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모두 서명이 완료되었음
- 「EAEU 신관세법」은 2010년도 무역협약에 기초하였고 약 5년간의 작업을 거쳐서 틀을 마련하였음<sup>26)</sup>

□ 「EAEU 신관세법」은 총 9장 61절로 구성되었음

- 부록으로 관세징수절차, 특별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 대상 리스트, 효력을 상실하는 국제조약 목록 등이 포함됨<sup>27)</sup>
- 전자신고가 우선하며 서류신고 방식은 예외로 분류함
- 세관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물품인도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함
- 기존의 「관세법」이 통관까지 1일의 소요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EAEU 신관세법」은 통관까지 4시간 이내에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기존 「관세법」에서 세관신고서와 상업서류, 운송서류 등을 함께 제출할 것을 규정하였다면 「EAEU 신관세법」에서는 세관신고서만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나. 관세규정 개정 관련

□ 러시아는 2004년부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에 물품 수입 신고 검사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지시하고 물품에 대해 사전 신고 후 자동으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5) The new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or EEU) Customs Code is finally due to take effect on 1 January 2018, <http://www.condor.eu.com/news/new-customs-code-eeu%E2%80%A8/> (검색일자: 2017. 12. 26.)

26) 관세청 내부자료

27) 관세청 내부자료

- 또한 기타 등록절차의 경우 세관원으로 하여금 공개되지 않은 문서의 목록을 정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음
- 2004년의 관세행정 개선은 일선 세관에서 적용되지 않아 러시아로의 물품 통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략기획청에서 새로운 관세행정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2006년 배포된 연방 관세청의 개정된 규정(Regulations on Federal Customs Service)에서는 보다 폭넓은 관세청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 관련 정책, 법, 규정 등의 제정 및 감독, 외환 통제, 위생·식물·동물 검역, 국경통과 운송 통제 등의 기능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2012년 재개정되어 발표된 관세행정 로드맵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관검사 기간 단축, 통관검사 방법 개선, 통관서류 축소, 소요기간 축소, 비용 절감, 통관 간소화 적용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sup>28)</sup>
  - 관세행정 로드맵에 따르면 수입 통관 시 필요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5년 6개, 2018년에는 4개로 줄이고, 수출 필요서류는 2012년 8개에서 2015년 4개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통관 소요시간은 2018년까지 수출입 모두 7일로 단축, 통관비용은 2018년까지 수입 시 컨테이너당 100달러, 수출 시 컨테이너당 900달러로 절감해야 함
  - 또한 세관신고 항목은 이 로드맵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15개로 축소되었으며 2012년 6월부터 통관상품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
  - 2016년 1월부터 전자세관신고 및 상품 통관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통관 간소화 적용기준을 2014년 1월부터 통일하여 적용하였음
  - 그 밖에도 세관원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졌음
- 기타 관세 관련 규정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은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sup>29)</sup>에서, 유라시아위원회의 규정과 결정문 등에 관한 내용은 유라시아 위원회 법률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sup>30)</sup>

28) 국세청, 『러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4

29)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s://customs.consultant.ru/>(검색일자: 2017. 11. 20.)

30) 유라시아위원회 법률포털 홈페이지 <https://docs.eaeunion.org/ru-ru>(검색일자: 2017. 11. 20.)

## II. 과세가격과 납부세액산정

### 1 과세가격

---

####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 1)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러시아는 WTO 관세평가원칙<sup>31)</sup>을 준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은 「러시아 신관세법」, 「EAEU 신관세법」<sup>32)</sup> 등에 있음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원칙은 6가지로 다음과 같음<sup>33)</sup>
  -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제1방법)
  - 동일 물품(제2방법)이나 유사 물품(제3방법)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

---

31) The WTO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Agreement

32)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5. Customs cost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2. 11.)

33)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5. Customs cost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2. 11.)

- 물품 수입 후의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감산하는 방법(제4방법)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용 등을 산정하는 방법(제5방법)
  - 5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제6방법)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결정방법(제1방법)을 최우선원칙으로 적용하며, 동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물품 결정방법(제2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sup>34)</sup>
- 러시아 수입물품의 90%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됨
  - 거래가격으로 가격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이용하여 결정함
- 거래가격이란 물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가산요소를 합친 가격을 말함
- 가산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음<sup>35)</sup>
    - 인건비와 자재비가 포함된 포장비용
    - 판매·중개 수수료
    - 물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 기술, 설계, 사용된 공구 비용 등
    -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license fee)
    - 물품의 판매 및 사용으로 발생한 수익
    - 운송비 및 운송 관련 보험료
- 거래가격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가산요소가 문서화된 정보에 기초하지 못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 특수 관계는 배우자, 형제,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업자, 조직의 임원 또는 관리자 등이 있음
    - 특수 관계가 성립되더라도 모든 거래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거래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34)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5. Customs cost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2. 11.)

35)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5. Customs cost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2. 11.)

2) 동일 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방법)과 유사 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제3 방법)<sup>36)</sup>

-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존 동일 물품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sup>37)</sup>
- 기존의 동일 물품 가격이 존재할 때 다음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조건임<sup>38)</sup>
  - 물리적 특성, 품질, 기능, 시장에서의 평판, 원산지, 제조업체를 분석해서 동일한 물품인지 판단해야 함
  - 동일 물품의 수입시기는 90일 이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수입 시 운송조건이 같아야 함
  - 동일 물품에 대해 다양한 거래가격이 발생되었을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함
  - 동일한 크기, 모양, 색상은 가격을 결정하는 사유가 안 됨
- 동일 물품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기존 유사 물품 가격으로(제3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동일 물품과 유사 물품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동일 물품이 우선함
- 물품의 유사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분석함
  - 물리적 특성(다른 특성, 크기, 모양, 기술의 수준, 공법), 원산지, 제조업체, 물품의 브랜드가치
  - 기능과 범위(제품의 기능과 품질)
  - 상업적인 호환성(구매자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두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36)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5. Customs cost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2. 11.)

37)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5. Customs cost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2. 11.)

38)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5. Customs cost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2. 15.)

### 3)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감산하는 결정방법(제4방법)과 생산에 사용된 비용 등을 산정하는 결정방법(제5방법)<sup>39)</sup>

- 동일 물품이나 유사 물품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국내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감산하는 방식(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국내 판매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함
    - 동일·유사 물품이 수입된 것과 상태가 동일해야 함
    - 동일·유사 물품과 수입신고일이 같거나 비슷해야 함
    -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었을 때의 가격으로 결정해야 함
    -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를 해야 함
  
- 국내 판매가격에서 다음의 요소를 공제함
  -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과 일반 경비
  - 수입관세, 세금, 수수료(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와 관련된 세금)
  - 운송비용과 보험
  
-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감산하는 방법(제4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용(제5방법) 등을 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수입자가 원할 경우 비용감산에 의한 방법(제4방법) 대신 생산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제5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용(제5방법)은 다음을 포함하여 산정함
  - 생산에 관련된 원자재 비용
  - 생산자가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 경비
  - 포장 및 포장을 하기 위한 경비
  - 조립 작업에 필요한 비용
  - 수리 및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39)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5. Customs cost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2. 15.)

#### 4)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제6방법)<sup>40)</sup>

-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제6방법)으로 결정함
  - 합리적인 방법은 거래가격, 동일 물품, 유사 물품,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감산하는 방법, 생산에 사용된 비용에서 파생된 방법을 기초로 유연하게 결정함
  
-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됨
  - 동일하거나 유사 물품이 수입되지 않았을 경우
  - 물물교환일 경우
  - 임대 또는 차용
  - 독특한 예술작품
  - 물품을 수입한 국가에서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
  - 제조업체를 모르거나 생산에 들어간 비용 정보를 거부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 물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다음은 사용할 수 없는 기준임
  - 러시아에서 생산된 국내시장 물품 가격
  - 러시아 외에 국가로 수출하는 가격
  - 수출국 국내시장 물품 가격
  - 최저 기준으로 평가된 가격
  - 임의로 설정한 가격
  - 두 가지 가격 중에 높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

---

40)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5. Customs cost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2. 15.)

## 2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러시아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부과됨<sup>41)</sup>

#### 1) 수입관세

□ 수입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로 종가세, 종량세, 종가 및 종량 혼합세가 있음<sup>42)</sup>

-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5%, 10%, 15%, 20%로 구분됨
- 종량세는 수량, 부피, 중량 등 물품량에 따라 부과됨
- 종가 및 종량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부과됨<sup>43)</sup>
  -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 부피, 중량 등에 따라 관세를 모두 부과하거나 둘 중에 더 많은 금액에 부과됨

####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러시아의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 부과됨

□ 부가가치세는 평균적으로 18%임<sup>44)</sup>

- 기본식료품비, 아동용품, 특정의료용품, 의약, 신문, 잡지 등에 10% 부과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음<sup>45)</sup>

41) PWC, Importing and exporting, <https://www.investinregions.ru/en/investor/useful/import-iekspor/customs-duties-incentives/>(검색일자 2017. 10. 30.)

42)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6, <http://www.motie.go.kr/motie/py/td/tdtotal/bbs/bbsList.do>(검색일자: 2017. 7. 4.)

43)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6, <http://www.motie.go.kr/motie/py/td/tdtotal/bbs/bbsList.do>(검색일자: 2017. 7. 4.)

44)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77

45)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6;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6, <http://www.motie.go.kr/motie/py/td/tdtotal/bbs/bbsList.do>(검색일자: 2017. 7. 4.)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장비, 장례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인 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
-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는 광고목적의 무료 상품
- 국제협력을 위해 우주탐사 관련 물품을 수입할 때

### 3) 소비세

- 소비세는 사치품들의 소비감소를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음<sup>46)</sup>
  - 물품에 따라 종량세, 종가세, 혼합세로 부과되고 있음<sup>47)</sup>
    - 에틸 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 등에 부과됨
    - 수입 물품의 경우 최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됨
  - 혼합 소비세(compound excise taxes)는 양(수량, 중량 또는 부피 등)을 기준으로 부과됨
  - 소비세는 매년 개정되고 있음

### 나. 기타 비용

- 통관수수료는 물품의 가치에 따라 부과됨
  - 전자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전자신고 시 25%를 감면해주고 있음<sup>48)</sup>
  - 물품의 가치가 200,000루블 미만일 경우 통관수수료는 500루블이며 물품 10,000,000루블 이상일 경우 통관수수료는 30,000루블임
  - 개인 가정용품의 경우 250루블의 통관수수료가 부과됨
  - 관세가 없는 물품일 경우 수수료는 1,000루블임

---

46)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10

47)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77

48)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78

〈표 2-II-1〉 통관수수료

(단위: 루블)

물품가치	통관수수료
200,000 미만	500
200,000~450,000 미만	1,000
450,000~1,200,000 미만	2,000
1,200,000~2,500,000 미만	5,500
물품 2,500,000~5,000,000 미만	7,500
물품 5,000,000~10,000,000 미만	20,000
물품 10,000,000 이상	30,000
상업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가정과 관련된 개인적인 물품 (HS Code 8703 분류된 승용차는 제외)	250
재수출과 재수입을 위한 일시적인 수입을 위한 대형 선박	각 선박당 10,000
관세가 없는 물품	1,000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78

## □ 물품의 세관 호송 비용은 거리에 따라 산정됨

- 차량이나 기차로 호송할 때 50km까지는 2,000루블이며 세관 호송 비용은 최대 6,000루블을 이하로 부과됨<sup>49)</sup>
-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거리와 관계없이 20,000루블의 비용이 부과됨

〈표 2-II-2〉 세관 호송 비용

(단위: 루블)

거리	비용
차량이나 기차로 호송 50km까지	2,000
차량이나 기차로 호송 50~100km까지	3,000
차량이나 기차로 호송 100~200km까지	4,000
차량이나 기차로 호송 200km 이상	100km마다 1,000루블 부과 최대 6,000루블
비행기나 바다, 강 선박	거리와 관계없이 20,000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7849)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78

- 창고 보관료는 보세창고를 이용할 경우 일별로 100kg당 1루블임

〈표 2-11-3〉 창고 보관료

(단위: 루블)

창고보관	비용
보세창고 보관	1루블/100kg(일별)
특정한 형태의 창고	2루블/100kg(일별)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79

### Ⅲ.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 1 품목분류

---

##### 가. 품목분류 체계

- 러시아는 HS Code<sup>50)</sup>를 채택하여 모든 상품을 97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HS Code의 6단위까지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과 동일함
  
- 러시아는 10단위의 품목분류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10단위 상에서 일부 제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함
  - 예를 들어 한국 HS Code 0901 21 0000의 경우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로 품목을 한정하고 있음

---

50)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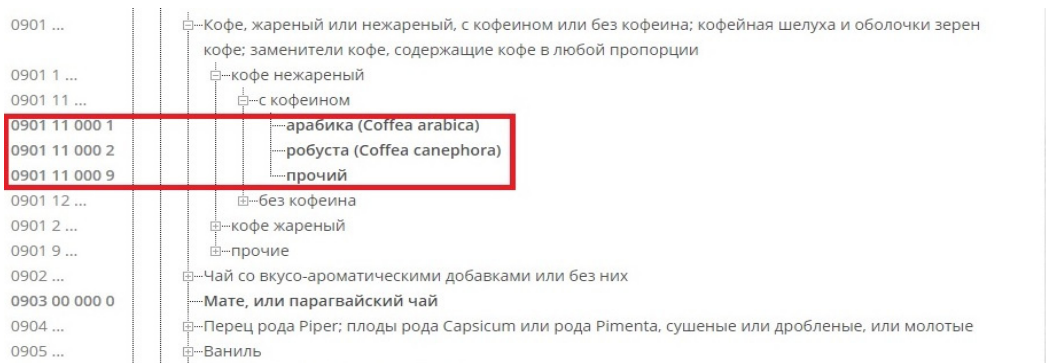
[그림 2-III-1] 우리나라 품목분류 예시(0901 11 0000)

관세율표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1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 12	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 2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2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 22	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 90			기타
0901 90	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0901 90	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자료: CIEL, www.clhs.co.kr, (검색일자: 2017. 11. 7.)

- 러시아의 경우 이를 세분화하여 TN VED 0901 11 0001은 아라비카, TN VED 0901 11 0002는 카네포라, TN VED 0901 11 0009는 기타로 커피 품종에 따라 HS 10단위상에서 상세히 분류하고 있음

[그림 2-III-2] 러시아 TN VED 10단위 예시



자료: TN VED Online Service, <https://www.alta.ru/tnved/>(검색일자: 2017. 11. 7.)

- 201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 대외경제상품코드는 효력을 상실하고 관세동맹 상품분류코드가 발효되었음

-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체결됨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 대외경제상품 코드를 사용하고 있음
  - 대외경제활동 물품목록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승인하며 대외경제활동 물품목록 변경에 관한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관기관의 제안에 입각하여 통관기관 위원회가 채택함
  - 대외경제활동 물품목록 및 해당 목록 변경에 관한 결정 또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발표하고 있음
  - 대외경제상품코드는 세관의 검사, 물품의 수출입 신고, 물품의 이동 등에 사용되며 부과되는 수출입 관세는 TN VED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음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기존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를 보완, 변경하여 유라시아경제 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상품분류체계를 개발, 전환 중에 있음
  - 품목분류코드는 TN VED(Commodity Nomenclature for Foreign Economic Activities of the Customs Union)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TNEA(Commodity Nomenclature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로 변경할 예정임
  - HS 0302 99와 0303 99의 하부품목 10자리를 통합하는 작업이 시행 중에 있음
  - 또한 몇몇 품목에 따라 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되고 있으며 2017년 9월부터 변경된 관세율이 적용됨
    - 기존의 세율 및 변경된 세율 확인은 ALTA 홈페이지 → HS Code 클릭 → Changes to the Uniform Customs Tariff from September 1 and 2, 2017 클릭 → 초록색으로 표시된 세율: 낮춰진 세율, 붉은색으로 표시된 세율: 높여진 세율로 확인 가능함
  
- 변경된 HS 확인은 러시아 물품 관세율을 제공하는 기업 홈페이지(ALTA)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S Code 클릭 → The table of conformity of the TN VED TC codes for 2012 and the TNEA for the 2014 EEA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변경된 코드 확인은 HS Code of the Customs Union of the Customs Union of 2012에 기존 코드를 입력하면 HS Code for the EEA of 2017상에서 변경된 세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반대(2017 → 2012)로 관세율의 확인 또한 가능함

[그림 2-III-3] 러시아 변경된 통일상품분류체계 확인 예시

The screenshot shows a web page with a navigation menu at the top: news, Programs, Electronic declaring, Electronic signature, Training, Price list, About company, Support.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Table of compliance codes TN VED TS 2012 the year and HS EAEC 2017 the year". Below the title is a link "EAEC 2017 => TC 2012" and a paragraph: "Transi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single Commodity Nomenclature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on the basis of the 6th edi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for Description and Coding of Goods." The table below compares codes from the Customs Union of 2012 and the EEA of 2017.

HS Code of the Customs Union of the Customs Union of 2012	HS Code for the EEA of 2017
Group 01 Live animals (3 items)	
0102 29 710 0	0102 29 910 0
0102 29 790 0	0102 29 990 0
0102 90 990 0	0102 29 050 0 0102 90 990 0
Group 02 Meat and edible meat offal (1 item)	
0210 99 800 0	0210 99 850 0
Group 0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262 items)	
0301 93 000 0	Of 0301 93 000 0
0301 99 188 0	0301 99 182 0
0301 99 189 0	Of 0301 93 000 0 0301 99 186 0
0302 11 100 0	0302 11 100 0 of 0302 99 000 1
0302 11 800 0	0302 11 800 0 of 0302 99 000 1
0302 13 000 0	0302 13 000 0 of 0302 99 000 1
0302 14 000 0	0302 14 000 0

자료: Table of compliance codes TN VED TS 2012 the year and HS EAEC 2017 the year, [https://www.alta.ru/tnved/2017\\_01\\_changes/#20172012](https://www.alta.ru/tnved/2017_01_changes/#20172012)(검색일자: 2017. 8. 31.)

-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은 변경된 관세율 확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공식적인 관세율을 제공하는 기업 홈페이지 (ALTA)에서 확인 가능함
  - Country를 클릭하여 해당 수출국을 입력하면 관세율 및 수입품에 부과되는 제세금을 확인할 수 있음
  - Rates of Import duty levies에서 해당 국가의 분류와 그에 따른 관세, 기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III-4] 러시아 수입관세율 확인 예시

The screenshot shows the ALTA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logo for ALTA-SOFT and contact information. Below the logo, there is a navigation menu with items like 'Новости', 'Программы', 'Электронное декларирование', etc.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On the left, there is a 'Calculation data' section with input fields for 'tC Code' (0101210000) and 'Date' (31.08.2017). Below this, there is a 'Country' dropdown menu set to 'Korea, Republic of'. The main section is titled 'LIVE PURE-BRED BREEDING HORSES' and contains a table for 'Rates of import levies (пеш.54)'. The table has two columns: 'Type' and 'Duty'. The rows are: 'CIS, Undeveloped' with 'Duty-free', 'Developing' with '0', and 'Other' with '0'. Below the table, there are sections for 'Excise' (is not levied) and 'VAT' (18%). The 'VAT' section has radio buttons for 'Спортивные лошади и пони' and 'Прочие'.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checkbox for 'The presence of certificate of origin of commodity'. The right side of the page has a 'Log in' button and a 'Calculation of contract' section with tabs for 'Good features', 'Good information', 'Calculation of contract', and 'Explanations'. The 'Calculation of contract' tab is active, showing a list of goods and their duties. The 'Explanations' tab is also visible, showing a list of delivery features and exemption from VAT.

자료: ALTA 홈페이지, <https://www.alta.ru/taksa-online/en/>(검색일자: 2017. 8. 31.)

- 또한 Goods Information을 클릭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뿐 아니라 수입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물품이 수출입 허가품목일 경우 필요한 라이선스 및 관련 법령, 관세율 구분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 검역제품의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검역이나 기타 수출입 통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규정은 러시아어 문서로만 확인 가능함
- 상단의 Calculations of contract를 클릭하면 제세금을 합한 지불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Explanations를 클릭하여 해당 품목의 세부적인 분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III-5] 러시아 수입규제 및 제세금 확인 예시

Calculation data
Good features
Good information
Calculation of contract
Explanations
Log in

HC Code: 0101210000 Date: 05.09.2017

Country: 410 Korea, Republic of

LIVE PURE-BRED BREEDING HORSES

**Rates of import levies (пеш.54)**

Type	Duty
CIS, Undeveloped	Duty-free
Developing	0
Other	0

Excise: is not levied

VAT: 18%

Спортивные лошади и пони  
 Прочие

The presence of certificate of origin of commodity

IMPORT Calculation for 05.09.2017	
HC Code 0101210000	-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Chapters 01-05) -- LIVE ANIMALS ---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 horses ----- Pure-bred breeding animals
Duty:	<b>Duty-free (пеш.54)</b> The commodity is not preferential. The basic rate of duty is applied.
Excise:	<b>is not levied</b> The rate of excise in case of import is indicated according to the stated list.
VAT:	<b>18%</b> The rate of VAT - value-added tax is indicated (usually – 18%). The rate may be reduced to 10% or 0% in accordance with the lists that were stated by the Government. (Постановление 908 от 31.12.2004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еречн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и детских товаров, облагаемых 10% НДС))
Concordance at release	Agreement of the decision on issuance of commodities for free circulation – is a form of customs control that is executed by the officials of the Department of Customs Clearance Control after the execution of all the stages of documental customs clearance and customs examination by the officials of the customs post (the Department of Customs Clearance and Customs Control) for the examination of sufficiency of the decisions that were made at every stage (including the customs examination) as well as authenticity of the statements about individual pieces of information about the commodity. (Письмо 08-12/12681 от 19.08.2004 ЦОТ ФТС (О контроле за вывозом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товаров))
Veterinary control	At a number of posts the list of commodities that are intended for veterinary control may be expanded. (Решение 317 от 18.06.2010 КТС (Единый перечень товаров, подлежащих ветеринарному контролю, и Единые формы ветеринар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Preferential goods	It was stated a list of commodities for which tariff preferences are issued in case of import from un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case of import from undeveloped countries and the CIS countries, the commodities are completely exempted from duty, and in case of import from developing countries duty is reduced by 25%. The preferences are issued providing the observanc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the prese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the direct delivery of commodities and other. Otherwise it is applied the usual rule: the base rate is applied for commodities from the countries of most-favoured-nation-treatment, a double rate – for other countries.  (Решение 8 от 13.01.2017 Совета ЕЭК (Перечень товаров, происходящих из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 и наименее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ых при ввозе в ЕАЭС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тарифные преференции))
License, permission	The commodity is to be licenced. (Решение 30 от 21.04.2015 Коллегии ЕЭК (Изменения в единый перечень товаров, к которым применяются запреты и ограничения при торговле с третьими странами ТС))

자료: ALTA 홈페이지, <https://www.altar.ru/taksa-online/en/>(검색일자: 2017. 8. 31.)

## 나. 품목분류 사전결정(Preliminary Decision)<sup>51)</sup>

- 품목분류 사전결정제도는 「EAEU 신관세법」과 러시아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 결정과 관련한 규정<sup>52)</sup>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 「EAEU 신관세법」에서는 품목분류 사전결정이 제3장 제23조에서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사전결정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법에 따라 정해진 통관기관에서 채택해야 하며 사전결정은 정해진 상표, 모델, 품목 등을 포함하는 개별 물품에 적용됨
  - 사전결정 신청은 수출입 시 의무적인 절차는 아님
- 러시아는 수출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결정은 수출 시에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와 절차는 수입 시와 동일함<sup>53)</sup>
- 사전결정은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가능함
  - 전자신청은 Unified Portal of State and Municipal Services<sup>54)</sup>에서 가능함
  - 러시아 세관에서는 E-mail 신청도 전자신청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음<sup>55)</sup>
-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음
  - 기업(법적실체), 관세동맹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기구(organization), 유라시아경제연합 내의 영주권을 소지한 개인(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가 포함), 물품 통관을 허가받은 자, 사전결정을 받은 물품의 소유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음

51)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ru/tamdoc/16bn0124/#st19>(검색일자: 2017. 12. 11.)

52) Regulations of advance ruling of classification (Decree of FCS Russia 760) dated April 18, 2012

53) Получени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решения п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товаров по ТН ВЭД ЕАЭС, [http://ved.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982:2016-05-05-11-09-05&catid=129:2016-04-29-12-03-43&Itemid=2026](http://ved.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982:2016-05-05-11-09-05&catid=129:2016-04-29-12-03-43&Itemid=2026)(검색일자: 2017. 11. 15.)

54) 사전결정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osuslugi.ru/>(검색일자: 2017. 11. 7.)

55) Receiving a preliminary decision on the classification of goods on the TNEA VED EAE, [http://ved.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982:2016-05-05-11-09-05&catid=129:2016-04-29-12-03-43&Itemid=2026#doc/LAW/172458/4294967295/0](http://ved.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982:2016-05-05-11-09-05&catid=129:2016-04-29-12-03-43&Itemid=2026#doc/LAW/172458/4294967295/0)(검색일자: 2017. 11. 7.)

- 사전결정 신청서에는 상호명, 회사명, 물품의 기술적 성격, 상업적 성격 및 물품의 고유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기재해야 함
  - 신청서는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Decision of the Commission of the Customs Union of May 20, 2010 No. 260 “On the forms of customs documents”을 통해 확인 가능함<sup>56)</sup>
  - 필요 시 완제품의 사진, 그림, 도면, 증명서, 물품의 견본 및 표본, 사전결정을 위한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러시아 세관에서는 신청자의 이름(성과 이름을 모두 포함한 이름), 직위, 여권 또는 기타 신분을 확인할 서류, 기업이 위치와 우편번호, 연락처, 개인사업자번호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물품의 가공 성격, 가공과정 설명 등에 관련한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함
  - 사전결정 신청을 위해서는 5천루블을 납부해야 하며 사전결정 신청 시 이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함
  
-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할 시 사전결정에 대한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통관기관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 제출에 대해 통지하고, 신청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추가정보를 제출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시 세관은 사전결정 채택에 관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의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함
  
- 사전결정에 관한 채택은 신청서가 통관기관에 등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정보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요청된 정보가 기재된 마지막 서류를 통관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재개함
  - 사전심사 기간이 30일인 우리나라보다 긴 편임

---

56) 사전결정 신청서,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am\\_sotr/departament/tamojDocs/Documents/%D0%9F%D1%80%D0%B5%D0%B4%D0%B2%D0%B0%D1%80%D0%B8%D1%82%D0%B5%D0%BB%D1%8C%D0%BD%D0%BE%D0%B5%20%D1%80%D0%B5%D1%88%D0%B5%D0%BD%D0%B8%D0%B5%20%D0%BF%D0%BE%20%D0%BA%D0%BB%D0%B0%D1%81%D1%81%D0%B8%D1%84%D0%B8%D0%BA%D0%B0%D1%86%D0%B8%D0%B8%20%D1%82%D0%BE%D0%B2%D0%B0%D1%80%D0%B0%20%D0%B2%20%D1%81%D0%BE%D0%BE%D1%82%D0%B2%D1%82%D0%B5%D1%82%D1%81%D1%82%D0%B2%D0%B8%D0%B8%20%D1%81%20%D0%A2%D0%9D%D0%92%D0%AD%D0%94%20%D0%A2%D0%A1%20\(%D0%92%20%D0%A1%D0%9F%D0%98%D0%A1%D0%9A%D0%95%20E2%84%9619\).pdf](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am_sotr/departament/tamojDocs/Documents/%D0%9F%D1%80%D0%B5%D0%B4%D0%B2%D0%B0%D1%80%D0%B8%D1%82%D0%B5%D0%BB%D1%8C%D0%BD%D0%BE%D0%B5%20%D1%80%D0%B5%D1%88%D0%B5%D0%BD%D0%B8%D0%B5%20%D0%BF%D0%BE%20%D0%BA%D0%BB%D0%B0%D1%81%D1%81%D0%B8%D1%84%D0%B8%D0%BA%D0%B0%D1%86%D0%B8%D0%B8%20%D1%82%D0%BE%D0%B2%D0%B0%D1%80%D0%B0%20%D0%B2%20%D1%81%D0%BE%D0%BE%D1%82%D0%B2%D1%82%D0%B5%D1%82%D1%81%D1%82%D0%B2%D0%B8%D0%B8%20%D1%81%20%D0%A2%D0%9D%D0%92%D0%AD%D0%94%20%D0%A2%D0%A1%20(%D0%92%20%D0%A1%D0%9F%D0%98%D0%A1%D0%9A%D0%95%20E2%84%9619).pdf)(검색일자: 2017. 11. 7.)

[그림 2-III-6] 러시아 사전결정 신청서 예시

사전결정(TN VED에 따른 물품 분류)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товар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Н ВЭД ТС \***

<b>1. Наименование таможенного органа, принявшег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b> 세관명	<b>2. Заявитель</b> 신청자명
<b>3.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b> 등록 번호	<b>4. Дата принятия (число, месяц, год)</b> 수령일(년, 월, 일)
<b>5. Наименование товара, указанное в запросе заявителем</b> 심사요청 물품명	<b>6. Код товара по ТН ВЭД ТС</b> 관세등맹품번
<b>7. Сведения о товаре,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классификации</b> 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	
<b>8. Обоснование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b> 결정의 이유	
<b>9. Для служебных отметок</b> 서비스 마크	
<b>10. Подпись должностного лица таможенного органа</b> 세관 직원 서명 _____ (должность) _____ (подпись) _____ (Ф.И.О.) 직위 서명 이름	

자료: Resolution No. 260 "On the Forms of Customs Documents" of the Commission of the Customs Union dated May 20, 2010',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am\\_sotr/departament/tamojDocs/Pages/default.aspx](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am_sotr/departament/tamojDocs/Pages/default.aspx)(검색일자: 2017. 11. 7.)

- 사전결정에 대한 결과는 해당 결정이 변경 또는 철회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한 결정일로부터 3년간 그 결과가 유효하게 적용됨
  - 3년의 사전심사 유효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함
  - 사전결정의 효력 정지는 신청자가 제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통관기관에 의해 확인될 경우 효력이 정지됨
  - 사전결정의 변경은 사전결정 채택 시 오류가 확인될 경우 이루어지며 변경된 결정은 사전결정 변경에 관한 결정서에 명시된 기간에 발효됨
  - 사전결정의 철회는 대외경제활동 품번이 변경되었거나, 회원국이 적용한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가 채택했거나, 물품의 개별 형태 분류에 따른 결정에 대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채택한 경우 이루어짐
    - 물품 분류에 대한 제안 및 이 제안의 검토와 해당 결정 및 설명안에 대한 관세 동맹 회원국 통관기관 간 합의 절차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정함
  - 사전결정의 철회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결정 및 설명서 발표 후 30일 이내에 채택되고 해당 결정과 동시에 발효됨
  
- 사전결정의 효력정지·변경 또는 철회에 대한 결정은 사전결정의 효력정지, 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결정 채택일 다음날까지 연합국 간에 전달되어야 함
  - 효력정지·변경 또는 철회에 대한 결정서의 제출 다음날까지 신청자에게 송부되어야 함

#### 다. 미완성·미완성 형태, 미조립, 분해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sup>57)</sup>

- 미완성(incomplete) 또는 미완성형태(incomplete form) 및 미조립 또는 분해 (unassembled or disassembled)되어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이 제한기간 안에 통관되어야 하는 경우 별도의 품목분류를 적용함<sup>58)</sup>
  - 물품의 임시보관은 최대 2달이나 부분품 각각이 수출입되어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품목으로 분류하여 통관하도록 함

57) Federal Law of November 27, 2010 No. 311-FZ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https://www.alta.ru/tamdoc/10fz0311/#d1f2e0f2fcff203130372e>(검색일자: 2017. 11. 16.)

58) Federal Law of November 27, 2010 No. 311-FZ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 「EAEU 신관세법」 제3장 제17절 제117조 미완성 또는 미완성형태 및 미조립 또는 분해되는 물품의 국경 이동에 따른 세관신고<sup>59)</sup>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sup>60)</sup>
  - 본 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관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국의 규정에 따르며 해당 물품의 종류 또한 각국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본 규정은 다음의 물품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물품이 아래의 품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고서에 작성해야 함
- 7308, 7309 00, 84류 - 86류, 8701, 8702, 8704 10, 8705, 8709, 88류 - 90류, 9301, 940600(9406001100 제외)
- 물품의 신고자(수출입 신고)가 품목분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러시아어로 작성해야 함
- 기관 이름, 법적 주소지, 우편주소지, 연락처
  - 주 등록번호(main state registration number), 납세자 번호(TIN)
  - 물품이름(물품 구성요소), 조립·설치할 곳의 주소
  - 물품 인도 기간
  - 물품을 배치하기 위한 세관절차에 관한 정보;
  - 상품이 신고될 지역의 세관 당국의 명칭
-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문서가 첨부되어야 함
- 외국과의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
  - 구성문서(예를 들어 부분품 수입 시 부분품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 특별 경제구역의 통관절차를 따르는 경우 물품이 특별 경제구역에 위치한다는 문서
  - 물품의 구성부품 리스트를 문서와 미디어로 제출
    - 부품의 각각 명칭
    - 부분품의 품목분류

59) Peculiarities of customs declaration of goods transported across the customs border of the Union in an unassembled or disassembled state, including in incomplete or incomplete form

60) Статья 117. Особенности таможенного декларирования товара, перемещаемого через таможенную границу Союза в несобранном или разобранном виде, в том числе в некомплектном или незавершенном виде, <http://www.alt.ru/codex-2017/R3/GL17/ST117/>(검색일자: 2017. 12. 26.)

- 부분품의 개수, 중량(품목분류가 가능한 단위로)
- 물품에 대한 기술적 설명, 기능, 작동(각각의 부분품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기능하는지 포함하여 작성)
- 물품 부분품 각각에 대한 설명, 목적, 기능, 주요 작동, 부품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문서
- 조립 모형그림(도표)
- 물품의 품목분류 지원서 및 첨부문서를 준비하고 사인한 자의 권한을 확인하는 문서

□ 물품의 분류에 대한 결정은 세관에 등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추가정보가 필요할 경우 분류 결정 기한은 연기 또는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함

□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을 내린 세관의 이름
- 등록번호, 품목분류를 결정한 날짜
- 품목분류 요청자에 대한 정보(이름, 기관, 납세자 번호, 주등록번호, 우편번호)
- 물품의 명칭
- 10자리 품목분류번호
-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을 입증하는 내용
- 물품의 구성요소 리스트(부분품의 이름, 부분품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이름, 부분품의 품목분류번호, 부분품의 개수, 또는 중량
- 수출 또는 수입 시 물품에 효과를 주는 부분품과 외국거래임을 확인하는 문서
- 물품이 신고될 세관의 이름
- 물품을 배치하는 세관절차에 관한 정보;
-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을 내린 세관 직원의 이름, 직위, 사인

□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은 확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있음

## 2 관세율제도

- 러시아는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 공통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공통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sup>61)</sup>
  - 단일 관세율 확인은 관세율을 제공하는 기업 홈페이지(ALTA)의 ‘The single customs tariff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러시아는 WTO 가입에 따라 상품 양허 부분에서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약 10%대에서 약 7%대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특히 공산품 관세를 평균 약 9%대에서 7%대로,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평균 약 13%대에서 10%대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수요가 큰 일부 품목의 경우 WTO 양허세율 인하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대상은 가전, 건설부품, 의료기기, 측정기기, 화학제품 등으로 러시아는 WTO 가입 후 매년 관세율 인허가에 대해 발표하고 있음
  
- 2012년, WTO의 가입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7년도까지 매년 러시아의 수입관세율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하향 조정될 예정임
  - 관세 분류 품목 중 3분의 1 이상은 가입일에 맞춰 양허세율 내로 설정되고 4분의 1은 3년 이내에 하향 조정되었음
  - 유예기간이 가장 긴 돼지고기의 관세는 가입 후 8년에 걸쳐, 자동차, 헬기, 민생용 항공기는 7년에 걸쳐 세율이 인하될 예정임

###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종류 및 형태

- 러시아의 수입 상대국은 EAEU 회원국, EU를 포함한 129개 최혜국, 한국을 포함한 105개의 개발도상국, 50개의 최빈국 및 이를 제외한 최혜국 비대상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61) Decision No.54 of the EEC Council dated July 16, 2012 (with amendments and additions)

- EAEU 회원국은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예외조치가 적용됨
-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129개의 최혜국 지위 국가에는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고 최혜국 비대상국가에는 기본 관세율의 200%가 적용됨
  - 기본 관세율은 4단계로 5%, 10%, 15%, 20%<sup>62)</sup>이고 평균 관세율은 11% 수준이며 고관세 품목은 설탕(40%), 담배(30%), 자동차(25%), 가금류(25%) 등임

〈표 2-III-1〉 러시아의 관세 구분

국가 구분	관세율 구분
EAEU 회원국	면세
MFN(EU 포함)	기본 관세율
개발도상국(한국 포함)	기본 관세율의 75%
최빈국	면세
MFN 비대상국	기본 관세율의 2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의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러시아』, 2015; Doing business in Russia: Russia trade and export guid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porting-to-russia/doing-business-in-russia-russia-trade-and-export-guide>(검색일자: 2017. 8. 31.)

- 한국을 포함한 105개의 개발도상국에는 기본 관세율의 75%를 적용하고 있음
  - 해당 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FORM A)를 제출하면 수입관세의 25%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은 현재 유라시아경제위원회 Decision No 130에 의해 승인된 개발도상국 목록에 따라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총 105개국 목록에 포함되어있음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Decision No 130 제3항에 명시된 ‘반입 시에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 개도국에서 생산, 반입되는 상품 목록’이라는 표현을 ‘2017년 1월 13일 유라시아경제연합 이사회 Decision No 8에 의해 승인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시에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

62) Doing business in Russia: Russia trade and export guid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porting-to-russia/doing-business-in-russia-russia-trade-and-export-guide> (검색일자: 2017. 8. 31.)

개도국 원산지의 상품 목록'으로 수정하였음<sup>63)</sup>

〈표 2-III-2〉 러시아의 수입대상국 분류에 따른 개발도상국 명단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명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안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루바
바하마	바베이도스	바레인
벨리즈	버뮤다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보츠아나	브라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브루나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가봉	가이아나
가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그레나다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짐바브웨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카보베르데
케이맨제도	카메룬	카타르
케냐	중국	북한
콜롬비아	콩고	한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쿠바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레바논
리비아	모리셔스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로코
마셜군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63) 수산물수출정보 포털, <http://www.kfishinfo.net/kor/view.do?no=141&idx=9312&view=view&pageIndex=1&sv=&sw=>(검색일자: 2017. 11. 17.)

〈표 2-III-2〉의 계속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명		
몽골	몬세랏	나미비아
나우루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니우에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술탄	세인트헬레나	텍스앤카이코스제도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엘살바도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와질랜드
세이셸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시리아	수리남	태국
토켈라우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루과이
피지	필리핀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칠레	스리랑카
에콰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메이카

자료: 유라시아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dotp/commonSytem/Documents/%D0%9F%D0%B5%D1%80%D0%B5%D1%87%D0%B5%D0%BD%D1%8C%20%D1%80%D0%B0%D0%B7%D0%B2%D0%B8%D0%B2%D0%B0%D1%8E%D1%89%D0%B8%D1%85%D1%81%D1%8F%20%D0%B8%20%D0%BD%D0%B0%D0%B8%D0%BC%D0%B5%D0%BD%D0%B5%D0%B5%20%D1%80%D0%B0%D0%B7%D0%B2%D0%B8%D1%82%D1%8B%D1%85%20%D1%81%D1%82%D1%80%D0%B0%D0%BD.pdf>(검색일자: 2017. 8. 28.)

- 러시아는 Decision No. 413, No. 414호에 따라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베냉 등 50개의 최빈국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에 대한 내용은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표 2-III-3〉 러시아의 수입대상국 분류에 따른 최빈국 명단

최빈국으로 분류된 국가명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부탄	바누아투	아이티
감비아	기니	지부티
잠비아	예멘	캄보디아
키리바시	콩고	코모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동티모르	토고
투발루	우간다	차드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이티오피아
남 수단		

자료: 유라시아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D0%9F%D0%B5%D1%80%D0%B5%D1%87%D0%BD%D0%B8%20%D1%80%D0%B0%D0%B7%D0%B2%D0%B8%D0%B2%20%D0%B8%20%D0%BD%D0%B0%D0%B8%D0%BC%20%D1%80%D0%B0%D0%B7%D0%B2%20%D1%81%D1%82%D1%80%D0%B0%D0%BD%20\(%D1%81%20%D0%B8%D0%B7%D0%BC,%2035%20%D1%80%D0%B5%D1%88\).pdf](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D0%9F%D0%B5%D1%80%D0%B5%D1%87%D0%BD%D0%B8%20%D1%80%D0%B0%D0%B7%D0%B2%D0%B8%D0%B2%20%D0%B8%20%D0%BD%D0%B0%D0%B8%D0%BC%20%D1%80%D0%B0%D0%B7%D0%B2%20%D1%81%D1%82%D1%80%D0%B0%D0%BD%20(%D1%81%20%D0%B8%D0%B7%D0%BC,%2035%20%D1%80%D0%B5%D1%88).pdf)(검색일자: 2017. 8. 20.)

- 수입관세는 종가세, 종량세, 종가 및 종량의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종가세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로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임
  - 종량세는 상품의 양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량 및 중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예시: 일회용 가스라이터는 5Euro/1000pcs, 벽시계는 관세율 20%(최소 0.7Euro/pcs) 등

- 중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예시: 합성섬유제모포는 관세율 20%(최소 0.7Euro/kg), 면제양말은 관세율 15%(최소 2.0Euro/kg)
- 수입가격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의 경우 수입관세율로 정한 금액과 종량세 금액을 비교하여 보다 큰 금액을 징수하고 있음
  - 증가 및 종량 혼합형의 경우 제품의 금액 및 양에 따라 증가 및 종량 관세를 모두 부과하거나 2가지 중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임
  - 증가 및 종량 혼합형의 예: 담요/이불 등은 관세율 17.5%(그러나 0.6유로/kg 이상 부과 의무), 천으로 만든 청소용 걸레 등은 관세율 13.5%(그러나 0.46유로/kg 이상 부과 의무)
- 수입관세율은 원료가 가장 낮고 반가공품 및 완제품의 차례로 높아지지만 최고 및 최저 세율 간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음
- 러시아는 「관세율법」(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5003-1 Of May 21, 1993 on the customs tariff)에서 관세를 계절관세 및 특정관세<sup>64)</sup>로 분류하고 있음
  - 계절관세는 1년에 6개월을 넘지 않는 동안 부과되며 물품의 수입 시기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특정관세는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특별관세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별관세는 특정 물품과 특정 수입량이 러시아 자국 물품의 공정거래를 방해하거나 특정 국가나 국가연합 등이 러시아 국내 산업발전에 해를 끼칠 시 보복성으로 부과함
  - 반덤핑관세는 수출국 기업의 부당하게 낮은 금액(원가 이하, 이하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러시아 산업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러시아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함

---

64)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5003-1 OF MAY 21, 1993 On The Customs Tariff,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rus\\_e/WTACCRUS48\\_LEG\\_90.pdf](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rus_e/WTACCRUS48_LEG_90.pdf)(검색일자: 2017. 8. 31.)

### 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분포

- 2012년 WTO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HS 10단위 기준 11,557개 품번에 대한 관세를 8년에 걸쳐 양허하기로 하였음
  - 2012년 최종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품번을 제외하고 8년을 기준으로 7,028개의 품번에 대한 양허가 진행되고 있음

〈표 2-III-4〉 러시아의 최종 양허세율 이행 계획(2012~2020)1)

연도	최종 양허세율적용 세번 수	양허예정 세번 수	%
2012	4,529	7,028	60.8
2013	5,030	6,527	56.5
2014	6,344	5,213	45.1
2015	9,339	2,218	19.2
2016	10,737	820	7.1
2017	11,409	148	1.3
2018	11,486	71	0.6
2019	11,533	24	0.2
2020	11,557	0	0.0

주: 1) HS 10단위 기준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45

- 2016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MFN 실행세율은 8.3%로 목표치인 최종 양허세율 8.4%보다 이미 낮은 수치임
  - 2016년 약 820개의 품목이 양허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MFN 실행세율이 이미 낮은 것은 MFN에 실행세율의 면세 적용 비율이 최종 양허세율의 면세 적용 비율에 비해 큰 것에 기인함
- 농산물 및 비 농산물의 MFN 실행세율 평균은 2012년보다 2016년에 감소하였으며 비농산물의 MFN 실행세율 평균은 최종 양허세율에 비해서도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쿼터가 적용된 품목의 비율도 2012년보다 조금 낮아졌으며 최종 적용 비율 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III-5〉 러시아의 2012~2016년 MFN 세율 구조<sup>1)</sup>

	2012년 MFN 실행세율	2016년 MFN 실행세율	최종 양허세율 (final bound rate)
단순 평균세율	11.0	8.3	8.4
농산물	17.6	14.6	13.6
비농산물	9.1	6.5	7.1
면세 적용 비율(%) <sup>2)</sup>	14.0	16.0	3.7
쿼터 비율(%) <sup>3)</sup>	0.5	0.4	1.2

주: 1) HS 10단위 기준

2) 전체 품번 중 면세가 적용된 품번의 비율

3) 전체 품번 중 쿼터가 적용된 품번의 비율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46

- 농산물의 경우 전체품목의 약 44.0%가 0~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21.3%에 5~10%의 세율이, 24.5%의 품목들에 10~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러시아의 농산물 대부분의 품목에 10%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농산물의 2.3%는 50~10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농산물의 3.0%의 경우 면세되고 있음
  
- 비농산물의 경우 전체 품목의 51.6%가 0~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30.2%의 품목들에 5~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러시아 비농산물 대부분의 품목에 10%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비농산물의 3.4%가 면세되고 있으며 0.8%만이 15~2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비농산물은 10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는 농산물과 달리 25% 이하의 관세율만 적용되고 있음

〈표 2-III-6〉 2016년 러시아의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분포<sup>1)</sup>

(단위: %)

분포	면세	0≤5	5≤10	10≤15	15≤25	25≤50	50≤100	> 100
	관세품목 및 수입가격(비율)							
농산물								
양허 관세	9.2	40.1	17.4	25.8	3.1	1.1	1.8	0.3
2016년 MFN 실행관세	3.0	44.0	21.3	24.5	3.6	1.0	2.3	0.3
2015년 수입	16.6	30.7	14.3	23.5	4.4	5.3	5.3	0.0
비농산물								
양허 관세	16.5	40.5	25.3	14.3	3.1	0.0	0.0	0.0
2016년 MFN 실행관세	3.4	51.6	30.2	14.1	0.8	0.0	0.0	0.0
2015년 수입	36.0	29.5	21.0	7.5	0.9	0.1	0.0	0.5

주: 1) HS 6단위 기준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 2016년 기준, <http://stat.wto.org/TariffProfile/WSDBTariffPFView.aspx?Language=E&Country=RU>(검색일자: 2017. 8. 24.)

- 평균세율이 비교적 높은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동물성 생산품(MFN 실행세율 평균 23.0%, 양허세율 평균 23.7%)과 음료 및 담배(MFN 실행세율 평균 22.5%, 양허세율 평균 25.8%)이며 비농산물의 경우 이송장비(MFN 실행세율 평균 8.9%, 양허세율 평균 7.5%)와 의류(MFN 실행세율 평균 8.6%, 양허세율 평균 7.5%)임
- 러시아로 수입되는 농산물 중 음료 및 담배에 233%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비농산물의 경우 어류 및 어류제품에 양허세율 106%, MFN 실행세율 11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음
  - 농산물 중 동물성 생산품 또한 80%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러시아로 수입되는 농산물 중 커피와 차의 경우 양허세율 적용 시 20.8%가 면세되고, 동물성 생산품은 양허세율 적용 시 17.5%가 면세됨

- 러시아로 수입되는 비농산물 중 기계류의 경우 양허세율 적용 시 67.4%가 면세되고, 전자기기의 경우 양허세율 적용 시 44.7%가 면세됨
- 이송장비는 양허세율 적용 시 16.8%가 면세됨

〈표 2-III-7〉 품목별 관세율 수준<sup>1)</sup>

(단위: %)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23.7	17.5	80	23.0	7.4	80
유제품	15.2	0	43	15.1	0	43
과일, 채소, 식물	8.2	4.8	15	8.4	0.2	15
커피, 차	5.9	20.8	13	6.3	4.2	13
곡물 및 곡물조제품	9.7	3.5	67	10.1	1.3	67
종유, 지방 및 유지	6.7	16.9	15	7.1	8.2	25
당류와 설탕과자	10.4	0	44	11.1	0	44
음료 및 담배	22.8	4.4	233	22.5	0	233
면	0.0	100.0	0	0.0	100.0	0
기타 농산물	4.9	7.4	12	5.3	0	10
어류 및 어류제품	7.6	0.9	106	7.6	0	115
광물 및 금속	7.8	6.9	20	8.0	0.1	20
석유	4.4	12.9	5	5.0	0	5
화학제품	5.0	8.7	13	5.2	0.4	10
목재, 지류 등	8.7	6.4	16	8.0	5.0	15
직물	8.0	0.6	18	7.7	0	18
의류	7.5	0	20	8.6	0	20
가죽제품, 신발류 등	6.2	9.9	15	6.2	0	15
기계류	2.8	67.4	16	5.8	7.9	15
전자기기	4.6	44.7	17	6.2	23.3	15
이송장비	7.5	16.8	22	8.9	2.5	20
기타 제품	8.1	21.0	20	8.4	7.9	20

주: 1) HS 6단위 기준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 2016년 기준 <http://stat.wto.org/TariffProfile/WSDBTariffPFView.aspx?Language=E&Country=RU>(검색일자: 2017. 8. 24.)

## 다.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sup>65)</sup>의 종류 및 형태

- 수출세(export duty)는 재정수입 확보, 교역조건(terms of trade) 개선, 수출상품의 국내가격 안정,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 러시아는 1991년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음
  - 러시아의 수출세는 정부 훈령<sup>66)</sup>에 따라 도입되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수출 물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음
    - 상당수의 지역무역협정은 수출세의 무역왜곡효과를 고려하여 역내국 간 수출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EAEU 회원국 간 물품 수출 시 수출세는 면제하고 있음
  
- WTO 가입에 따라 러시아는 고철, 구리, 목재, 펄프 및 종이 등 HS 10단위 기준 703개 품목에 대한 수출세를 양허하기로 하였으며 그중 495개의 품목은 5년 안에 수출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음
  
- 현재 정부 훈령<sup>67)</sup>에 따라 HS 10단위 기준 343개 품번에 수출세가 부과되고 있음
  
- 수출세는 종가세, 종량세, 종가 및 종량 혼합형으로 부과되고 있음
  
- 수출세는 가스콘덴세이트(2709001001)에 적용되는 0%를 비롯하여 1.25%(수산물)에서부터 80%(목제품)까지의 범위 내에서 9가지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 수출세는 0%, 30%, 6.5%, 1.25%, 7.5%(최소 €7.5/1,000kg), 13%, 15%, 80%(최소 €55.2/m<sup>3</sup>), 25%(최소 €15/m<sup>3</sup>)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65) RUSSIA'S ACCESSION TO THE WTO: MAJOR COMMITMENTS, POSSIBLE IMPLICATIONS, <http://www.intracen.org/uploadedFiles/Russia%20WTO%20Accession%20English.pdf> (검색일자: 2017. 8. 31.)

66) Government Resolution No. 91 of December 31, 1991, (On introducing export tariff for certain goods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at form the basis of the Russian)

67) Government Resolution No. 705 of 25 July 2014 (On the Changes of the Rates of the Export Customs Duties on Goods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beyond the Borders of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Agreements on Customs Unions) (2015년 9월 25일 최종 수정)

- 「EAEU 신관세법」에서는 수출관세를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통관세 영역 내 다른 회원국으로 물품 수출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러시아로부터 공통관세 영역 내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다시 회원국에서 제3국  
으로 재수출될 경우 회원국은 러시아 정부에 수출세의 50%를 송금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표 2-III-8〉 수출세 부과 예시

품번	품목	세율
2711210000	천연가스	30%
7102310000	자연산 또는 양식진주, 보석, 귀금속 등	6.5%
7601209100 7601209900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1.25%
7204491000 7204493000 7204499000	철, 철의 조각 등	7.5% (최소 €7.5/1,000kg)
440320110의 합 440320190의 합 이 6,246,500m <sup>3</sup>	나무, 숲, 변재 등 및 기타 (원통형상)	13%
440320310의 합 440320390의 합 이 16,038,200m <sup>3</sup>	나무, 숲, 변재 등 및 기타	15%
4403201101 4403201102 4403201901 4403201909 4403203101 4403203102 4403203901 4403203909	나무, 숲, 변재 및 기타 (쿼터량 초과 시)	80%(최소 €55.2/m <sup>3</sup> )
4403209101 4403209102 4403209103 4403209104 4403209109 4403209901	나무, 숲, 변재 등 및 가공되지 않은 나무의 껍질 및 기타	25%(최소 €15/m <sup>3</sup> )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p. 66~67

-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경우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음
  -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세는 러시아 경제개발부에서 모니터링하며 수출세율을 매달 조정하고 있음
  - 매달 1일부터 말까지 적용할 수출세율을 발표하고 있음<sup>68)</sup>
  
- 러시아 경제개발부에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유에 대해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sup>69)</sup>
  - 원유 석유 및 원유제품 96.1US/1톤
  - 벤젠, 톨루엔, 디젤연료, 증류제품 28.8US/1톤
  - 직류가솔린 52.8US/1톤
  - 가솔린 제품 28.8US/1톤

---

68) ALTA News, [https://www.alta.ru/laws\\_news/](https://www.alta.ru/laws_news/)(검색일자: 2017. 11. 16.)

69) "On export customs duties on oil and certain categories of goods produced from oil produced from oil for the period from November 1 to November 30, 2017", <https://www.alta.ru/tamdoc/17bn0068/>(검색일자: 2017. 11. 16.)

## IV. 감면 및 환급제도

### 1 산업지원 및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관세의 감면

---

- 러시아의 관세 감면은 산업지원 및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과 「관세법」상 감면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세금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우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
  - 투자 우선 프로젝트의 경우 총투자 규모가 1억달러 이상이며 그중 외국인 투자가 천만달러 이상인 외국인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수입관세 50%를 감면해주는 형태임
  - 우대 여부는 경제개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 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는 러시아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제조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윤세나 지방세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설비기계 등 자본재 수입에 대한 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음<sup>70)</sup>

---

70)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https://www.exportcenter.go.kr/supporter/support\\_info/guide\\_russia.jsp](https://www.exportcenter.go.kr/supporter/support_info/guide_russia.jsp)  
(검색일자: 2017. 6. 22.)

- 우대세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 지방 정부와의 개별적인 교섭을 필요로 함
- 자동차 조립생산 기업들은 대부분 연방 및 지방 정부로부터 조립생산용 부품의 관세 감면과 일부 지방세의 면제 혜택을 받고 있음
  - CKD 방식(완전분해부품 조립방식)으로 생산방식을 전환하거나 혹은 부품의 30%를 현지화할 때(localization) 부품 수입 관세를 7년간 감면해주고 있음<sup>71)</sup>
- 칼리닌그라드를 시작으로 하는 특별 경제지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세 감면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컴퓨터 제조의 경우 관세 감면 등의 적용요건은 현지가공에 의해 제품의 15% 이상의 가치 부가창출 등임
  - 요건 충족 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수입 시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통관수수료 면제 등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선도개발구역에서는 외국 물품의 반입, 보관, 사용 시 관세와 세금이 면세되는 관세 자유구역이 설정되어있음
  -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경제특구의 관세 자유지역에서는 수입에 대한 VAT 및 수입관세가 면세되며 비관세 규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또한 관세 자유지대가 조성되어 반입되는 상품, 수출품, 수입품(관세동맹 역외로부터)을 이용하여 제작한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자유항에 속하는 권역 전역이 사실상 관세 자유지대가 되지만 선도개발구역은 특정 장소에 관세 자유지대가 별도로 조성된다는 차이가 있음
- 러시아 경제특구와 관련한 내용은 제Ⅵ장 보세제도의 3.경제특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음

71) 러시아의 자동차 역사 - 외국 선진 자동차 메이커와의 합작 적극,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21&wr\\_id=567&page=11](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21&wr_id=567&page=11)(검색일자: 2017. 6. 22.)

## 2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 및 환급

### 가. 「유라시아경제연합 신관세법」상 관세의 감면 및 환급과 적용 요건

-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법」(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 신관세법」)에서는 별도의 관세 감면 규정이 없으나 통관절차별로 감면 및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조항에 직접 감면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며 외교관용 물품 등의 경우 별도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EAEU 신관세법」 제4장 통관절차 및 제5장 특정물품의 이동과 세관작업에서 관세의 감면 및 환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물품에 따른 특수 통관절차 및 적용 대상, 조건, 관세 및 제세금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 감면 및 환급이 적용되는 통관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은 「EAEU 신관세법」의 규정을 따르되 재수출의 기한이나 각종 절차에 따른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국의 「관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 2-IV-1〉 「EAEU 신관세법」 제4장 및 제5장상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통관절차 규정

해당 규정번호	규정 내용
제4장 제24절	관세영역 내 물품 가공 절차
제4장 제25절	관세영역 외 물품 가공 절차
제4장 제26절	국내소비를 위한 물품 가공 절차
제4장 제29절	일시 수입 통관절차
제4장 제30절	일시 수출 통관절차
제4장 제31절	재수입 통관절차
제4장 제32절	재수출 통관절차
제4장 제34절	손상된 물품 통관절차
제4장 제35절	국익을 위한 포기 통관절차
제4장 제36절	특별 통관절차
제5장 제38절	국제수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제5장 제42절	특정 분류의 사람, 외교 우편, 영사행낭에 대한 통관절차

자료: EAEU 신관세법, <https://www.alta.ru/codex/tkg129.html>(검색일자: 2017. 12. 12.)

### 1) 제4장 제24절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이하 관세영역) 내 물품 가공 절차<sup>72)</sup>

- 제24절에서는 외국 물품을 공통관세 영역 내에서 가공한 후 수출할 경우에 대한 수입관세 및 제세금의 조건부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관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관세영역 내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에 대해 신고인의 수입관세·조세 납부 의무는 세관신고서 등록 시점부터 신고인에게 발생함
  - 단, 물품 가공기간이 만료되기 전 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가 완료된 경우, 수입관세·조세 납부기간이 해당 통관절차의 기간 내에 시작한 경우에는 의무가 중지됨
- 수입관세·조세는 만약 가공작업을 수행한 자 또는 가공 조건에 대한 서류를 발급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물품을 양도할 시 물품의 양도일로 하고, 양도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세관신고서의 통관기관 등록일로부터 기산함
  - 물품이 손상되었을 시 손상일로 하고 손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관신고서의 통관기관 등록일로부터 기산함
  - 물품의 가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 물품의 가공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함
  - 공통관세영역 내에서 물품을 가공하고 국내에서 소비하게 될 때에는 조건부로 면제되었던 수입관세·조세를 납부해야 함
- 공통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허가되는 가공작업은 외국 물품의 특성을 잃게 되는 처리와, 물품의 조립, 설치, 해체, 조정, 복구, 부분 부품 교체 등임
  - 물품의 판매 및 운송 준비 시 물품을 보존하는 작업, 가축의 새끼를 얻거나, 나무 및 식물의 재배, 정보매체 형태의 정보, 음성·영상기록물의 복제 및 재현, 보조 장치와 같은 외국 물품의 사용 등과 관련한 작업은 가공작업에 제외함
  - 통관기관의 허가를 통해 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하는 외국 물품은 동등한 물품으로의 교체가 허용되며 동일한 물품을 가공한 물품에 외국 물품의 지위가 부여됨

72)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 가공된 외국 물품임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신고인, 가공업자 또는 통관기관 공무원  
은 원래의 외국 물품에 날인, 봉인, 디지털표지 또는 다른 방식의 식별 표지를 부  
착해야 함
  - 외국 물품의 자세한 내역, 사진, 전면 그림, 외국 물품 및 해당 물품 가공제품에서  
사전에 채취한 견본 및 표본 비교, 일련번호 형태를 포함한 물품 표지 등을 사용하여  
외국 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통관세영역 내에서 물품 가공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승인기관, 서류 발급자, 서류를 발급받는 자,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할 자, 외국 물  
품 및 가공제품의 분류·명칭·수량·가격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있어야 함
  - 대외경제 거래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대외경제 거래를 통하지 않은 물품의 원소유,  
사용 또는 처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가공물의 수출세 예정 금액
  - 가공제품의 산출물 표준<sup>73)</sup>
  - 물품의 가공작업, 가공방법
  - 물품의 식별방법
  - 대외경제활동 물품 목록에 따른 폐기물 및 잔여물의 분류·명칭·수량·가격
  - 관세영역 내 물품 가공기간
  - 동등한 물품으로 교체 시 해당 내용
  - 향후 폐기물의 상업적 사용 가능성
  - 관세영역 내에서 물품을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통관기관 등
  
- 공통관세영역 내 물품 가공절차의 통관기간은 서류에 명시되어있는 물품의 가공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2) 제4장 제25절 관세영역 외 물품 가공절차<sup>74)</sup>

- 제25절에서는 공통관세영역 밖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후 추후 반입되는 물품에 대  
한 조건부 수출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73) 일정한 수량의 관세영역 물품을 가공한 결과 발생하는 가공제품의 수량 또는 내용물 비중

74)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ar.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 본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관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관세영역 밖의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하는 물품은 관세연합 물품의 지위를 상실함
- 수출세의 납부기한은 직접적인 운송업자가 아닌 자에게 통관기관 허가 없이 물품을 양도할 경우 물품의 양도일로부터, 양도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시 양도사실을 통관기관이 확인한 날로 함
- 물품의 가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물품이 손상되었을 시 손상일로 정하며 손상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시 손상 사실을 통관기관이 확인한 날로 함
  - 가공기간이 만료되기 전 관세영역 밖에서 가공 통관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물품의 가공기간 만료일로 함
  - 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을 장치할 시 납부해야 했던 수출관세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관세영역 밖에서 가공하고자 물품을 장치하기 위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통관기관 등록일에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
- 가공으로 인해 물품의 성질이 달라진 경우, 물품의 제조·조립·해체, 물품의 수리, 부품대체 등이 발행했을 시 본 규정에 따라 수출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가공 후 반입되는 물품은 물품에 부착된 봉인, 마킹, 사진, 상세 설명서, 시리얼번호 등을 비롯하여 공통관세영역에서 반출된 물품임을 확인받은 후 수출관세가 면제됨
  - 가공한 물품의 가치에 따라 수입관세 및 제세금이 부과됨
- 제24절의 물품과 마찬가지로 가공된 외국 물품임을 식별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외국 물품임을 식별하기 위해서 신고인, 가공업자 또는 통관기관 공무원은 원래의 외국 물품에 날인, 봉인, 디지털표지 등을 부착해야 함
  - 그 밖에 외국 물품의 자세한 내역, 사진, 전면 그림, 외국 물품, 외국 물품의 가공 제품에서 사전에 채취한 견본 및 표본 비교, 일련번호 형태를 포함한 물품 표지 등을 사용하여 외국 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물품의 가공기간은 2년 이내이며 해당 물품을 관세영역 밖에 장치한 날로부터 시작하며, 세트로 세관에 신고할 시 물품의 첫 세트 장치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함

- 물품 가공기간에는 물품 가공의 생산처리 기간, 가공제품을 사실상 반출하고 장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이 포함되며 회원국의 법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관세영역 밖에서 물품을 가공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승인기관, 서류를 발급한 자, 발급받는 자,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
  - 대외경제활동 물품 목록에 따른 연합국 물품 및 가공제품의 분류·명칭·수량·가격
  - 대외경제 거래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대외경제 거래를 통하지 않은 물품의 원소유, 사용 또는 처분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가공제품의 산출물 표준
  - 물품 가공작업, 가공방법
  - 관세영역 밖에서의 가공기간
  - 외국 물품으로 가공제품이 교체된 경우 해당 내용
  - 관세영역 밖에서 물품을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통관기관

### 3) 제4장 제26절 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통관절차<sup>75)</sup>

- 제26절에서는 국내소비를 위한 가공되는 물품에 대한 조건부 수입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정해진 기간에 공통관세영역 내에서 가공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 물품을 사용하는 절차임
  - 본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수출입 금지 및 제한 규정이 적용됨
  - 본 조항의 물품 가공작업에 따라 획득한 물품은 외국 물품의 자격을 취득함
  -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또한 면제됨
  - 부품의 수입관세가 완성된 물품의 수입관세보다 높은 물건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수입관세의 납부기한은 제24절 및 제25절의 기한과 동일함

---

75)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a.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 가공 또는 처리 과정에서 외국 물품이 그 특성을 잃는 경우, 조립, 설치, 해체 및 조정을 포함하여 물품을 제작하는 것에 한해 국내소비를 위한 가공절차에 해당함
  - 물품의 판매, 운송준비를 위해 보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나, 새끼를 얻거나, 나무 및 식물 재배, 모든 정보 매체 형태의 복제 및 재현은 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제24절 및 제25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된 외국 물품임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식별조건은 제24절 및 제25절과 동일함
  
- 물품의 가공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물품의 가공기간은 물품을 장치한 날부터 시작함
  - 물품을 세트로 세관신고 한 경우 국내소비를 위한 가공절차에 따라 첫 세트를 장치하는 날로부터 기산함
  - 위원회가 지정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가공기간이 바뀔 수 있으나 1년을 넘을 수 없음
  - 국내 소비를 위한 물품의 가공기간에는 물품 가공의 생산처리기간, 국내 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라 가공제품을 장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이 포함됨
  
- 국내소비를 위한 물품 가공조건에 관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서류 발급자, 승인기관, 서류를 발급받는 자,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
  - 대외경제활동 물품 목록에 따른 관세연합
  - 물품 및 가공제품의 분류·명칭·수량·가격
  - 대외경제 거래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대외경제 거래를 통하지 않은 물품의 원소유, 사용 또는 처분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가공제품의 산출물 표준
  - 물품 가공작업, 가공방법
  - 물품의 식별방법
  - 대외경제활동 물품 목록에 따른 폐기물 및 잔여물 명칭, 분류, 수량 및 가격
  - 국내소비를 위한 물품 가공기간
  - 폐기물의 향후 상업적 사용 가능성
  - 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을 장치하고 해당 통과절차를 완료하게 되는 통관기관

- 제27절은 경제특별구역에 대한 통관절차와 관세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제Ⅵ장 보세제도의 3.경제특구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생략함
- 제28절은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물품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보세창고와 관련한 내용이며 이 또한 제Ⅵ장 보세제도의 1.보세창고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생략함

#### 4) 제4장 제29절 일시 수입 통관절차<sup>76)</sup>

- 제29절에서는 재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관세영역에 장치하게 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부분적 조건부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관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수입관세 및 조세 납부기한은 임시 수입한 물품을 통관기관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시에는 양도일로, 양도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관신고서를 통관기관이 등록한 날로 정함
  - 일시 수입 기간 내에 물품이 손상된 경우 손상일로 하고, 손상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세관신고서를 통관기관이 등록한 날로 함
- 일시 수입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관세 및 조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국제 운동경기, 운동과 관련한 전시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또는 유라시아연합으로 일시 수입되거나 과학 또는 상업용 샘플이나, 테스트, 학술, 조사, 검사, 실험 또는 증거물로 사용되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으로 반입되는 물품, 카탈로그 등이 해당됨
  - 실험, 테스트, 연구를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연구조사기관은 법적 근거가 있는 문서를 통해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76)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 일시 수입 통관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수출을 예정으로 한 물품임이 식별 가능해야 함
  - 식품, 주류를 포함한 음료, 담배 및 담배제품, 원료 및 반제품, 소모품 및 표본, 단 해당 물품이 홍보 및 시범 목적으로 또는 전시물이나 생산 샘플로서 단품으로 반입 되는 경우는 제외함
  - 산업용을 포함한 폐기물, 수입 금지 물품은 제외됨
- 일시 수입절차에 따라 반입한 물품은 불변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처분이 제한됨
  - 정상적인 운송, 보관, 사용조건에서 자연적으로 감소되거나 손실된 경우는 예외로 함
  - 또한 물품의 정상적인 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물품의 보존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기본점검이나 기본적인 개조 등은 허가함
  - 일시로 반입한 물품에 대해 조사, 연구, 테스트, 검사, 시험 또는 실험을 시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일시 반입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허가하고 있음
- 일시 반입된 물품의 소유자 및 사용인은 신고인에 한정하나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 반입한 물품의 소유권 및 사용에 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기술지원, 수리(기본 점검 및 개조 제외), 보관, 운송목적, 경제연합 회원국 법 또는 국제협약이 정한 경우에는 통관기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통관기관에 양도 이유와 양도인 정보를 명시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물품의 일시 수입 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으나 반입의 목적 및 상황에 따라 통관기관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짧게 지정할 수 있음

#### 5) 제4장 제30절 일시 수출 통관절차<sup>77)</sup>

- 제30절에서는 재수입 통관절차에 따라 수출을 예정하고 반입되는 관세동맹의 물품에 대한 조건부 수출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비관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77)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 정해진 기한 내 수출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반출을 위해 수출신고서가 등록된 날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일시 수출은 물품이 재수입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 단, 식품, 주류를 포함한 음료, 담배 및 담배 제품, 원료 및 반제품, 소모품 및 표본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홍보 또는 시범목적으로 혹은 전시물이나 산업적 모델로 단품으로 반입되는 경우는 제외함
  - 산업용 폐기물 및 연합국의 수출 금지 물품은 일시 수출 통관에 따른 수출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 일시 수출절차에 따라 반출한 물품은 불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 및 처분이 제한됨
  - 정상적인 운송, 보관 및 사용조건에서 자연적 감소 및 자연적으로 손실된 경우는 제외함
  - 물품을 재수입할 때 통관기관이 식별가능하다는 조건에 따라 수리하거나 기술지원 및 물품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포함, 해당 물품의 보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은 허가함
- 일시 수출 후 반입 기간은 반출 목적, 상황 그리고 회원국의 법에 따라 정하도록 함

#### 6) 제4장 제31절 재수입 통관절차<sup>78)</sup>

- 제31절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공통관세영역에서 이전에 반출한 물품을 다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조세의 면제와 수출세 환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비관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재수입의 통관절차를 적용할 시 수출 통관과 함께 납부하였던 수출세는 재수입 후 6개월 이내에 환급되어야 함

---

78)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 재수입의 기한은 물품이 수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물품 및 상황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이 가능함
  - 물품은 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반출되었거나, 관세영역 내 가공절차에 따른 가공 제품이거나, 재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반출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 가공목적이 무상 수리이고 가공기간 내에 재수입 통관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장치한 경우 적용 가능함
  - 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라 반출 시 물품의 무상 수리 원인이 되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가공제품은 제외함
- 재수입 통관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 신고인은 물품 반출 상황에 관한 정보 및 물품 수리 작업이 있는 경우 공통관세영역 밖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와 정보를 통관 기관에 제공해야 함
  - 물품 반출 시 접수한 세관신고서, 물품 반출 시 이동한 날짜를 확인하는 서류를 통관 기관에 제출해야 함

#### 7) 제4장 제32절 재수출 통관절차<sup>79)</sup>

- 제32절에서는 공통관세영역으로 반입한 물품 또는 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반입하여 가공된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면제 및 수입관세와 제세금의 환급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비관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물품이 재수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입 시 납부하였던 수입관세와 제세금이 환급되고 수출관세는 면제됨
  - 손상된 물품이나 물품의 폐기물 일부가 재사용을 위해 러시아로 반입될 시에는 외국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및 제세금을 납부해야 함
- 재수출에 따라 수입관세 및 조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수출 기한은 반입일로부터 1년이며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79)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 국내소비를 위해 수입되었으나 국제거래 규정(예를 들어 품질, 수량, 포장, 설명 등)을 만족하지 못해 1년 이내에 반품되는 물품, 사용되지 않았거나 수리되지 않은 물품, 비관세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 등이 이에 해당됨
- 재수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다음의 정보를 통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공통관세영역 밖으로의 물품 반출 상황 관련 정보, 대외경제 거래 조건의 미이행에 관한 정보, 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의 장치 정보, 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 장치 후 해당 물품의 사용에 관한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함
- 제4장 통관절차 중 제33절은 면세점 거래에 관한 내용이므로 생략함

#### 8) 제4장 제34절 손상된 물품 통관절차<sup>80)</sup>

- 제34절에서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조세 납부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관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관 감독하에 폐기됨
- 일반적인 손상 물품을 비롯하여 사고 또는 불가항력적 행위로 인해 손상되거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 및 조세를 면제하고 있음
  - 폐기는 물품이 무효화, 완전 폐기 또는 해당 물품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유용성 및 기타 성질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유익한 방법으로 초기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 물품의 폐기로 발생한 폐기물은 수입관세 및 조세 징수 시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 반입된 외국 물품과 동일하게 간주함
- 다음의 물품은 본 절차에 따른 수입관세 및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문화적,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

80)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 회원국의 법 및 국제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종류의 동·식물 및 그 동·식물의 일부, 파생물, 단 전염병을 차단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폐기가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함
- 담보물로 통관기관이 정한 물품
- 압수물품 및 물적 증거가 되는 물품, 회원국의 법에 따라 압수되어야 하는 물품
- 물품의 폐기가 환경에 유해하거나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해한 경우
- 물품의 일반적인 용도에 따라 물품을 소비함으로써 물품이 폐기되는 경우
- 물품의 폐기가 동맹국의 국가기관에 비용을 유발할 경우

#### 9) 제4장 제35절 국익을 위한 포기 통관절차<sup>81)</sup>

- 제35절에서는 국익을 위해 포기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조세 납부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관세 규정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국익을 위한 포기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은 회원국 물품에 대한 지위를 획득하며 회원국에 양도됨
- 회원국의 법에 따라 금지된 물품, 유통기한이 종료된 물품은 본 규정의 제세금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국의 법에 따르도록 함

#### 10) 제4장 제36절 특별 통관절차<sup>82)</sup>

- 제36절에서는 특정 통관절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유라시아연합 경제위원회에서 특별 통관절차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음
  - 공통관세영역 외부에 외교적 목적으로 영사관이나 국제기구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81)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a.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82)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a.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 연합국 간에 외교적 목적으로 영사관이나 국제기구 등으로 운반되는 물품
  - 국가로고, 국기, 우표, 실, 책, 공식적인 프린트물, 사무용기구, 사무용품 등 국가의 요청 또는 국가를 대표한 요청에 의해 연합국의 공식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 연합국이 제3국과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동맹영역 내 위치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서 공식적인 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물품
  - 연합국이 맺은 국제적 조약에 따라 관세동맹영역으로 운반되는 기타 기구 또는 사무소에서 공식적인 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물품
  - 연합국의 기민성 확립 등 군사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동맹국의 관세영역 내외부로 운반되는 무기, 군사 관련 장비 등
  - 군사적 목적의 이벤트, 경기, 훈련(연합국 또는 그 외 국가도 포함)에 사용되는 무기, 군사장비 등
  -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혹은 재해 후 수습 목적의 차량, 물품, 기타 구호 물품, 비상차량, 구호 차량, 의료물품 등
  - 북극 또는 남극에서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과학적 조사, 탐험, 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금지약물검사 및 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공통관세영역으로 운송되는 물품
  - 의료물품, 스포츠영양학적 물질, 생활성 향상 식품 등으로 국가대표 운동팀의 지원을 위해 반입되는 물품으로 비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운동장비 및 국제운동경기 조직을 위해 반입되는 물품,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인공섬 건설을 위한 건축 목적, 조자 목적 혹은 전담 관할권을 가진 동맹국의 영토에서 사용되는 물품
  -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위해 반출입되거나, 우주공간 등에서 사용되는 물품
  - 국제전시 등에 사용되는 물품
- 「EAEU 신관세법」 제5장에서는 특정 범주의 물품에 적용되는 통관절차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음
- 제5장 제38절에서 국제수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 면제를 제42절에서 영사행나이나 영사우편물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11) 제5장 제38절 국제수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sup>83)</sup>

- 제38절에서는 일시적으로 관세동맹영역에서 수출되었다 다시 수입되는 수송수단에 대한 수출입 관세 및 조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공통관세영역으로 임시 반입되는 국제수송 운송수단은 외국 물품의 지위를 가지나 임시 반입 시 수입관세 및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국제수송 운송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화물의 적재, 하역, 처리 및 보호 또는 승객 및 수하물 서비스를 위해 함께 반입된 설비는 비관세 및 기술 규정 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출입 관세 및 조세가 면제됨
- 국제수송 운송수단이 경제연합의 물품이고, 연합국 국민이 연합국에서 등록한 경우 임시 반출이 허용되며 수출세가 면제됨
  - 반출된 국제수송 운송수단의 수리 또는 기술지원을 위해 반출되는 부품은 비관세 및 기술 규정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수출세 납부가 면제됨
  - 교체된 부품 및 설비는 재수입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 시 수입관세 및 조세가 면제됨
- 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제수송수단은 다음과 같음
  - 낚시에 사용되는 선박, 광물 기타 자원, 해저자원, 심층토, 수로 안내기, 탐사기 혹은 구호 또는 수리, 복구, 심해 자원을 들어 올리는 기기, 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잠수정, 학술·스포츠·문화적 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선박 등 모두 포함
  - 물품 및 승객의 국제수송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 민간 및 국영 항공기
  - 기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수리, 복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
  - 팔레트, 스탠드, 물탱크, 거래에 따라 반납되는 컨테이너, 운송수단의 스페어 부분과 장비,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물품
  - 일시적으로 해류를 따라 유입되는 것, 계약에 따라 물품을 운반하게 되는 항공기 컨테이너 등

83)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ar.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12) 제5장 제42절 특정 분류의 사람, 외교적 우편, 영사행낭에 대한 통관 절차<sup>84)</sup>

- 제42절에서는 제36절 특별 통관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관세 및 제세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에는 외교관 및 영사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차량 또한 포함되며 수출입 관세 및 조세를 면제함
- 국제회담, 국제회의 및 협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공식지지 이행을 위해 회원국을 방문하는 외국사절 단장, 의회 및 정부 사절 단원,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사절 단원 및 가족은 외교관에 적용되는 관세특혜를 적용받음
  - 국제기구, 국가 및 정부 간 기구, 해당 기구 산하 외국 대표부, 해당 기구와 대표부의 직원, 그 가족구성원을 위한 관세특혜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름
- 외교 전서사<sup>85)</sup> 및 영사 전서사가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세관조사 없이 국경으로 반입·반출할 수 있으며 관세 및 조세도 면제됨
- 연합국이 아닌 국가의 대표 또는 사절단에 의해 국제협상, 국제 컨퍼런스, 미팅, 기타 외교적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음
  - 단, 예외적으로 수입 금지 또는 수출 금지 물품이나, 보건 및 검역 등의 목적으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 물품을 반입한 당사자 입회하에서만 가능함
- 국경을 통해 이동하는 외교행낭<sup>86)</sup> 및 영사행낭은 개봉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발송지의 특성이 드러나는 외부기호를 부착해야 함
  - 외교행낭에는 공적 용도만으로 사용되는 외교서류 및 물품만 넣을 수 있음
  - 영사행낭에는 공적 용도만으로 사용되는 공식 서신 및 서류 또는 물품만 넣을 수 있음

84)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 12. 12.)

85) 전서사: 외교사절단과 본국 정부 간 및 자국의 다른 사절단과 영사기관 간에 외교행낭을 부탁받아 그 수송을 하는 권한이 부여된 자

86) 행낭: 외교사절단과 본국 정부 간 및 자국의 다른 사절단과 영사기관 간에 외교상의 서류 등의 수송에 사용되는 행낭(반드시 자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봉투 및 기타의 포장의 경우도 있음)

- 외교 전서사 및 영사 전서사의 지위, 행낭을 준비한 발송지에서 보낸 전서사의 숫자를 표기한 공식 전서사 명단이 물품과 함께 송부되어야함
  - 이 명단은 외교행낭 및 영사행낭을 발송하는 기관이 날인, 서명 및 봉인해서 송부되어야 함

#### 나. 「러시아 신관세법」상 관세 환급

- 「EAEU 신관세법」 제2장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납부된 관세 및 제세금의 환급은 각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짐
  - 초과 납부 또는 초과 징수된 수입관세 및 수출관세의 환급(산입)은 회원국의 국제협약으로 정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기 관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회원국의 법으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
  - 환급의 기한 또한 각국의 법을 따르도록 함
- 「러시아 신관세법」 제17장에서는 잘못 납부된 관세 및 제세금에 대해 과도하게 납부 또는 징수한 관세·조세액에 대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음
  -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서에 의하여 관세기관이 이행해야 함
  - 납세액을 징수한 관세기관에 납세자가 납부 또는 징수한 날부터 3년 내에 환급해주어야 함
  -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형태로 관세양허를 제공한 경우, 최혜국대우 또는 관세특혜를 회복한 경우, 러시아 연방 관세영역에서 외국 물품을 반출 또는 당해 물품을 파기하거나 국익을 위하여 포기한 경우 등 또한 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한국의 관세 환급과 같이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되돌려받는 개념의 관세 환급 제도는 사실상 없음
- 하지만 러시아로 수입되어 가공되어 수출된 예정인 원자재를 내부가공절차(inward processing relief; 이하 내부가공절차)에 따라 수입할 시 관세와 VAT 모두 면제해주는 다른 형식의 제도가 존재함<sup>87)</sup>

87) PWC, Importing and exporting, <https://www.investinregions.ru/en/investor/useful/import-export/customs-duties-incentives/>(검색일자: 2017. 8. 28.)

- 내부가공절차 적용 시 세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추후 수출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이때 수출관세 또한 면제함
  - 관련 관세의 면제는 러시아의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제조업체로 세관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함
  - 지역 세관 및 상황에 따라 일정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내부가공절차는 특별경제구역 또는 개별 협약(Industrial Assembly Agreement) 등에서 별도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관련 절차와 관세 환급을 위한 증명 등이 복잡해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V. 원산지 제도

### 1 개요

---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각국의 규정에 맞게 물품을 완전히 제조하였거나 충분히 가공한 국가를 의미함<sup>88)</sup>
  - 국가연합체, 관세동맹체, 지역 또는 국가 일부가 원산지로 인정됨
  - 원산지는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생산자 보호, 관세, 비관세 조치를 위한 무역정책 등을 위해 사용됨<sup>89)</sup>
  
- 러시아의 원산지 관련된 내용은 「러시아 신관세법」<sup>90)</sup>, 「EAEU 신관세법」<sup>91)</sup>에 규정되어 있음<sup>92)</sup>
  
- 러시아 원산지 규정은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분류됨

---

88) The federal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10.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89)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44

90) Law No. 311-FZ of 27 November 2010,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10

91)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4, Origin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1.)

92)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44

- 특혜원산지 규정에는 FTA에 따라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규칙과 개발도상국에게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규칙이 있음
-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관세, 수입제한, 원산지 표시 등을 위해 원산지를 구별하는 제도임
  - WTO 원산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한정되어 있음

## 2 특혜원산지 제도

### 가. FTA에 따른 특혜관세

- 러시아의 FTA 원산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EAEU-베트남 FTA를 예로 들겠음
  - 2015년 EAEU는 베트남과 첫 FTA를 체결함<sup>93)</sup>
  - EAEU-베트남 FTA는 2016년 10월 5일 발효됨
  - 협정은 기본 협정, 물품 무역, 무역 규제, 원산지 제도, 무역 원활화, 관세 행정 규정되어 있음
-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EAEU-베트남 협정에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sup>94)</sup>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goods)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물품을 완전히 생산해야 함
  -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에 따르면 물품의 운송 중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ontent)은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곳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임
  - 부속서 3에는 세번변경기준이 규정됨
  - 부속서 5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과 양식이 첨부되어 있음

93) 한국무역협회,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referDataView&num=34463>(검색일자: 2017. 11. 21.)

94)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F THE OTHER PART ARTICLE 4.8

- 원산지증명서인 Form EAV를 발급받아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 전자시스템(Electronic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System: EOCVS)을 이용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불인정 공정기준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경미한 작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음
  - 운송이나 보관하는 중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 공정
  - 얼리거나 해빙
  - 포장하거나 재포장
  - 먼지를 없애거나 세척, 산화, 채색, 청소
  - 다림질하거나 누르기
  - 채색, 광내기
  - 곡류의 부분 또는 전체 탈각, 연마, 도정
  - 설탕이나 각설탕의 채색이나 공정
  - 견과류, 과일, 채소의 씨 제거하거나 껍질 벗기기
  - 단순한 연마, 절단
  - 단순한 분류 및 구분
  - 병, 캔, 가방, 케이스, 박스, 표면 고정 같은 단순한 포장 공정
  - 물건 포장의 표기, 로고
  - 원래 물품에 변화를 없게 하는 단순한 물품 부품의 혼합
  - 단순한 물품의 조립과 해체
  - 동물의 도축

## 나. 일반특혜관세

-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특혜 세율을 적용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 러시아는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인장 및 서명을 불인정하고 있음<sup>95)</sup>
    - 신청 세관에 방문하여 수기인장 날인 및 담당자 서명을 받아야 함

95) 수출입기업지원센터, www.inebsc.com(검색일자: 2017. 12. 20.)

- 일반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 충분가공공정과 완전생산기준, 직접 운송원칙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sup>96)</sup>
  
-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국 기관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 수입자는 수입 신고 시 특혜관세를 요청해야 함
  -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임<sup>97)</sup>
  -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면 특혜 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는 러시아어나 영어로 제출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시, 공식적인 사본의 증명서도 인정받을 수 있음<sup>98)</sup>
  
-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수출국이나 원산지국에 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증명서가 6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 서류 보충을 위한 기간 동안 수입물품에 일반 세율의 관세가 부과됨<sup>99)</sup>
  -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나 서류가 잘못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sup>100)</sup>
  - 물품이 같은 시각 같은 방법으로 운송되었으며 가격이 2만루블 미만인 경우
    - 선적 서류나 송장을 대체 서류로 요구할 수도 있음
    - 세관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 일반 개인이 물품을 이동시킨 경우
  - 원산지국의 물품이 일시적으로 비관세인 경우
    - 러시아에서 금지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함
  - 국제조약 또는 러시아 「연방법」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

---

96) Agreement On Rules Of The Origin Of Goods, Originating From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12 December 2008

97)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44

98) Agreement On Rules Of The Origin Of Goods, Originating From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12 December 2008

99)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44

100)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4, Origin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1.)

### 3 비특혜원산지 제도

-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양자 간 무역협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원산지를 판명할 때 적용됨
-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나뉨
  - 완전생산기준은 모든 생산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sup>101)</sup>
    - 당해 국가의 땅 속·영해·해저에서 채굴한 유용광물
    - 당해 국가가 원산지인 식물 및 수출 국가에서 성장 또는 수집한 제품.
    - 당해 국가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동물
    - 당해 국가에서 성장한 동물로 제조한 제품
    - 당해 국가에서 사냥 및 어류조업으로 취득한 제품
    - 당해 국가에서 선박조업으로 취득한 해양 어류 제품 및 기타 해양제품
    - 당해 국가의 가공어선에서 가공한 제품
    - 당해 국가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지하에서 취득한 제품
    - 당해 국가에서 생산 또는 가공 작업한 결과 취득한 폐기물 및 파편
  - 실질변형기준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임<sup>102)</sup>
    - 원산지국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일정한 생산 또는 기술 과정을 거쳐야 함
    - 제조된 물품의 세번 4자리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함
-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sup>103)</sup>
  - 물품의 보관 또는 운송 과정의 물품 보존작업
  - 판매 및 운송을 위한 물품 준비작업(물품 분할, 발송서 작성, 분류, 재포장)
  - 물품 상태를 변하지 않게 하는 단순조립작업 및 기타 작업

101) The federal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10.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102) The federal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10.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103)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4. Origin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1.)

## 4 원산지 사전결정 및 증명서

---

### 가. 원산지 사전결정

- 수출자 및 수입자는 원산지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기입해야 함<sup>104)</sup>
  - 신청자 이름과 주소
  - 물품의 공식적인 명칭
  - 물품의 주요한 기술과 상업적 특징
  - 주요한 기능
  - 등급
  - 브랜드
  - 모델명
  - 수송수단의 포장
  - 가치
  - 품목번호
  -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 번호, 가치
  
- 세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적인 정보를 신청자에게 요청해야 함<sup>105)</sup>
  - 신청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세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추가적인 정보가 원산지 사전결정을 위해 충분하지 않거나 부정확하다 판단될 시 사전결정을 거절할 수 있음
  
- 세관은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sup>106)</sup>

---

104)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4, Origin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2.)

105)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4, Origin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2.)

106)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4, Origin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2.)

- 신청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이 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임
  -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 후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증명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원인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는 통관 시 기타 서류와 제출해야 함

## 나.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국에 관하여 수입국 세관에 증명하는 서류임
-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물품을 반출하는 국가의 관할기관 또는 관할기구가 발급함
    - 물품을 반출한 국가에서는 물품 원산지국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
- 러시아의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sup>107)</sup>
- 연방 상공회의소 법무과에서 발급 가능함<sup>108)</sup>
  - 신청서는 연방 상공회의소 홈페이지<sup>109)</sup>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발급한 기관은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원산지를 증명할 기타 서류를 보관해야 함<sup>110)</sup>
- 러시아의 원산지증명서는 기본형과 특별형으로 분류됨
- 철강과 모피(fur)만 특별형에 해당되며 이외의 물품은 기본형 증명서가 발급됨
  - 기본형은 수출국에 따라 일반형(Standard Type), ST-1형(ST-1 Type), A형(A Type)으로 분류됨<sup>111)</sup>

107) 주소: Russia, 109012 Moscow, St. Ilyinka, 6, 전화: (7-495) 620-0128,

108) 홈페이지 주소: <http://www.tpprf.ru>

109) 연방 상공회의소, <http://sim.of.tpprf.ru/>(검색일자: 2017. 11. 20.)

110)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4. Origin of goods, <https://www.alta.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2.)

111) RUSTANDARD, <http://www.rustandard.com/en/news/69-certificati-dorigine-notizie.html> (검색일자: 2017. 11. 25.)

〈표 2-V-1〉 원산지증명서 종류

구분	종류	대상제품과 국가
기본형	일반형	ST-1, A형 대상 국가를 제외한 국가
	ST-1형	구 CIS 국가, 그루지아
	A형	EU국, 터키, 미국, 캐나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특별형	철강 제품	강철 제품에 적용
	모피 제품	모피(Fur) 제품에 적용

자료: 러시아 원산지증명서,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14036>(검색일자 2017. 11. 25.)

-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는 연방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sup>112)</sup>
  - 증명서 고유번호, 발급일, 전산 등록번호의 정보가 필요함

[그림 2-V-1]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조회

Verificat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conclusions and examination report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Conclusions State purchases

Certificate form CT-1 Certificate form CT-2 Certificate of national uniform Certificate form CT-1 UZ EAV form certificate Grain certificate for the EU

### Checking for a Certificate of Form A

증명서 고유번호 Certificate number: \*

전산등록번호 Form number: \*

발급일 Date of issue (dd.mm.yyyy):

Send inquiry

자료: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https://verification.tpprf.ru/>(검색일자 2017. 11. 20.)

112)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https://verification.tpprf.ru/>(검색일자 2017. 11. 20.)  
 영어 확인 홈페이지: <http://verification.tpprf.ru/?langData=en>  
 러시아어 확인 홈페이지: <http://verification.tpprf.ru/?langData=ru>

[그림 2-V-2]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1. Exporter (business name, address and country) 수출자정보			4. No. _____  <b>EAEU-VN FTA                  Certificate of Origin                  Form EAV</b>				
2. Importer/Consignee (business name, address and country) 수입자정보(회사명, 주소)			Issued in _____ (country)  For submission to _____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운송수단과 경로			5. For official use				
6. Item No.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8. Description of goods	9. Origin criterion	10. Quantity of goods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아이템번호	포장번호,	물품설명	원산지결정기준	물품 수량	송장번호 및 날짜		
12. Certification <small>출류</small>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applicant is correct.			13. Declaration by the applicant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rules of origin as provided for in Chapter 4 (Rules of Origin) of the EAEU-VN FTA				
Place	Date	Signature	Stamp	Place	Date	Signature	Stamp

자료: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https://verification.tpprf.ru/search/formA>(검색일자: 2017. 11. 20.)

- 물품에 대한 첫 번째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시험기관 SoyuzExpertize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sup>113)</sup>
  - SoyuzExpertiza (<http://www.soex.ru>)<sup>114)</sup>에서 검사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음
  - SoyuzExpertiza는 연방 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임
  
- 시험성적서 발급 서류와 비용은 다음과 같음<sup>115)</sup>
  - 신청서(사업자등록번호, 허가증, 세금납부번호 등 기재 필요)
  - 선적서류(계약서류, 선하증권, 송장 등)
  -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러시아에서 생산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완제품의 경우 품목분류(HS Code) 확인증
    - 가축, 육류 등 경우 위생증명서, 광물 분야 경우 사업허가증이 추가로 필요함
  - 발급에 드는 총비용은 약 1만 5백루블임

〈표 2-V-2〉 원산지증명서 유형별 필요서류

구분	종류	필요서류
기본형	일반형	신청서 2부(원본, 복사본), 시험성적서
	ST-1형	신청서 2부(원본, 복사본), 시험성적서
	A형	신청서 2부(원본, 복사본), 시험성적서, 수출계약서(대표자 서명, 회사 직인 날인이 된 형태), 송장, 표지 레터 (세금납부번호, 사업자등록증번호 기재 요망)
특별형	철강 제품	신청서(신청회사 고유 양식), 시험성적서, 수출허가증, 신청서 2부(원본, 복사본)
	모피 제품	신청서(신청회사 고유 양식), 시험성적서, 신청서 2부(원본, 복사본)

자료: 러시아 원산지증명서,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14036>(검색일자: 2017. 11. 25.)

113) 원산지증명서,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14036>(검색일자 2017. 11. 20.)

114) Russia, 125009, Moscow, Malaya Dmitrovka str., 13/17, (7-495) 606-7941, (7-495) 650-0382

115) 원산지증명서,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14036>(검색일자 2017. 11. 20.)

- 세관은 원산지증명서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sup>116)</sup>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관할기관에 추가 서류를 요청함
  - 날인·세관봉인이 없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의 정보가 신고한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원산지국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

116)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4. Origin of goods,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2.)

## VI. 보세제도

### 1 보세창고

---

- 보세창고는 세관 감독하에 반입된 물품과 반출될 물품이 보관되는 곳임<sup>117)</sup>
  - 보세창고 규정에 따라 특별히 설비된 건물 및 지역임
  - 일시적으로 창고에 물품 보관이 가능함<sup>118)</sup>
  - 보세창고 내에서는 관세·조세가 유예됨
  - 보세창고로 사용할 건물은 관계자 외의 출입이 제한됨
  - 세관이 감독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주요 도시 근처에 통관·창고·물류를 모두 담당하는 보세창고가 있음<sup>119)</sup>
  - 연간 100건 이상의 수출입이 개별 보세창고에서 발생할 경우 세관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 완제품 수입이 많아 모스크바 주변에 대형 보세창고업체가 다수 존재함

---

117)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23, <https://www.alt.ru/tamdoc/> (검색일자: 2017. 12. 18.)

118) PWC, Warehousing and storage, <https://www.investinregions.ru/en/investor/useful/import-i-eksport/customs-duties-incentives/> (검색일자: 2017. 10. 28.)

1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러시아』, 2013. 12.

- 보세창고 이외의 보세 관련 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편임<sup>120)</sup>
- 보세창고의 물품 보관기간은 최대 3년임<sup>121)</sup>
  - 유효기간이 있는 물품은 그 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에 보세창고에서 반출시켜야 함
  - 보관기간이 만료된 물품은 세관에 압류당함
  - 담당자는 물품에 특성에 따라 보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쉽게 부패하는 물품
  - 합당한 연장 사유가 있다면 물품 보관기간 연장이 가능함
- 세관의 특별허가를 받으면 보세창고 외에 물품의 장치가 가능함<sup>122)</sup>
  - 물품의 적하량이 많아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없는 경우
  - 특별허가 신청자는 담보를 세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기간 동안 타인에게 물품이용 및 처리권한을 양도할 수 없음
- 다른 물품에 해를 끼칠 수 있거나 특별 보관조건을 요하는 물품은 특별 설비가 갖추어진 보세창고에 장치가 가능함
- 보세창고 내에서는 보존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작업만 가능함
  - 물품 소유주와 권한을 가진 대리인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물품의 시험분석용품·견품의 채취, 단순조립작업, 물품의 분류·포장·재포장 작업이 가능함
  - 장치된 물품의 조사가 가능함
  - 보세창고의 범위 안에서 물품 이동이 가능함
  - 세관은 물품에 손상을 입히거나 물품의 기본 성질을 변화시키는 작업에 대해서는 허가서를 거부할 수 있음

120) 범한판토스, 『러시아 통관제도』, 2013

121)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23, <https://www.alt.ru/tamdoc/> (검색일자: 2017. 12. 18.)

122)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23, <https://www.alt.ru/tamdoc/> (검색일자: 2017. 12. 18.)

- 장치한 물품의 처분 및 물품의 소유권·이용권을 양도할 시 세관에 미리 고지해야 함<sup>123)</sup>
  - 물품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세관이 정한 요건과 조건을 준수한다는 서면 약정서를 제출해야 함
    - 서면 약정서를 세관이 수리한 다음날부터 의무와 권리를 이행해야 함
  
- 과세가격의 결정은 유통을 위한 물품 반출의 경우 반출 당일의 물품 가격을 적용함
  
- 러시아 법인만 보세창고 소유자 등록이 가능하며 다음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짐<sup>124)</sup>
  - 보세창고의 소유주는 세관의 감독하에 법이 정한 경우 및 조건에서 물품을 보관해야 함
  - 보세창고로써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 및 지역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6개월에 1회 이상 세관에 보세창고 목록 및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함
  - 보세창고와 관련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정보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에 통보해야 함
  - 물품에 손상을 입히거나 관세기관의 허가 없이 반출한 경우 보세창고 소유주가 물품에 대한 관세·조세 납부의 책임을 짐
  - 보세창고의 소유주는 사고·불가항력적 행위·자연적 재해로 인하여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관세·조세 납부의 책임을 지지 않음

## 2 보세운송

- 보세운송은 세관 감독하에 관세 납부 없이 출발지 세관에서 목적지 세관까지 물품을 이동하는 통관절차를 말함<sup>125)</sup>

---

123)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23, <https://www.alt.ru/tamdoc/> (검색일자: 2017. 12. 18.)

124)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23, <https://www.alt.ru/tamdoc/> (검색일자: 2017. 12. 18.)

125) CUSTOMS CODE OF THE CUSTOMS UNION Chapter 32

- 러시아 보세운송의 경우, 조직 범죄에 의한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별도의 경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임
- 보세운송 시 관세·조세 납부 담보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sup>126)</sup>
  - AEO 업체인 경우
  - 국제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 물품이 세관호송으로 이동하는 경우<sup>127)</sup>
- 출발지 세관에서 목적지 세관까지의 보세운송 기간은 일반적인 물품 운송 기간에 따라 출발지 세관이 정함<sup>128)</sup>
  - 보세운송 거리는 1개월에 최대 2000km임
  - 운송형태 및 운송수단의 능력, 정해진 경로, 기타 운송조건 및 국제협약에 따른 운전자의 근로 및 휴가 체계 요건을 고려해야 함
  - 보세운송 기간은 신고인 또는 운송업자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출발지 세관은 운송서류의 목적지를 기반으로 물품의 인도장소를 정함<sup>129)</sup>
  - 물품 인도장소는 목적지 세관의 감독 구역하에 지정된 구역에서 가능함
    - 달리 인도장소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도착지의 세관 구역으로 인도됨
  - 철도차량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목적지 기차역의 세관 감독 구역으로 인도됨
- 운송업자는 운송 중 목적지점이 변경되는 경우, 세관에 물품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운송업자는 운송 도중에 목적지점이 변경된 것을 인지한 후 근거리에서 위치한 세관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임의형식으로 작성한 목적지점 변경 신청서
    - 목적지점의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

126) CUSTOMS CODE OF THE CUSTOMS UNION Chapter 32

127) 세관호송이라 함은 보세운송 준수를 위하여 법에 따라 세관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이 보세운송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을 이동하는 운송수단을 호송하는 것임

128) CUSTOMS CODE OF THE CUSTOMS UNION Chapter 32

129) CUSTOMS CODE OF THE CUSTOMS UNION Chapter 32

- 경유 신고서
- 기타 서류
- 운송업자는 물품이 목적지 세관에 인도되지 않았을 경우 중간에 물품을 장치한 세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하역, 환적, 국제수송 운송수단의 교체는 출발지 세관 또는 해당 하역업무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sup>130)</sup>
- 물품 손상, 물품 성질 변경 및 금지 물품이 발견된 경우 세관은 허가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 보세운송 통관절차는 출발지 세관이 정한 인도장소에 물품을 인도한 후에 완료됨
- 보세운송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의 인도장소 물품은 세관 감독 구역에 배치됨
-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송한 물품은 임시보관 또는 세관신고와 관련한 통관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운송업자는 보세운송 중 사고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을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sup>131)</sup>
- 운송업자는 물품 및 운송수단의 보존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가까운 세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함
  - 연락을 받은 세관은 출발지 및 목적지 세관에 사고 발생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함
- 사고로 운송업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세관이 보상하지 않음

---

130) CUSTOMS CODE OF THE CUSTOMS UNION Chapter 32

131) CUSTOMS CODE OF THE CUSTOMS UNION Chapter 32

## VII. 수출입 규제

###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sup>132)</sup>

---

#### 가.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수출입 금지 물품<sup>133)</sup>

-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개인용으로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독극물, 향정신성물질, 마약, 신체 조직, 불법 프린트물, 오디오, 정보, 무기, 무기의 주요 부분, 해로운 폐기물, 잠복 감시물품, 정보 수집물품, 피, 폐기물품, 원자재, 귀금속 등임
  - 개인용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5리터를 초과하는 에탄올과 알콜 제품, 2백개를 초과하는 껌, 50개 초과하는 시가, 250g의 담배 잎, 250g의 관련 제품임
  - 개인용 우편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금지 물품이 해당됨

---

132)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86&Itemid=1908](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86&Itemid=1908)(검색일자: 2017. 7. 29.)

133)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86&Itemid=1908](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86&Itemid=1908)(검색일자: 2017. 7. 29.)

### 나.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수출입 제한 물품<sup>134)</sup>

-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광물수집품, 화석, 고생물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에 관련된 야생식물 및 동물, 기록문서, 암호화 도구, 항정신성 물질, 마약류, 오존 감소 물질, 무기류, 고주파 기계류, 수입이 제한된 물품제작에 사용되는 기계류 등은 수출입이 제한됨
  - 단, 위의 품목들은 필요 시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의 의료적 목적으로만 일정량을 반입할 수 있음

### 다. EAEU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

- EA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음
  - 오존파괴물질, 유해폐기물, 테러 및 사회, 정치적으로 금지된 정보가 담긴 인쇄물, 식물보호제품, 무기류, 목재 및 제지류, 바다물범 관련 가죽 등임

〈표 2-Ⅶ-1〉 EAEU 수출입 금지 물품

품목
오존파괴물질 및 제품의 수출입 금지
오존파괴물질 및 제품으로 수출입을 금지하나 전적으로 다른 화학 물질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및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수출입이 예외가 되는 물품
유해 폐기물 수입 금지 (비소, 비소 화합물, 수은(수은 램프 및 형광등 제외), 수은 화합물)
과격 테러 활동이나 테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및 시청각 자료, 판매의 목적으로 제작된 포르노 성격의 인쇄물 및 시청각 자료, 나치를 홍보하기 위한 인쇄물 및 시청각 자료, 나치와 비슷한 기호도 포함, 관세동맹의 회원국가 안보·공중 보건 및 도덕 등 국가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인쇄 및 시청각 자료의 수출입 및 환적 금지

134)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86&Itemid=1908](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86&Itemid=1908)(검색일자: 2017. 7. 29.)

〈표 2-VII-1〉의 계속

품목
식물 보호 제품의 수입 금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 A, B에 해당하는 물질 (올드린, 클로르 데인, 디엘 드린 엔드린, 헵타 클로르, 헥사 클로로 벤젠, 미렉스제, camphechlor(특사펜), 폴리 염화페닐, DDT)
목재, 장작, 판지, 폐종이, 톱밥, 목재폐기물, 지팡이나 우산 제작에 사용되었던 목재, 말뚝, 철도 또는 궤도 용 목재, 재활용종이, 수출 금지
민간 무기, 주요 부품 및 탄약, 곤봉, 쇧조각, 총포탄 총알 카트리지, 가스총, 전기 충격기는 수출입 및 환적 금지
해양생물자원을 수확하거나 잡기 위한 기구(예: 어망) 전류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기계, 신호발생기는 수입이 금지됨
바다물범의 가죽, 아기물범 등 수입 금지, 머리, 꼬리 혹은 다른 부분 또는 천연 모피, 물범으로 만든 의류 (단, 물범 새끼를 제외한 물범으로 만든 제품 중 권한 있는 기관의 인증서에 의해 입증 합의에 의해 수입된 제품,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이 수입한 제품의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가함)

자료: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rade/catr/nontariff/Pages/ediny\\_perechen.aspx](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rade/catr/nontariff/Pages/ediny_perechen.aspx)(검색일자: 2017. 7. 11.) 및 해당 결정문

## 라. EAEU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

### 1) EAEU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물품

- EAEU에서 규정한 수입 제한 품목은 오존파괴물질, 식물보호제품, 유해폐기물, 멸종위기생물, 보석, 마약물질, 향정신성물질 및 이 물질들의 전구체 등임
- 그 밖에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가 아닌 독성물질, 등록되지 않은 약물 및 약학적 제재, 고주파 기기 중 민간 목적으로 장치되는 것, 특별 기술 장치(도청, 비밀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장비)류, 민간무기류, 향료 또는 착색제 알콜 및 담배류 등이 있음

〈표 2-VII-2〉 EAEU 수입 제한 물품

품목 설명	결정문	허가기관
오존파괴물질	Decision No.134 Section2.1	환경감독부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이하 환경감독부),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이하 산업무역부)
식물보호제품	Decision No.30 Section2.2	산업무역부,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이하 농업부)
유해폐기물	Decision No.30 Section2.3	산업무역부, 환경감독부
멸종위기생물(CITES 협약)	Decision No.30 Section2.7	CITES 관련 행정기관, 환경감독부, 해양부 (Ministry of Fishery; 이하 해양부)
보석	Decision No.30 Section2.9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이하 재정부)
마약물질, 향정신성물질 및 이 물질들의 전구체	Decision No.30 Section2.12	산업무역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가 아닌 독성물질	Decision No.30 Section2.13	산업무역부, 환경감독부
등록되지 않은 약물 및 약학적 제재	Decision No.134 Section2.14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이하 보건부)
무선전자기 중 고주파 기기로 민간 목적으로 내부에 장치되는 것	Decision No.30 Section2.16	산업무역부

〈표 2-VII-2〉의 계속

품목 설명	결정문	허가기관
특별 기술 장치(도청, 비밀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장비)	Decision No.30 Section2,17	산업무역부, 연방보안서비스부 (Federal Security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암호기기	Decision No.30 Section2,19	산업무역부, 연방보안서비스부
장기, 기관, 혈액 등	Decision No.30 Section2,21	산업무역부, 보건부
민간무기류 및 주요 부품	Decision No.30 Section2,22	내무부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향료 또는 착색제 무첨가 원료 자당	Decision No.30 Section2,25	제3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것에 한함
알콜, 담배원료, 담배물품, 담배폐기물	Decision No.30 Section2,26	제3국에서 벨라루스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벨라루스의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p. 52~53

- 러시아는 EAEU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허가기관은 산업무역부, 농업부, 연방보안서비스부, 내무부, 보건부, 환경감독부 등이 있음

## 2) EAEU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물품

- EA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오존파괴물질, 유해폐기물, 고생물, 수집된 뼈, 야생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귀금속류, 마약물질, 항정신성물질, 특별 기술 장치(도청, 비밀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장비), 암호기기,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품, 국가 내부 공문서류, 자원 등

- 러시아는 EAEU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허가기관은 산업무역부, 환경감독부, 문화부, 재정부, 해양부, 연방보안서비스부, 문화부, 내무부, 에너지부 등이 있음

〈표 2-VII-3〉 EAEU 수출 제한 물품

품목 설명	결정문	허가기관
오존파괴물질	Decision No.134 Section2,1	산업무역부, 환경감독부
유해폐기물	Decision No.30 Section2,3	산업무역부, 환경감독부
고생물, 수집된 뼈 등	Decision No.30 Section2,4	산업무역부,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이하 문화부), 환경감독부
야생동물, 야생식물, 생약 등	Decision No.30 Section2,6	산업무역부, 환경감독부
멸종위기생물(CITES 협약)	Decision No.30 Section2,7	CITES 관련 행정기관, 환경감독부, 해양부
멸종위기동물, 식물, 그것들의 부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연방의 멸종위기 동물 보고서(red book)상에 해당되는 동식물)	Decision No.30 Section2,8	산업무역부, 환경감독부
보석(precious stone)	Decision No.30 Section2,9	재정부
귀금속(precious metal) 및 귀금속 제품	Decision No.30 Section2,10	산업무역부
미네랄	Decision No.30 Section2,11	산업무역부, 환경감독부

〈표 2-VII-3〉의 계속

품목 설명	결정문	허가기관
마약물질, 향정신성물질 및 이 물질들의 전구체	Decision No.30 Section2,12	산업무역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전구체가 아닌 독성물질	Decision No.30 Section2,13	산업무역부, 환경감독부
특별 기술 장치 (도청, 비밀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장비)	Decision No.30 Section2,17	산업무역부, 연방보안서비스부
암호기기	Decision No.30 Section2,19	산업무역부, 연방보안서비스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품, 국가 내부 공문서, 공문서 원본	Decision No.30 Section2,20	산업무역부, 문화부
장기, 기관, 혈액 등	Decision No.30 Section2,21	산업무역부, 보건부
민간무기류 및 주요 부품	Decision No.30 Section2,22	내무부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 연료 및 에너지 그 외 복합적인 광물에 대한 정보	Decision No.30 Section2,23	산업무역부
천연가스	Decision No.30 Section2,26	산업무역부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p. 68~69

### 마. 일부 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 금지

- 2014년 8월 11일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적인 대응으로 EU,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에서 수입되는 농산물과 영양제품들에 대해 금수 조치를 단행하였음
- 수입 금지 조치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으나 2015년에 1년 연장되었고 2016년 6월에 추가로 연장되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수입 금지 제품들은 해당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소고기, 돼지고기(냉동, 냉장 모두 포함), 모든 어류 및 해산물, 우유와 낙농품 채소와 뿌리야채, 과일, 견과류, 소시지와 모든 비슷한 종류 제품, 치즈 및 치즈제품, 영양제품임

〈표 2-Ⅶ-4〉 일부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 금지 식품

구분	품번
소고기와 돼지고기류(신선한 것, 얼린 것, 냉장된 것 모두 포함)	0201, 0202, 0203, 0207, 0210
생선, 해산물	0301, 0302, 030, 0304, 0305, 0306, 0307, 0308
우유와 낙농제품	0401, 0402, 0403, 0406
야채와 뿌리채소	0701, 0708,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과일, 견과류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3
소시지와 모든 유사한 제품	160100
치즈, 신선한 치즈, 식물성 지방을 함유한 치즈제품류	1901901100, 1901909100
영양제품(식물성 지방 및 우유를 함유한 제품)	2106909200, 2106909804, 2106909805, 2106909809

자료: Russia - Ban of Agricultural and Alimentary Products - From EU, USA, Australia, Canada & Norway, [https://www.hapag-lloyd.com/ar/news-insights/news/2014/08/russia-ban-of-agricultural-and-alimentary-products-from-eu\\_35825.html](https://www.hapag-lloyd.com/ar/news-insights/news/2014/08/russia-ban-of-agricultural-and-alimentary-products-from-eu_35825.html)(검색일자: 2017. 8. 20.)

- 이 밖에도 러시아 정부는 2015년 11월 30일 Decision No. 1296에 따라 터키로 수입되는 식료품과 농산품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수입을 금지하였음
  -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중지 기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sup>135)</sup>
  - 해당 제품은 오렌지, 토마토, 포도, 귤류, 사과, 살구, 복숭아, 딸기, 양파, 쪽파, 오이, 카네이션, 칠면조, 브로콜리, 배, 닭 등임
  - 이 조치는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따른 보복조치로 간주되고 있음
  
- 2016년 10월 9일부로 터키 수입 금지 품목 중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 금지 리스트에서 제외됨
  - 신선하거나 말린 오렌지, 만다린, 시트러스 혼합물, 살구, 복숭아, 자두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게 됨

**〈표 2-Ⅶ-5〉 러시아의 대 터키 수입 금지 물품**

설명	TN VED
닭의 설육, 냉동	020714
칠면조 부산물, 냉동	020727
카네이션	060312
토마토(냉장, 냉동)	070200
양파와 쪽파(냉장, 냉동)	070310
브로콜리(냉장, 냉동)	070410
오이(냉장, 냉동)	070700
오렌지(냉장, 건조)	080510 (2016년 10월9일부터 제외)
귤류(냉장, 건조)	080520 (2016년 10월9일부터 제외)
포도	080610
사과	080810
배	080830

135)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s://rg.ru/2015/12/01/spisok-dok.html>(검색일자: 2017. 8. 27.)

〈표 2-VII-5〉의 계속

설명	TN VED
살구	080910(2016년 10월 9일부터 제외)
복숭아(천도복숭아 포함)	080930(2016년 10월 9일부터 제외)
자두	080940(2016년 10월 9일부터 제외)
딸기	081010
곶	170410
순수한 염화나트륨으로써 소금과 용해되거나 물에 용해되거나 되지 않거나 첨가제를 함유하거나 하지 않은 것 등	250100

자료: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s://rg.ru/2015/12/01/spisok-dok.html>(검색일자: 2017. 8. 27.)

## 바. 관세할당<sup>136)</sup>

- 관세할당에 대한 적용 조건 및 메커니즘에 관한 협의(Agreement on the Conditions and Mechanism for the Application of Tariff Quotas from 12. 2008)<sup>137)</sup>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는 매년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할당을 고지하고 있음
- 관세할당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농산품에 적용되며, 독립 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생산, 반입되는 상품은 일부 제외됨
  - 관세할당에 대한 결정은 공보게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됨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 관세할당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결정문과 내용은 유라시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sup>138)</sup>

136)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Pages/quotas.aspx>(검색일자: 2017. 11. 20.)

137)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S%20quota.pdf>(검색일자: 2017. 11. 20.)

138)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S%20quota.pdf>(검색일자 2017. 11. 20.)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Decision 97<sup>139)</sup>에 따라 2018년에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부터 수입되는 일부 농산품에 관세할당이 적용됨
  - 유라시아 회원국에 할당이 적용되는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 칠면조, 유청, 조제유 등이며 농산품의 품번 및 할당량은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sup>140)</sup>
  - 본 결정 또한 공보게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됨
  - 러시아로 수입되는 농산품 중 할당이 적용되는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 유청, 조제유 등임

〈표 2-Ⅶ-6〉 2018년 유라시아연합 할당 적용 대상 물품

(단위: 천톤)

관세할당 대상 품목		국가 및 할당량				
품명	품번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신선한 냉장 소의 고기	0201100001, 0201202001, 0201203001, 0201205001, 0201209001, 0201300004	0	0	21.0	3.5	40.0
소의 냉동 고기	0202100001, 0202201001, 0202203001, 0202205001, 0202209001, 0202301004, 0202305004, 0202309004	0	0	21.0	3.5	530.0

139) Decision of the Board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of August 18, 2017 No. 97

140)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quota%202018.pdf>(검색일자: 2017. 11. 20.)

〈표 2-Ⅶ-6〉의 계속

(단위: 천톤)

관세할당 대상 품목		국가 및 할당량					
품명	품번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신선한 냉장 또는 냉동 돼지고기	0203111001, 0203119001, 0203121101, 0203121901, 0203129001, 0203191101, 0203191301, 0203191501, 0203195501, 0203195901, 0203199001, 0203211001, 0203219001, 0203221101, 0203221901, 0203229001, 0203291101, 0203291301, 0203291501, 0203295501, 0203295901, 0203299001	0	20.0	0	3.5	400.0	
	돼지 고기 (잡육)	0203295502, 0203299002	0	20.0	0	3.5	30.0
	냉동한 닭의 절반 또는 4등분한 것 과 냉동한 닭다리 및 절단한 것으로 모두 뼈가 있는 것	0207142001, 0207146001	0	0	128.0	58.0	250.0

〈표 2-VII-6〉의 계속

(단위: 천톤)

관세할당 대상 품목		국가 및 할당량				
품명	품번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뼈없는 닭고기 신선 또는 냉장	0207131001	0	10.0	12.0	58.0	0.0
뼈없는 닭고기 냉동	0207141001	0	0.9	12.0	58.0	100.0
뼈없는 칠면조 신선 또는 냉장	0207261001	0	0.9	12.0	58.0	0.0
뼈없는 칠면조 냉동	0207271001	0	0.9	12.0	58.0	14.0
칠면조 절단한 것으로 뼈있는 것 (냉동)	0207273001, 0207274001, 0207276001, 0207277001	0	0	12.0	58.0	14.0
가금류 및 식용 설육 제0105호의 가금류로서 냉장 또는 냉동	0207111001, 0207113001, 0207119001, 0207121001, 0207129001, 0207132001, 0207133001, 0207134001, 0207135001, 0207136001, 0207137001, 0207139101, 0207139901, 0207143001, 0207144001, 0207145001, 0207147001, 0207149101,	0	0	12.0	58.0	0

〈표 2-Ⅶ-6〉의 계속

(단위: 천톤)

관세할당 대상 품목		국가 및 할당량					
품명	품번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가금류 및 식용 설육 제0105호의 가금류로서 냉장 또는 냉동	0207149901,						
	0207241001,						
	0207249001,						
	0207251001,						
	0207259001,						
	0207262001,						
	0207263001,						
	0207264001,						
	0207265001,						
	0207266001,						
	0207267001,						
	0207268001,						
	0207269101,						
	0207269901,						
	0207272001,						
	0207275001,						
	0207278001,						
	0207279101,						
	0207279901,		0	0	12.0	58.0	0
	0207412001,						
	0207413001,						
	0207418001,						
	0207423001,						
	0207428001,						
	0207430001,						
	0207441001,						
	0207442101,						
	0207443101,						
	0207444101,						
	0207445101,						
	0207446101,						
	0207447101,						
0207448101,							
0207449101,							
0207449901,							
0207451001,							
0207452101,							

〈표 2-VII-6〉의 계속

(단위: 천톤)

관세할당 대상 품목		국가 및 할당량				
품명	품번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가금류 및 식용 설육 제0105호의 가금류로서 냉장 또는 냉동	0207453101,					
	0207454101,					
	0207455101,					
	0207456101,					
	0207457101,					
	0207458101,					
	0207459301,					
	0207459501,					
	0207459901,					
	0207511001,					
	0207519001,					
	0207521001,					
	0207529001,					
	0207530001,					
	0207541001,					
	0207542101,					
	0207543101,					
	0207544101,					
	0207545101,	0	0	12.0	58.0	0
	0207546101,					
	0207547101,					
	0207548101,					
	0207549101,					
	0207549901,					
	0207551001,					
	0207552101,					
	0207553101,					
	0207554101,					
	0207555101,					
	0207556101,					
	0207557101,					
	0207558101,					
0207559301,						
0207559501,						
0207559901,						
0207600501,						
0207601001,						

〈표 2-VII-6〉의 계속

(단위: 천톤)

관세할당 대상 품목		국가 및 할당량				
품명	품번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가금류 및 식용 설육 제0105호의 가금류로서 냉장 또는 냉동	0207602101, 0207603101, 0207604101, 0207605101, 0207606101, 0207608101, 0207609101, 0207609901	0	0	12.0	58.0	0
유청 및 조제 유청의 종류 (분말, 과립 또는 기타 고체 상태)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넣지 않은것)	0404101201, 0404101601	0	0	0	0	15.0

자료: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quota%202018.pdf>(검색일자: 2017. 11. 20.)

- 또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Decision 96<sup>141)</sup>에 따라 베트남 쌀에 대한 관세할당량을 고지함
- 2017년 8월 18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베트남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2015.5.29.)에 따라 벨라루스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장폭비 3이상의 장립종 정미쌀<sup>142)</sup>에 각 961톤, 9,039톤의 할당을 적용하기로 결정함<sup>143)</sup>

141) Decision of the Board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No. 96 of August 18, 2016

142) (Полностью обрубленный пропаренный длиннозерный рис с соотношением длины к ширине, равным 3 или более)

143)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quota%20rice%202018.pdf>(검색일자: 2017. 11. 20.)

## 사. 무역구제<sup>144)</sup>

- 2012년부터 유라시아 내부 시장 방어국(Department for Internal market defence; 이하 DIMD)에서 무역구제조치 실행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실행을 담당하고 있음
  - 러시아에서는 산업무역부의 대외무역 국가조정실(Department for State Regulation of External Trade)에서 덤핑존재와 피해존재 여부를 모두 조사했었음
  - 조사는 DIMD의 직권 또는 회원국의 생산자, 제조업체 등의 서면 신청으로 시작됨<sup>145)</sup>
  - 세이프가드의 경우 9개월에서 12개월의 조사기간을,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12개월에서 18개월의 조사기간을 가짐
  - 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는 최대 200일까지 적용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최대 9개월간 부과 가능함
  - 세이프가드의 결정조치는 최대 4년까지 적용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최대 5년간 부과 가능함
- 현재 러시아가 한국에 적용하는 무역구제조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7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25일까지 한국의 Nickle-containing flat rolled products of corrosion-resistant steel에 반덤핑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음<sup>146)</sup>
- 러시아는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기로 된 식기, 주방용품을 비롯하여 콤팩트인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각각 2016년 9월 9일, 2016년 8월 21일에 본 조치 적용이 종료되어 2017년 11월 현재 적용되는 세이프가드는 없음
- 2016년 기준으로 중국에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많았음
  - 그 밖에 독일, 이탈리아, 터키의 일반 경상용차 및 인도의 흑연화된 전극에 반덤핑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음

144) Department of Internal Market Protection,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podm/investigations/Measures/Inactive.aspx>(검색일자: 2017. 11. 17.)

145) 유라시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podm/recomendacii/Pages/default.aspx>(검색일자: 2017. 11. 20.)

146) Department of Internal Market Protection,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podm/investigations/Measures/Inactive.aspx>(검색일자: 2017. 11. 17.)

〈표 2-Ⅶ-7〉 2017년 반덤핑 적용 현황

제품명	품번	적용국
롤링 베어링(바늘 제외)	8482	중국
강관(some types of steel pipes)	7304, 7305, 7306	우크라이나
롤상의 철강(중합체 도금한 것) (rolled metal with polymer coating)	7210, 7212, 7225	중국
흑연화된 전극 (graphitized electrodes)	8545	인도
냉간 압연 이음매 없는 철강 파이프 (cold-formed seamless stainless steel pipes)	7304	중국
에나멜 씌운 선철 욕용제 (baths of pig-iron enamelled)	7324	중국
일반 경상용차 (light commercial vehicles)	8704	독일, 이탈리아, 터키
압연롤(rolling rolls)	8455	우크라이나
레몬산(lemon acid)	2918	중국
부식방지철 주방 날붙이 (kitchen and cutlery made of corrosion-resistant steel)	8211, 8215	중국
기름 및 가스관 (oil and gas field pipes)	7304	중국
크롤러 불도저(crawler bulldozer)	8429	중국
트럭 타이어(truck tire)	4011	중국
철 차륜(steel all-rolled wheels)	8607	우크라이나
스테인리스강 튜브 (stainless steel tubes)	7304	우크라이나
막대기(bars)	7213, 7214, 7227, 7228	우크라이나
페로실리코망간 (ferrosilicomanganese)	7202	우크라이나
철제 모서리(steel corners)	7216, 7228	우크라이나

자료: Department of Internal Market Protection,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podm/investigations/Measures.aspx>(검색일자: 2017. 11. 17.)

## 2 인증제도

- 러시아의 인증제도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율인증과 강제인증으로 구분됨
  - 자율인증은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 주로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수행됨
  -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해당 인증서가 없을 시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sup>147)</sup>
    -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이 강제인증 대상일 경우 미인증 상태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며 미인증 상태로 설사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됨
  - 강제인증은 러시아 내에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기 위해 필수인 인증으로 소비자의 생활 및 건강 안전과 관련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활 소비재 및 사전제품, 화학물질 설비 등에 적용됨
  - 자율인증은 2002년 7월 30일 채택된 러시아 연방표준위원회 결의안 No.64에 따라 자율인증서를 발급받는 제도로 통관 시 필수 제출은 아님
  - 단, 세관에서의 불필요한 논쟁, 계약서상 운송기간 충족,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서 자율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함
  
- 강제인증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사용이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제품,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사용제품, 미리 러시아 국내로 반입되어있는 설비 수리 및 대체 부품,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기술 지원을 위해 반입되는 물품, 중고 물품의 경우 강제인증에서 제외됨
  - 그 밖에도 폭발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게 제조된 장치, 의료용 전기기기, 전기 리프트 및 하역장비, 국방용 전기장치, 작업환경 장애물 제어장치,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전기장치, 원자력 발전소 안전 시스템을 위한 전기 장치 등은 강제인증의 대상이 아님
  
- 면제 확인서(exemption letter)는 시험기관의 직인과 함께 발급되며 인증품목의 강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급을 필요로 함
  - 러시아 세관 또는 러시아 수입자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발급받음

147) 심층분석, 러시아의 인증제도, KOTRA, <http://eiec.kdi.re.kr/policy/domestic/view.jsp?ac=96954>  
(검색일자: 2017. 8. 17.)

- 약 50만개의 현행 국가규격(GOST-R)이 천여개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으로 대체되어 기술 규정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가. CU 인증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2012년 1월 관세 연합 증명서로 각국의 인증으로 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2013년 2월부터 CU 인증을 통해 EAC 단일 마크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 러시아는 GOST-R, 카자흐스탄은 GOST-K, 벨라루스는 STB라는 명칭으로 국가별로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 관세연합(Customs Union) 기술요구 사항인 TRCU(Technic Regulation of Customs Union)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CU 시스템 또는 CU 인증(certification)이라 부르며 EAC 마크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sup>148)</sup>
  - 따라서 EAC 마크 인증을 받은 물품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모두에 통용될 수 있게 됨
  - 2015년 1월 1일,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여 EAEU가 출범하면서 두 나라 또한 CU 인증체제를 도입하였음

〈표 2-VII-8〉 GOST-R 및 CU 인증 비교

인증 내용	GOST-R	CU
신청자	제조사 또는 수출자, 수입자	수입자, 제조자, 현지법인(지사)
준비서류	영어 문서 가능	러시아어 문서
소요기간	약 1~2주	약 1~2개월
공장심사(1년 이상 인증)	제품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체	필수(샘플테스트 추가)
인증서 기간	단일선적(1년) 시리얼(3년)	단일선적(1년), 시리얼(3,5년)

자료: CIS 지역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0/usrReportsView.do?reportsIdx=6497>(검색일자: 2017. 8. 16.)

148)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http://www.gost.ru/wps/portal/en/activity?WCM\\_GLOBAL\\_CONTEXT=/gost/gost/activity/technicalregulating](http://www.gost.ru/wps/portal/en/activity?WCM_GLOBAL_CONTEXT=/gost/gost/activity/technicalregulating)(검색일자: 2017. 8. 23.)

- CU 인증은 유럽의 CE 인증과 유사한 제도로써 제품에 따라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이하 CoC) 또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이하 DoC) 인증을 받아야 함
  - 적합성선언서(DoC)는 제품의 생산 전 물품에 대해 인증을 받는 것으로써 등록된 DoC(Declaration of Conformity)에 의해 제조일로부터 GOST-R 마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음
  - CU 인증상 CoC 대상품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아야 하며 CoC 대상품목은 아니나 AC50-1000V, DC75-1500V의 전자제품은 DoC를 강제적으로 획득해야 함
    - 2017년 6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Resolution No. 717<sup>149)</sup>에 따라 난방기기 및 난방용 열교환기에 대한 CoC와 단열재, 모르타르 및 혼합물에 대한 DoC를 의무화하였음
    -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제품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외국 제품의 러시아산 제품과의 불공평한 경쟁우위 선점, 제품의 유통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본안을 제정하였다고 함<sup>150)</sup>
  - CoC는 엘리베이터, 압력용기, 크레인 등 기계류 및 시험 장비, 전기 제품 등이 속해 있으며 샘플 테스트뿐 아니라 공장의 방문 심사도 인증 취득 시 실시할 수 있게 됨
  - DoC는 CoC에 비해 보다 위험성이 적은 일반 제품들이 대상이며 서류심사로만 인증 취득이 가능함
- 인증은 유효기간에 따라 단일선적 인증(one-shipment), 연속적 인증(serial)인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단일선적 인증의 경우 인증 시 수입자 및 수출자 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계약기간까지만 유효한 인증임
  - 연속적 인증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량제한 없이 아이템을 인증받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QMS(예: ISO) 및 사후 공장 심사가 요구되며 공장 심사 중 결함이 발견될 시 인증이 취소됨
- 기존의 GOST-R의 인증서를 받은 물품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CU 인증을 취득해야 함

149) Resolution No. 717 of June 17, 2017; On Amendments to Decree No. 982 December 1, 2009

150) 필수 적합성 평가 히터, 열 절연 재료, 박격포 혼합물 및 안전 요구 사항, 러시아 정부 사이트, <http://government.ru/docs/28218>(검색일자: 2017. 8. 29.)

- 단, 제품이 CU 인증에 부합되지 않을 시에는 GOST-R에 따라 인증하고 있음
-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국가표준 위원회(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기타 위임한 기관에서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 러시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면제서한(certification exception letter)을 받게 되면 인증이 면제되며, CE 등 다른 인증을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 인증을 면제해줌
- 2017년 현재 34개의 품목군이 GOST-R 인증이 만료되어 CU 인증을 취득해야 함<sup>151)</sup>

〈표 2-Ⅶ-9〉 CU 인증 취득 품목

GOST-R 만료일	품목
2013.8.15.	폭죽 안전
2014.2.15.	포장재 안전
	유아 및 어린이 용품 안전
	장난감 안전(적용 제품목록 개정, 세관신고서에 평가 인증서 첨부)
2014.6.30.	개인 호신용품
	제트엔진 및 연료
2014.7.1.	향수 및 화장품(적용 제품목록 개정, 세관신고서에 평가 인증서 첨부)
	경공업제품
2015.2.15.	곡물
	식품
	야채 및 과일음료
	유제품
	건강기능성 식품
	식품첨가물

151) 주한러시아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_read.jsp?typeID=15&boardid=13087&seqno=1101756&tableName=TYPE\\_LEGATION](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_read.jsp?typeID=15&boardid=13087&seqno=1101756&tableName=TYPE_LEGATION)(검색일자: 2017. 8. 28.)

〈표 2-VII-9〉의 계속

GOST-R 만료일	품목
2015.3.15.	저전압 장비
	차량 및 차량장비
	승강기
	폭발물
	가스연료
	하드웨어 전자기기 호환성
2015.7.31.	소형선박
2015.8.1.	고압장비
2015.9.1.	윤활유
2015.12.31.	우유 및 유제품
2016.2.15.	폭발성 물질 및 제품
2016.3.1.	가구
2016.7.1.	바퀴차량
2016.8.1.	철도차량
	고속열차
	철도교통인프라
2016.9.1.	자동차도로
2016.11.15.	담배제품
2017.3.15.	농업 및 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자료: EAC certification: new TR CU 035/2014 on the safety of tobacco products, <http://www.gostrussia.com/en/2016/05/20/eac-certification-new-tr-cu-0352014-safety-tobacco-products/>; 주한 러시아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087&seqno=1101756&tableName=TYPE\\_LEGATION](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087&seqno=1101756&tableName=TYPE_LEGATION), 세린스코리아, <http://www.cerins.net/trcu-ru/>(검색일자: 2017. 8. 22.) 참조하여 저자재 작성

- 관세동맹 내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EAEU 국가 내 인증기관에서 EAC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하지만 EAEU 국가에서 받은 EAC 승인이 실제 러시아 통관에서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함<sup>152)</sup>
  - EAEU 지역에서 발행되는 승인의 경우 현지 시험이 없이 발행되고 제품의 기술적 측면을 증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 이러한 문제는 EAEU 간 기술적 규제 통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될 경우 국가별 개별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의 세관에서는 EAEU 승인서에 표시되어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실제 제품을 EAEU 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수입자가 아닌 경우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EAEU 국가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제품의 품질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므로 EAEU 국가 내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따라서 러시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러시아 대리인 또는 제조자를 대신할 수 있는 제조자 현지 법인이 있어야 함
  
- 우리나라의 시험원 등에서는 인증을 위해 EAEU 국가의 시험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현지로 시료를 보내지 않고 우리나라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받아 현지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sup>153)</sup>
  
-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인증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문서, 검사 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송부함
  
- 검사기관이 샘플 확인 및 테스트를 시행한 후 제품이 인증규격에 적합할 시 검사 결과와 관련한 문서를 인증기관 및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인증기관에서 이후 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 인증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물품은 인증취득 제품 목록에 등재되며 인증서가 송부됨

---

152) 관세청 내부자료

153) KTL,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수출 신속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http://www.ktl.re.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2&pagesize=10&searchselect=boarddesc&searchword=%EC%9D%98%EB%A3%8C&boardtypeid=44&boardid=6591>(검색일자: 2017. 8. 30.)

- 단일선적 인 증은 서류 제출 후 1주일 후에 인 증서가 발급되며 연속적 인 증은 서류 제출 후 10일에서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나. 의료기기 인 증

- 2016년 말부터 EAEU 내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공동원칙과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
  - 본 규정 시행에 관련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보기간을 가지도록 함
  - 러시아의 의료기기와 관련된 규정은 연방법 N323-FZ<sup>154)</sup>임
  - 새 규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GOST-R에 대한 위생증명서의 사용은 폐지됨
    - 기존 GOST-R의 위생증명서는 의료기기의 특성이 국가 위생 및 역학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등록절차 완료 이후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 의료기기는 CE와 같은 국제규격을 인 증받았다 할지라도 러시아 정부가 공인한 현지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기기의 효율성, 안전성,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해야 함
- 테스트를 위한 샘플이 러시아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방보건감독청 (Roszdravnadzor)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러시아 내에서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는 러시아 보건감독청에 등록되어야 함
- 샘플 결과가 발표되면 신청자는 러시아 보건감독청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진행해야 함
  -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등록신청서, 의료기기표준문서에 대한 정보, 기술 문서, 사용설명서, 사진(필수부품 포함), 시험성적서, 전체 제출문서 목록 및 제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등록신청은 러시아 현지 업체만 가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154) N323-FZ 'On the basis of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및 Decree N. 1416 Rules of state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

- 신청서류 접수 후 보건감독청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능성 평가를 의뢰하고 임상시험이 가능할 시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 신청자는 그 결과를 보건감독청에 다시 제출해야 함
  - 전문기관의 서류 검토 후 임상시험 진행이 불가하면 의료기기 등록 진행이 불가능함
  
- 최종서류검토 후 결과가 적합할 시 보건감독청은 의료기기 등록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등록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국가 등록부에 저장함
  - 등록증명서에는 의료기기명, 등록일 및 번호, 신청자 정보, 제조사 정보, 생산장소, 서류번호, 러시아 연방보건부의 의료기기 분류코드에 따른 의료기기, 형태, 잠재적 위험등급, 러시아 생산분류코드 등이 포함됨
  -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군(Class 1), 중간 위험군(Class 2), 상당 위험군(Class 2b), 고위험군(Class 3)의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신청 비용은 의료기기 형태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대략 1만 5천달러에서 5만달러의 비용이 들고, 등록 유효기간은 의료기기는 10년, 소모품은 5년임
  
- 인증이 필요함 의료기기와 관련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의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복합적, 개별적 모든 기기, 장비, 용구, 도구, 재료 또는 인간 유기체에 약학적, 면역학적, 전학적, 대사적 작용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예방, 진단, 치료 및 질병의 의학적 재활, 인간 유기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의학적 연구의 시행, 해부구조의 복원, 교체, 변경 또는 유기체의 생리학적 기능, 임신 예방 및 중절, 생리적 기능을 위해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 소프트웨어 포함 관련 모든 기기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기타 부속물 등임
  - 의료업계 종사자의 특수한 요구 사항이 반영된 환자의 개인적인 주문에 따라 제조되거나 예외적으로 환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회수가 불가능함
  - 등록신청서
  - 위임장 사본
  - 의료기기의 표준문서에 대한 정보
  - 기술문서

- 사용설명서
  - 전체형태 사진
  - 기술테스트 결과서
  - 의료기기 사용 시 인간 유기체와 접촉이 추정되는 독성 테스트에 대한 결과서
  - 측정 수단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테스트 결과서
  - 제출 문서 목록
- 연방보건감독청에 등록 후 허가 인증, CU 인증을 모두 받은 후 물품 수입이 가능하고, 의료기기 인증서를 소유한 업체를 통해서 인증절차를 통과한 제품에 한정하여 러시아로 수출이 가능함

#### 다. 화장품 인증

- 관세동맹국 내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sup>155)</sup>의 부속서 12번에 해당되는 13가지 해당 화장품의 경우 제품등록 인증서가 필요하며 13가지 제외 나머지 화장품의 경우 적합성 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함<sup>156)</sup>
- 태닝용 화장품
  - 피부미백용 화장품
  - 타투용 화장품
  - 여성 청결제 관련 화장품
  - 피부보호용 화장품
  - 염색, 표백, 모발 강조용 화장품
  - 파마, 헤어스트레이트를 위한 화장품
  - 나노물질을 이용한 화장품
  - 제모용 화장품
  - 필링제

155) Technical Regulations Customs Union 009/2011

156) 러시아 화장품 규정,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4lzGrJrwBBMJ:www.mfds.go.kr/jsp/common/download.jsp%3Ffileinfo%3DS\\*1\\*8\\_Regulation\\_Russia.pdf\\*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pdf\\*/files/upload/1/TB\\_F\\_INFODATA/22549/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265510\\*2016:03:22%252012:31:36+&cd=1&hl=ko&ct=clnk&gl=kr&safe=vss\(검색일자: 2017. 12. 14.\)](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4lzGrJrwBBMJ:www.mfds.go.kr/jsp/common/download.jsp%3Ffileinfo%3DS*1*8_Regulation_Russia.pdf*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pdf*/files/upload/1/TB_F_INFODATA/22549/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265510*2016:03:22%252012:31:36+&cd=1&hl=ko&ct=clnk&gl=kr&safe=vss(검색일자: 2017. 12. 14.))

- 불소 함유량 15% 이상 구강위생제품(액상의 경우 0.05% 이상)
- 산화수소가 함유된 치아미백 제품 또는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물품
- 위의 내용은 관세동맹국 내에서는 통용되나 일부 내용의 경우 회원국에 따라 규정이 수시로 바뀌게 되므로 확인이 필요함
- 제품등록인증서의 경우에는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이 신청해야 하고 제품등록인증 신청을 한 회사만 수입이 가능함
- 제품등록인증서 취득의 경우 제품 1개당 약 3주에서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적합성 신고서의 경우 약 3주의 기간이 소요됨
  - 제품등록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영구적이며 러시아에 신청 시 3만 2백루블~7만 6천 7백루블이 요구됨
  - 필요서류의 경우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인증허가를 받은 대행 회사에 제출해야 함<sup>157)</sup>
    - 신청서, 수출입계약서, 인증서 발급 위임장, 제조사 시험성적서(COA), 나노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원료, 제조인증(Manufacturing Certificate), 사용설명서, ISO 또는 CGMP, 효과에 대한 확인서류(기능성 화장품 임상결과), 제조공정표(manufacturing process), 단상자 디자인(라벨, 제품사진), 제조사 시험항목(technical certificate), EU 규정 N1223/2009 준수확인서, 신청사 정보, 시험용 샘플 2개 등을 제출해야 함
- 적합성 신고서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신고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유효기간 5년 이하는 1만 천루블~2만 천오백루블이 필요함
  - 유효기간 7년 이하의 경우 1만 4천루블~2만 5천루블이 필요함
  - 적합성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2017년 1월부터 최대 7년으로 낮추어짐

---

157) 러시아 화장품 규정,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4lzGrJrwBBMJ:www.mfds.go.kr/jsp/common/download.jsp%3Ffileinfo%3DS\\*1\\*8\\_Regulation\\_Russia.pdf\\*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pdf\\*/files/upload/1/TB\\_F\\_INFODATA/22549/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265510\\*2016:03:22%252012:31:36+&cd=1&hl=ko&ct=clnk&gl=kr&safe=vss](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4lzGrJrwBBMJ:www.mfds.go.kr/jsp/common/download.jsp%3Ffileinfo%3DS*1*8_Regulation_Russia.pdf*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pdf*/files/upload/1/TB_F_INFODATA/22549/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265510*2016:03:22%252012:31:36+&cd=1&hl=ko&ct=clnk&gl=kr&safe=vss)(검색일자: 2017. 12. 14.)

### 3 기타 러시아 정부기관의 인증<sup>158)</sup>

- 러시아는 정부기관마다 각기 다른 권한을 갖고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증 승인은 강제인증보다 선행되어야 함
- 건설인증(gostroy certificate)은 건축자재가 인체 및 환경과 관련하여 GOST-R 규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한 안전성 규범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서임
  - 대상제품은 창문 구조물(PVC, 목재, 알루미늄), 발코니 도어, 시멘트, 건축 구조물 등임
- 러시아 연방 기술 조정 및 도량 기관(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에서 건설인증을 담당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인증은 의료기기 및 의료용 목적으로 러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의약품, 의료용 장비 및 보호 장비, 의료용 원료 등)에 대한 인증 허가서이며 보건복지부인증을 받은 후에 위생인증 및 강제인증의 발급이 가능함
  - 보건복지부인증은 러시아 연방 보건 및 사회발전 감시청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음
- 국가위생 안전 등록(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받아야 하는 제품 중 다음의 경우 주 등록허가(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를 추가로 받아야 함
  - 식용, 화장품 등의 가정용 제품(chemical products: 페인트, 시너, 잉크) 등 종전의 위생인증 품목 등은 주 등록허가를 제출해야 함
- 자동차 및 운송기기(40km/h 이상)는 교통부를 통해 운송기기 허가(approval of vehicle)를 받아야 하며 운송기기 허가서는 「러시아 연방 도로교통법」 및 「운송차량허가 관련법」에 의거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운송기기 허가서는 러시아 연방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 환경보호 및 안전 규정과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데 목적이 있음

158) 한국기계시험연구소, <http://www.iso-ce.co.kr/global/index4.html>(검색일자: 2017. 8. 28.)

- 운송기기 타입과 유해물질 배출환경의 등급 및 기준이 인증서에 명시되며 바퀴가 장착된 차량과 해당 차량에 장착되는 장비나 물품에도 적용이 됨
- 위험물 사용허가(Ros TechNadzor Permit to Use; 이하 위험물 사용허가)는 유해 산업시설의 안전에 관한 연방법 No.116-FZ에 의거,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거나 폭발위험 등을 내재한 물품 및 장비들에 대한 허가서임<sup>159)</sup>
- 위험물 사용허가서의 성격상 중요성과 특수성으로 다른 일반 인증서에 비해 많은 시간과 서류가 요구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sup>160)</sup>
  - 시험 운전(commissioning test): 2008년 9월부터 장비 또는 설비가 러시아 연방 도착 후 해당 지역 RTN 지정검사관(Federal Services for Ecological, Technological and Nuclear Supervision)의 입회하에 시운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기술 통과증(technical passport): 품목별, 장비별로 특정한 양식과 내용이 필요하며 시험기관의 전문 결과서(expert conclusion)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측정기구 계측 인증서(pattern approval(metrology certificate for measuring equipment)): 장비나 설비 등에 계측 인증서가 요구되는 품목이 설치되는 경우 별도로 계량 확인(metrology certificate)을 진행하여야 함
    - 측정기구 계측 인증서는 러시아의 표준과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기기임을 증명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인증서임
    - 제품의 수량 등을 계량·측정하는 기기·설비, 산업현장 측정기기, 기구 및 장비류, 육상과 해양에 관련된 조사·측량과 관계되는 기기류, 생태학과 관련된 조사·측량과 관계되는 기기류, 각종 노동현장에서 작업과 관련된 안전을 위한 기기류, 러시아 연방 정부와 자국의 자위·방어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기기류, 스포츠용품 및 공식적인 스포츠 등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각종 계량·측정 기기류 등에 요구됨
  - 인증이 요구되는 계측장비의 모델이나 사용이 결정되면 관련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자를 선택하여 제공받는 것이 유리함
  - Ex-Proof GOST-R 인증서: 해당 제품, 장비 또는 설비의 위치나 구역이 설계상 위험지역(hazardous area) 또는 폭발위험지역(explosive atmosphere/area)에 결정되어 설치되는 경우는 방폭 인증서(anti-explosive GOST-R certificate)를 추가로 받아야 함

159) GOST-R: Certificazione in Russia, <http://www.gost-r.info/gosgortekhnadzor.php>(검색일자: 2017. 11. 27.)

160) 세르콘스, [http://www.sercons.co.kr/ser/sub3\\_6.php](http://www.sercons.co.kr/ser/sub3_6.php)(검색일자: 2017. 11. 27.)

- 통신 기기류에 대한 승인(telecom type approval)은 2004년 12월 31일 공포된 러시아 연방 법령 No.89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통신기기류 중 강제인증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에 대해 Communication Facility Conformance 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시 제출해야 함<sup>161)</sup>
  - 2007년 5월 7일부로 무선장비(wireless equipment)의 GOST-R 인증과 러시아 연방 Radio Frequency Center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함
  - 강제인증 대상인 통신시설 리스트(2004년 12월 31일 NO.896, 러시아 연방 결의안 승인), 통신 시스템 기능을 가진 통신시설, 가입자 액세스 기기, 제어와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을 가진 통신기기, 무선 전기 통신시설 등이 해당됨
  - 제품의 종류에 따라, GOST-R, 위생증명서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
  
- 오존층 보호 냉매 증명서(ozone non-destruction certificate)는 러시아 환경부에서 시험 승인하며 냉장고, 에어컨, 쇼케이스, 화학 발포 제품류를 러시아 내로 수입할 시 필요함<sup>162)</sup>
  
- 관련 품목이 기타 다른 인증과 관련되는 경우(화재, 위생 인증대상이면 GOST-R 인증 전에 해당 인증이 이루어져야 함) GOST-R 인증서에 관련 인증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sup>163)</sup>
  - 즉, GOST-R 인증품목이면서 기타 인증이 요구되는 물품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4 라벨링<sup>164)</sup>

- 러시아에서는 수출 표준화 위원회(GOSSTANDART of Russia)의 상품표기법(GOST R 51074-97, 1997.8.15)에 따라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러시아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161) 한국기계시험연구소, <http://www.iso-ce.co.kr/global/index4.html>(검색일자: 2017. 8. 28.)

162) 한국기계시험연구소, <http://www.iso-ce.co.kr/global/index4.html>(검색일자: 2017. 8. 28.)

163) 한국기계시험연구소, <http://www.iso-ce.co.kr/global/index4.html>(검색일자: 2017. 8. 28.)

164) 미국국제무역청, <https://www.export.gov/article?id=Russia-Labeling-Mark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17. 8. 21.)

- 2013년 7월부터 식품류 라벨링에 대한 규제가 시행 중이며 제품이름, 원산지,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 사용설명서를 러시아어로 첨부해야 함
  - 위의 내용은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표기하거나 혹은 제품에 동봉해야 함
  - 또한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 관련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주소 등도 표기되어야 함
  
- 라벨링의 요구 조건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제품에 맞는 특정한 라벨의 필요성 유무(예: 식품 첨가물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조제약품 등), 추가적인 문서의 필요 여부 및 문서 구성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러시아는 마드리드시스템<sup>165)</sup>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에 국제 출원한 경우 러시아에서도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sup>166)</sup>
  - 현지 변리사를 통해 러시아 연방 특허청(Rospatent)에 직접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방법도 사용 가능함
  
- 음식물의 경우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품명
  - 제조업체
  -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 등록 주소
  - 제품무게와 양
  - 제품의 영양
  - 첨가물
  - 유효기간
  - 포장 및 보관방법
  - 인증마크

---

165) 마드리드시스템: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초하여 한 번의 국제상표 출원으로 복수국가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166) 무역협회,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Classification=11&sNo=1517](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Classification=11&sNo=1517)(검색일자: 2017. 8. 21.)

- 진공 포장 또는 가스 충전 포장일 경우 포장방식을 라벨로 부착해야 하고, 완제품 통조림은 최종 조리법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함<sup>167)</sup>
  - 캔 제품의 경우 고기, 지방, 부산물, 식물성 원료 성분 함량에 대해 표기해야 함
- 냉동 가금류 고기, 그의 부산물, 소비자 편의제품, 소시지와 같은 모든 육류의 경우 냉동 또는 냉장 마크를 부착해야 함
- 진공 팩이나 MGM 가스 팩으로 포장된 경우 가금류 고기, 소비자 편의제품, 요리 재료, 소시지, 고기 제품 등으로 표시해야 함
- 국가 표준 GOST-P 51074-2003 및 GOST-P 52194-2003에 따라 보드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류에 라벨을 부착해야 함<sup>168)</sup>
  - 모든 주류제품은 식품첨가물, 향미 증진제,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첨가물, 비 전통적인 재료, 생명공학기술에서 파생된 제품의 모든 구성요소,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 등을 표기해야 하며 과도한 음주의 위험에 대해 라벨에 표기해야 함
- 화장품의 경우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품명
  - 수입업체, 제조업체 명
  -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 주소
  - 원산지
  - 색조화장품의 경우 색상 및 톤 표시
  - 구강 제품의 경우 불소 함유량
  - 제품무게 혹은 용량
  - 유효기간
  - 사용 유의사항

167) 트레이드네비, 수입요건,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sInfmId=TB4RU00000000627&ftaNatnCd=99>(검색일자: 2017. 8. 20.)

168) 트레이드네비, 수입요건,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sInfmId=TB4RU00000000627&ftaNatnCd=99>(검색일자: 2017. 8. 20.)

132 제2편 통관제도

- 제조번호 및 화장품 식별코드
- 전성분표
- 인증마크

## VIII. AEO 제도

### 1 개요

---

-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는 기업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제도임<sup>169)</sup>
  - AEO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위험도가 낮은 기업으로 분류가 됨<sup>170)</sup>
  
- 러시아는 2011년 9월 14일부터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86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음<sup>171)</sup>
  
- 2010년 한-러 통관정보교환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상호 통관자료 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려 하였으나 러시아가 자료 공개 및 제공을 하지 않음
    - 러시아는 AEO 업체로 지정되더라도 잦은 검사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음

---

169) 최보영 외,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2014, 8

170)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61

171) IFCG, <https://www.ifcg.ru/en/information/authorized-economic-operator-in-russia.html>  
(검색일자: 2017. 11. 10.)

- 2014년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러시아가 AEO 규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AEO 국가로 분류하지 않았음
  - 관세심사중심 프로그램(Customs Compliance Programmes)으로 분류함<sup>172)</sup>
  
- AEO 관련 내용은 「EAEU 신관세법」<sup>173)</sup>에 규정되어 있음
  - AEO 대상에 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추가되었음
  - 1, 2,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3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1, 2등급의 혜택적용이 가능함<sup>174)</sup>
  - 러시아는 AEO 상호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EAEU 신관세법」에 따라 회원국 상호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 2 AEO 신청 조건 및 절차

---

- AEO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sup>175)</sup>
  -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20일 이내에 신청이 완료됨
  - 세관은 신청서에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함
  - 서류가 불충분 시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함
  - 신청자는 세관의 서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보충 서류를 제출해야 함
  
- AEO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 <sup>176)</sup>
  - 행정상의 위법 행위가 없어야 함
  -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들의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함
  - 세관에 통관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관세 및 조세의 미납이 없어야 하며 벌금 또한 없어야 함

---

172) 최보영 외,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2014, 8

173)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61

174)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61

175) TRADING TODAY IN RUSSIA, "ITCF's International Symposium Amsterdam," 16 April 2013

176)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61

- 1등급 기업일 경우 100만유로의 예치금이 필요함
    - 기업이 AEO 관련 규정을 어기지 않고 운영 시 예치금이 낮아지며 등급이 높아짐
    - 3년차가 되었을 때 70만유로
    - 5년차일 때 50만유로
    - 6년차일 때 30만유로
    - 7년차일 때 15만유로
  - 저장창고 소유자가 신청을 하려면 최소 3년의 기업 운영 기간이 필요함
  - 물류, 세관 호송 기업은 최소 1년에 250개 이상의 사업을 했던 신고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함
-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sup>177)</sup>
- AEO 인증 기업은 관련 사실이 변경된 경우, 세관에게 정보의 변경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세관에 통보해야 함
  - 모든 세금의 의무를 지켜야 함
  - 관련 「관세법」과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함

### 3 AEO 혜택

- AEO 혜택은 다음과 같음<sup>178)</sup>
- 단순화된 통관심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즉시 반출이 가능함
  - 주기적인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세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AEO 자격을 획득한 기업은 신용평가점수가 높아짐<sup>179)</sup>
  - AEO 관련 기업은 세관에 사전정보를 전자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177)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61

178)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61

179) TRADING TODAY IN RUSSIA, "Alexey Aronov ITCF's International Symposium," 2013, 4

- 옥외지역 및 기타 영역에서 물품 반출과 관련된 통관업무 수행 및 물품 임시 보관이 가능함
- 세관의 결정에 따라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음

〈표 2-Ⅷ-1〉 러시아 AEO 특징

구분	러시아 AEO
프로그램명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시행시기	2011. 9. 14.
대상기업	제조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관세사, 중개업체, 유통업체 운송인, 포워드, 창고업체
평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만유로의 예치금</li> <li>- 수출입 업무 실적</li> <li>- 관세체납 및 관련 범죄행위 등 부재요건</li> <li>- 재고관리시스템 보유</li> </ul>
공인등급	1, 2, 3등급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신고 전 사전반출 가능</li> <li>- 공인업체의 창고 등에서 세관 업무 처리 가능</li> <li>- 상품 예비 세관신고 가능</li> </ul>
공인 업체 수	186개 업체
상호인정 체결국가	EAEU 가입 회원국 상호인정 해줄 예정

자료: 최보영 외,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2014. 8;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61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IX. 행정구제제도<sup>180)</sup>

### 1 개요

---

- 이의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EAEU 신관세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 신관세법」(Federal Law NO. 311-FZ Of November 27, 2010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sup>181)</sup>
- 관세 관련 판정에 대한 구제 절차는 「러시아 신관세법」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 제3절(Chapter 3) 관세청 및 직원의 행위 및 결정에 대한 불복(Appealing Against Decisions or Actions(Omissions) of Customs Bodies and of the Officials Thereof)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3절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관세불복 절차 및 대상, 내용,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180) 「러시아 신관세법」(2010) 제3절을 번역 및 요약한 내용이며 2018년 「EAEU 신관세법」의 발효에 따라 「러시아 신관세법」 또한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181) 「러시아 신관세법」 영문,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78en.pdf>(검색일자: 2017. 11. 12.)

- 일반적인 러시아의 이의제기 절차는 ①하위 부서에 이의제기를 한 후 상위 부서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②하위 부서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③이의제기 없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가지로 나누어짐<sup>182)</sup>
- 러시아의 경우 불복 시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심판의 전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선 세관에서는 구두로 간소화된 이의제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단, 「러시아 연방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을 먼저 받아야 함
- 이의신청에 대해 관세청에서 검토한 사례<sup>183)</sup>, 결정사례<sup>184)</sup>, 사전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례<sup>185)</sup> 등은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러시아 관세청에서는 매년 이의제기 종류와 내용, 이의가 제기된 담당 부서 등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sup>186)</sup>

## 2 이의신청

### 가. 이의신청 및 신청조건<sup>187)</sup>

- 이의신청은 그 결정을 내린 부서를 통해 상위 부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직접 상위부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182) 재심 신청에 대해 같은 용어(appeal)를 사용하여 용어상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음

183)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관세청에서 검토한 불복사례),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newsfts&view=category&id=353&Itemid=229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newsfts&view=category&id=353&Itemid=2292)(검색일자: 2017. 11. 22.)

184)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관세청의 불복 관련 결정사례),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69&Itemid=256](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69&Itemid=256)(검색일자: 2017. 11. 12.)

185)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사전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례),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69&Itemid=256](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69&Itemid=256)(검색일자: 2017. 11. 12.)

186) Surveys of citizen's appeals, [http://reception.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section&id=6&Itemid=57](http://reception.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section&id=6&Itemid=57)(검색일자: 2017. 11. 17.)

187) Departmental procedure for appealing decisions, actions (inaction) of customs authorities in the field of customs,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901&Itemid=2103](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901&Itemid=2103)(검색일자: 2017. 11. 17.)

- 이의신청의 처리는 관세청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린 자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부서의 상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함
  - 관세 관련 문제 중 연방행정부가 결정을 내린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일 경우 연방행정부 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함
- 결정을 내린 하위 부서에 불복신청을 할 경우 해당 하위 부서는 불복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위 부서에 불복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 및 불복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함.
- 이의신청은 「러시아 신관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위반되었거나, 자유 또는 법적 이익 침해 또는 의무의 불법적 이행 등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관세협정 및 동맹 등에 따른 관세 「관련법」, 관세영역과 관련 있는 기타 법규에 따라 관세청 부서 또는 직원이 결정을 내렸거나, 법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
  - 같은 사건에 대한 반복되는 이의제기는 위에서 명시한 기간(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됨
- 이의제기는 「러시아 연방 민사법」에 따라 기관(업체)이 기관의 하위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때 이의 제기자는 기관이 됨
  - 기관의 대표자는 기관을 대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자격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문서로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권리 보호 및 법적 이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리인(예를 들어, 부모, 양부모, 가정교사, 후견인, 그 밖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당사자들이 지정한)의 이의신청을 허가함
- 변호사 및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자는 시민을 대리할 수 있음
  - 기관을 대표하는 변호사의 경우 기관의 장이 서명하였거나 다른 자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공식 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변호사는 공증인 또는 「연방법」에 따른 기타의 절차를 공증받았음이 증명되어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시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필서명이 필요함
  - 대리인이 신청할 시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홀로그램 서명 및 전자서명은 금지하고 있음
  
- 이의제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관세청 부서, 또는 직위, 이름(성, 이름, 부칭 모두 포함) 및 신청자의 이름(성, 이름, 부칭), 거주지와 불복하는 결정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이의제기가 접수되기 전 어떤 때라도 이의제기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함
  - 관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행정부에서 지정하는 형식에는 결정 참조번호, 결정 날짜, 장소, 결정 부서명, 결정자의 지위, 이름, 결정자의 지위 증명문서, 이의 제기 내용 요약, 쟁점 요약, 결정 사유 및 논쟁 내용,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 결정자의 서명 등이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함

## 나. 이의제기 절차<sup>188)</sup>

- 이의제기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관세청 및 해당 관리자의 행위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아님
  - 단, 관세청 또는 해당 관리자의 행위가 「러시아 연방법」 또는 관세 관련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행위의 지속이 관세청 조직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할 때에는 부분적 또는 전체의 행위를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야 함
  
- 다음의 경우 공과<sup>189)</sup>를 따져 이의신청이 거부(refusal)됨<sup>190)</sup>
  - 이의제기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 제42조의 제1항 및 제42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시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

188)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901&Itemid=2103](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901&Itemid=2103)(검색일자: 2017. 11. 20.)

189) 공로와 과실을 아우르는 법적 용어

190) 이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

- 이의제기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법원 또는 중재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 이의제기한 내용이 관세청 부서 및 관세청 직원과 관련되지 않았거나 관세 관련 내용이 아닌 경우
  - 제39조에 따른 권한 위임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관세청 부서 및 직원의 경정으로 인해 권리, 자유, 법적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제48조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내용을 또 이의제기한 경우
  - 이의제기한 행위를 찾지 못한 경우
- 이의신청의 거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함
- 이의제기자는 관세청이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결정, 부작위 또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에 대해 관세청의 결정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세관은 이에 대해 답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정보요청 질의는 결정한 다음날 또는 행위나 행위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날 또는 신청자가 결정이나 행위가 결정되었음을 알게 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필요한 정보에 대한 질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함
  - 질의가 구두로 이루어질 시 구두로 질의한 날로부터 질의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 질의에 대한 답은 질의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질의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3 항소절차(Appellate Procedure)

- 「러시아 신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관세청이나 직원의 행위에 대한 불복을 진행하기 위한 기타의 절차가 필요할 시 제37조에 따라 항소를 할 수 있음
-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관세청과 법원 혹은 법원 또는 중재법원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세청 및 직원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의신청은 동시에 또는 후에 법원 또는 중재법원에 대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이의절차 없이 법원에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러시아에서는 행정 전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
  - 관세청 상위 부서에 이의를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함
- 법원 또는 중재법원으로 항소된 불복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의 「민사법」 절차(civil judicial proceedings)에 따르거나 중재법원의 사법 절차에(judicial proceedings in arbitration courts) 따르도록 함
- 관세청의 정상적인 법적 행위가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법적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예: 관세청의 소극적 행위)에는 행정심판절차법(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of Russian Federation Chapter 21)에 따라 불복을 진행할 수 있음
  - 관세청의 결정과 행위 또는 비행위로 인하여 권리, 자유 및 법적 이익 등이 침해 받았을 때에는 행정심판절차법(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of Russian Federation Chapter 22)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
- 관세청의 비정상적인 법적 행위, 불법적 결론 및 행위가 시민, 기관 혹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침해할 시 중재법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sup>191)</sup>
  - 신청은 의심되는 결정, 법적 행위를 한 관세청의 기관 또는 담당자 성명
  - 비정상적인 행위, 결정이 받아들여진 날짜나 그러한 행동을 수행한 날짜
  - 비정상적인 행위, 결정 등으로 침해되는 권리, 법적 이익 등에 대한 신청자의 의견
  - 적용되었어야 할 정상적인 법, 다른 정상적 법적 행위
- 중재법원에 항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관세청의 결정, 의심되는 법적 행위 등은 그 집행이 유예됨

---

191)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576:2012-02-03-09-09-24&catid=188:2011-05-15-16-21-05&Itemid=1830&Itemid=210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576:2012-02-03-09-09-24&catid=188:2011-05-15-16-21-05&Itemid=1830&Itemid=2102)(검색일자: 2017. 11. 20.)

#### 4 간소화된 이의제기 절차

- 간소화 절차는 세관 또는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러시아 세관 검문소에서 150만루블 이하의 가치를 지닌 물품 또는 하나의 차량(열차는 한 차량)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이의제기 절차임
-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는 세관 또는 세관 검문소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세관 또는 세관 검문소의 장(chief)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간소화된 절차로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응답은 접수된 후 3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결정되어야 함
  -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을 내린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 보고서에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린 자, 간략한 이의제기 내용, 논점, 결정의 근거 등을 작성해야 함
    - 이의제기가 거부(refusal)되었을 경우 거부의 사유를 작성해야 함
    - 보고서에는 이의제기자 및 결정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 보고서는 이의제기자에게 송부되어야 함
- 간소화된 절차로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위 부서 또는 법원 또는 중재법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X. 벌칙<sup>192)</sup>

### 1 개요

---

- 러시아의 관세 관련 형벌은 「러시아 연방형법」(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에서 다루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별도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음<sup>193)</sup>
  - 가벼운 위반에 부과되는 벌금 등에 대한 내용은 「러시아 연방행정위반법」(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에서 다루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형법」상에서 규정하는 관세 관련 벌칙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함
  - 「EAEU 신관세법」에서는 관세 형벌의 성격을 가진 벌칙이나 행정벌의 성격을 가진 벌금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EAEU 신관세법」 제133조 세관신고 시 물품 및 서류 압류에서는 세관신고 시 일부 문서와 물품의 압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192)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80en.pdf>(검색일자: 2017. 8. 28.)

193) 2018년 「EAEU 신관세법」의 발효에 따라 「러시아 신관세법」 또한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관세와 관련된 러시아 연방형법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관세 관련 형벌은 제8절 경제영역의 범죄(Section VIII Crimes in the Sphere of Economics) 중 제22장 경제활동 영역의 범죄(Chapter 22 Crimes in the Sphere of Economic Activity)에서 다루고 있음
  - 관세 관련 형벌은 상표의 불법적 사용, 관세납부 회피, 원료·물질·시설·기술·과학 기술정보·설비의 불법적 수출·양도 및 대량살상무기·병기·군사용품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작업 등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
  - 단,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수출 및 밀수의 경우 제25장 사람의 건강과 공공도덕에 대한 죄(Chapter 25 Crimes Against Human Health and Public Morality)에서 다루고 있음
  
- 러시아 연방형법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있음
  
- 예비범의 경우 중범죄 및 특별 중범죄의 경우 형사책임을 묻고 있으며 범죄의 예비 및 실행의 착수는 미수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음
  -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본 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 범죄의 공범은 2인 이상의 자가 고의적으로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로 조직범, 교사범 및 방조범을 모두 포함하며 각 본 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됨
  - 특히 본법의 조항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주체자가 아닐지라도 그 범죄의 실행에 관여하였을 시 조직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간주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됨
  
- 관세 관련 위반에 적용되는 형벌의 형태에는 벌금, 일정한 공직 또는 일정한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 의무노동, 교화노동, 일정기간의 자유박탈 등이 있음
  - 의무노동, 교화노동, 일정기간의 자유박탈 등은 기본형으로만 적용하며 벌금, 일정한 공직 또는 일정한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은 기본형 및 부가형으로 적용함
  - 일정한 공직 또는 일정한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은 국가적 직무, 지방자치기관 내에서 공무원로 일하는 것 또는 일정한 직업 기타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 의무노동은 수형인이 기본적인 노동 또는 학업 이외의 여가시간에 지방자치기관이 정하는 종류의 무상의 사회유용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교화노동은 자신의 거주 지역 내에 직장이 없고 지방자치기관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교화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 자유박탈은 이주수용소 송치, 교정수용소 정주, 의료교정시설 및 엄격한 규제하에 운용되는 특수 교정수용소 또는 교도소 수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의미함

## 2 「러시아 연방형법」상 관세 관련 형벌<sup>194)</sup>

### 가. 제22장 경제활동 영역의 범죄(Crimes in the Sphere of Economic Activity)<sup>195)</sup>

#### 1) 제180조 상표의 불법사용

- 타인의 상표, 서비스마크, 상품의 원산지명, 동종 상품에 있어서 유사상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의 손해를 일으킨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함
  - 20만루블 이하 또는 18월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480 시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2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함
- 러시아 연방에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품의 원산지 마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함
  - 12만루블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360 시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함

194) 「러시아 연방형법」, [https://www.kic.re.kr/upload/savedata/research\\_report//html/16-06%EB%9F%AC%EC%8B%9C%EC%95%84%EC%97%B0%EB%B0%A9%ED%98%95%EB%B2%95\\_%EA%B9%80%EC%A0%95%ED%9B%88.htm](https://www.kic.re.kr/upload/savedata/research_report//html/16-06%EB%9F%AC%EC%8B%9C%EC%95%84%EC%97%B0%EB%B0%A9%ED%98%95%EB%B2%95_%EA%B9%80%EC%A0%95%ED%9B%88.htm) 및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80en.pdf> 비교하여 작성(검색일자: 2017. 8. 28.)

195) 「러시아 연방형법」, [https://www.kic.re.kr/upload/savedata/research\\_report//html/16-06%EB%9F%AC%EC%8B%9C%EC%95%84%EC%97%B0%EB%B0%A9%ED%98%95%EB%B2%95\\_%EA%B9%80%EC%A0%95%ED%9B%88.htm](https://www.kic.re.kr/upload/savedata/research_report//html/16-06%EB%9F%AC%EC%8B%9C%EC%95%84%EC%97%B0%EB%B0%A9%ED%98%95%EB%B2%95_%EA%B9%80%EC%A0%95%ED%9B%88.htm) 및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80en.pdf> 비교하여 작성(검색일자: 2017. 8. 28.)

-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사전공모에 따라 집단적으로 범하거나, 조직집단에 의하여 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함
  - 6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하되 50만루블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또한 50만루블 이상 100만루블 이하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360시간 이하의 의무노동에 처함
  
- 2) 제189조 원료·물질·시설·기술·과학기술정보·설비의 불법적 수출·양도 및 대량살상무기·병기·군사용품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작업
  - 대외경제활동 수행권한을 부여받은 자<sup>196)</sup>가 외국 단체나 그 대표자에게 원료·물질·시설·기술·과학기술정보 및 설비를 불법적으로 수출 또는 양도하거나, 수출 통제 물품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불법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함
    - 10만루블 이상 50만루블 이하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공직 또는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 또는 3년 이하의 의무노동에 처함
  
  - 위의 죄를 집단적으로 범했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함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하되 100만루블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함
    - 사전공모에(previous concert) 따라 위의 죄를 집단적으로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하되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공직 또는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을 병과함

---

196) '법률상 대외경제활동 수행권한을 부여받은 자'라 함은 러시아 연방법령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로서 러시아 연방 영역 내에 지속적인 거주지를 가진 자 및 개인 기업가 자격으로 러시아 연방 영역 내에 지속적인 거주지를 가진 자를 의미함

3) 제194조 단체나 개인(Natural person)의 관세납부 회피(Evasion of customs payments)

- 단체나 개인에게 부과된 관세를 대규모(large scale)로 회피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함
  - 10만루블 이상 30만루블 이하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180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2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함
  
- 사전공모에 따라 집단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 및 특히 대규모로 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함
  - 30만루블 이상 50만루블 이하 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5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5년의 자유박탈 및 3년 이하의 일정한 공직 또는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을 병과할 수 있음
  - 관세의 대규모(large scale)라 함은 개인의 경우 미납관세액이 100만루블을 상회하거나 기관의 경우 미납관세액이 200만루블을 상회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대규모(especially large scale)의 관세라 함은 개인의 경우 미납관세액이 300만루블을 상회하는 것을, 기관의 경우 미납관세액이 1,000만루블을 상회하는 것을 의미함
  
-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관세를 회피했거나 세관 또는 국경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관세를 회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함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박탈 및 100만루블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및 1년 미만 또는 6개월의 구류를 병과할 수 있음
  -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한 조직집단에 의해 위의 범죄가 발생했을 시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자유박탈 및 100만루블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구류를 병과할 수 있음

## 4) 제226.1조 밀수

- 본 규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밀수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음
  - 초 효력(superpotent), 유독성, 독, 폭발, 방사성 물질, 방사선원, 핵물질, 화기 또는 화기의 기본 부품, 폭발장치, 탄약, 대량살상무기 및 이의 수송차량, 기타 무기류, 군사장비 및 대량살상무기의 재료 및 수송차량, 전략물자,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품
  
- 러시아 연방과 유라시아경제연합 사이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 밀수 금지 물품을 다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함
  - 3년에서 7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하되 100만루블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구류를 병과 할 수 있음
  - 전략물자는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등의 이유로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물품을 말함
  - 다량의 전략물자, 자원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물품 가치가 100만루블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함
  
-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세관 또는 국경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밀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함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박탈 및 100만루블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및 1년 미만 또는 6개월의 구류를 병과할 수 있음
  - 조직집단이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세관 또는 국경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의 물품을 밀수한 경우 7년 이하의 자유박탈 및 100만루블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구류를 병과할 수 있음
  - 조직집단이 위의 물품을 밀수한 경우 7년 이하의 자유박탈 및 100만루블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구류를 병과할 수 있음

## 나. 제25장 사람의 건강과 공공도덕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 Health and Public Morality)<sup>197)</sup>

### 1) 제 229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 함유 식물 및 부분적 함유물질,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영득 또는 수출

-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이 함유된 식물 또는 부분적으로 함유된 물질 포함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을 불법 영득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함
- 사전공모에 따라 집단적으로 위의 죄를 범했거나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또는 폭력을 사용하였으나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을 시 다음과 같이 처벌함
  -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하되 50만루블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유제한을 병과할 수 있음
- 조직적으로, 다량의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영득 또는 수출했거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입히는 폭력을 가하여 위의 죄를 범했을 시 다음과 같이 처벌함
  - 8년 이상 15년 이하의 자유박탈 및 50만루블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3년 이하의 구류를 병과할 수 있음

### 2) 제229.1조 마약, 향정신성 물질, 부분적 함유물질 및 특별 통제물질 제작 기구, 장비의 밀수

- 제229.1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밀수했을 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하되 100만루블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구류를 병과할 수 있음

---

197) 러시아 연방형법, [https://www.kic.re.kr/upload/savedata/research\\_report//html/16-06%EB%9F%AC%EC%8B%9C%EC%95%84%EC%97%B0%EB%B0%A9%ED%98%95%EB%B2%95\\_%EA%B9%80%EC%A0%95%ED%9B%88.htm](https://www.kic.re.kr/upload/savedata/research_report//html/16-06%EB%9F%AC%EC%8B%9C%EC%95%84%EC%97%B0%EB%B0%A9%ED%98%95%EB%B2%95_%EA%B9%80%EC%A0%95%ED%9B%88.htm) 및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80en.pdf> 비교하여 작성(검색일자: 2017. 8. 28.)

- 사전공모에 따라 집단적으로 위외 죄를 범했거나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또는 다량으로 위외 물질을 밀수했을 시 다음과 같이 처벌함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하되 100만루블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구류를 병과할 수 있음
  -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본 조에 해당하는 물질을 밀수했을 시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하되 100만루블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2년 이하의 구류를 병과할 수 있음
  
- 관세청이나 세관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조직적으로 본 조에 해당하는 물질을 밀수했을 시 다음과 같이 처벌함
  -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하되 100만루블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2년 이하의 구류를 병과 할 수 있으며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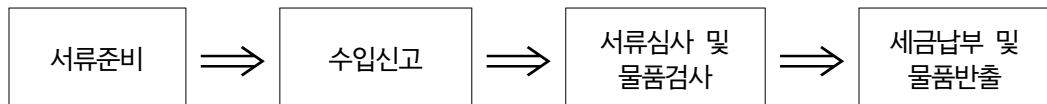
##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I. 수입통관절차

#### 1 수입통관절차

- 러시아의 수입통관은 ①서류준비 ②수입신고 ③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④세금납부 및 물품반출의 절차를 거침

[그림 3-1-1] 수입통관절차



#### 가. 서류준비

- 수입신고는 수입자와 관세사가 할 수 있음<sup>198)</sup>
  - 러시아 연방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만이 관세사 자격의 대상이 됨
    - 관세사는 업무이행을 위한 등록 신청을 관세청에 해야 함
    - 기존 통관부처 퇴직 공무원들이 통관 관련 주요 업체를 구성하고 있음

198) 트레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39&natnCd=RU>(검색일자: 2017. 10. 28.)

□ 수입자 등록을 위한 법인 설립 서류는 다음과 같음<sup>199)</sup>

- 수입신고지 세관에 수입업체로 등록을 해야 함
  - 정관, 변경·개정본 포함(공증)
  - 사업자등록증명서(세무서 발행 납세자등록증, 공증)
  - 국가통계위원회 증명서
  - 지불계좌 개설한 은행서류
  - 외환계좌를 개설한 은행서류
  - 세무국 등록증명서
  - 러시아 연방 법인등기부 등재증명서(공증)
  - 법인 대차대조표
  - 최고경영자 임명에 관한 이행 결의문
  - 회계담당자 임명에 관한 이행 결의문
  - 최고경영자 여권 사본(공증)
  - 회계담당자 여권 사본(공증)
  - 법인 등록 주소에 대한 차용계약서
  - 관세사 위임장
  - 법인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노동허가증

□ 수입허가를 받을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야 함

- 기술, 의약, 위생, 식물검역, 환경 등의 분야에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수입자와 현지 전문가가 미리 수입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시간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
- 국가 표준위원회는 러시아 인증서를 발급하고 법규 정보 제공을 담당하고 있음
  - 표준화, 규격, 기타 인증서 업무를 담당함
  - 국가위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규격 인증서(safety certification), 원산지증명서(C/O)등에 관련한 법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99) 트레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39&natnCd=RU>(검색일자: 2017. 11. 28.)

## 나. 수입신고

- 2007년 1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전국의 세관에 공유되지 않고 일부 세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음
  - 2011년부터 2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정보가 세관 간 공유 가능해 짐<sup>200)</sup>
  
- 2011년 11월부터 세관은 전자통관신고를 권장하고 있음<sup>201)</sup>
  - 전자통관신고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입신고서를 접수함
    - 수입신고서류를 전자형태로 전환하거나 스캔파일의 형태로 첨부하는 방식임
  - 수입신고서를 온라인에서 제출한 이후에도 세관은 수입물품 신고가격 입증을 위해 추가 서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전자신고를 통해 수입허가를 발급하는 제도를 추진 중임
  - 러시아 정부는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전자통관신고 시 통관 수수료를 최대 25%까지 할인해주고 있음
  - 세관에 따라 일반 통관 시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음<sup>202)</sup>

〈표 3-1-1〉 전자제출이 가능한 서류

구분	전자 세관 신고	수출입 면허의 전자신청과 발급	해상적하 화물목록의 전자제출	항공적하 화물목록의 전자제출	원산지 증명서 전자식 신청과 발급	관세와 수수료의 전자납부	관세 환급의 전자신청
러시아	△	△	△	△	△	△	△

주: △는 부분적인 이행  
 자료: 최보영 외,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2014. 8

200) 최보영 외,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8  
 201) 최보영 외,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8  
 202) 최보영 외,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8

- 「EAEU 신관세법」에 따라 서류 및 증명서의 간소화가 이루어질 예정임<sup>203)</sup>
  -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세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짐
  - 경유물품의 경우 자동으로 전자등록이 가능해짐
  - 도입 초기에는 혼란이 예상되니 과거 필요서류를 참고하여 미리 담당자와 확인이 요망됨
  
- 전자신고 시 세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서명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Bill of Lading/Airway Bill, Master B/L)
  - 운송보험서류(Certificate of Insurance)
  -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수출입계약서
  - 제품 품질 증명서(GOST: 수입자가 발급받은 제품 품질 증명서)
  - 제품 설명서의 경우 각 제품 설명서는 설비에 대한 자세한 기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품목분류 및 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함
  - 외환거래확인서
    - 20,000달러 이상 송금 시에 필요함
  - 관세, 부가세, 수입인지세 예치금 송금장 은행 확인서
  - 기타 세관이 필요 시 요구하는 서류
  
- 밀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품목은 수입 시 세관신고서에 별도로 내용을 기재해야 함<sup>204)</sup>
  - 지정품목으로는 육류, 포도주, 알범, 직물, 컴프레서, 냉장고, 모니터, 컴퓨터, 자판기, 손목시계, 약기 등 125개가 있음
  - 전자제품(컴퓨터, 핸드폰, 녹음기)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 안에 암호 정보를 제출해야 함
    - 담당 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를 세관에 통보해야 함

203) 관세청 내부자료

204) 트레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39&natnCd=RU>(검색일자: 2017. 11. 28.)

## 다.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 통관 시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많음<sup>205)</sup>
  - 통관검사 시 준비서류와 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담당자의 통관신고의 지연으로 인해 뇌물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음
  
- 통관물품 검사 시 무작위 선정 검사를 하고 있으나 검사 비율이 약 44%로서 미국·독일 3%, 영국 2%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sup>206)</sup>
  
- 제품 테스트, 전시회용품, 실험분석을 위한 샘플은 「EAEU 신관세법」 규정상 관세가 면제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관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sup>207)</sup>
  - 출장 시 샘플 또는 전시회용품을 러시아로 반입 후 자국 반입을 위한 재수출이 쉽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 UPS, DHL을 이용하여 샘플을 러시아에 보내지만, 세관의 까다로운 검사로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3,000루블 초과하는 물품은 기부금지라는 이유로 뇌물을 요구하니 주의해야 함
  - 통관절차상 지역 세관장과 담당자의 영향력이 상당함으로 수입업자에게 적합한 세관을 선정하여 통관하는 게 유리함<sup>208)</sup>
    - 지역마다 세관 집행 방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관은 수출입 통관절차 시 필요서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통관절차 시 필요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5년 6개, 2018년 4개로 줄이고자 함
  - 수출 시에는 2012년 8개에서 2015년 4개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움<sup>209)</sup>

20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2012.12, <https://kati.net/mag/selectMagBookView.do>(검색일자: 2017. 11. 23.)

206)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6, <http://www.motie.go.kr/motie/py/td/tdtotal/bbs/bbsList.do>(검색일자: 2017. 11. 4.)

207) 코트라 기사, 러시아 통관제도특성,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94346>, (검색일자: 2017. 11. 23.)

208)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6, <http://www.motie.go.kr/motie/py/td/tdtotal/bbs/bbsList.do>(검색일자: 2017. 11. 4.)

209)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 수입 통관 소요는 시간을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단축시키려 함
- 러시아는 통관 개선을 위해 2012년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sup>210)</sup>을 제정함<sup>211)</sup>
  - 세관은 2018년까지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통관절차 단순화하기 위해 액션 플랜을 만들었음
    - 수입과 수출에 있어 효율성 측정 노력을 통해 기업의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함
  - 통관 간소화 기업을 확대
  - 모든 통관의 전산화
  - 비용 단축
  -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관세 납부를 가능하게 함

## 라. 세금납부 및 반출

- 세금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음<sup>212)</sup>
  - 개인보증, 보증증서(surety bond), 은행의 보증, 물품이나 다른 자산의 모기지 (mortgage)를 이용하여 납부<sup>213)</sup>
  - 세관에서 현금으로 내거나 계좌로 송금
  -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함
  - 자연재해 시 6개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직불카드 같은 카드로 단말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음<sup>214)</sup>
- 러시아는 품목분류에 의거하여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분류를 기준으로 수입관세율을 적용함
  -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함<sup>215)</sup>

210) FCS Order No. 1125-r of 29 June 2012

211)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41

212)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10, <https://www.alt.ru/tamdoc/> (검색일자: 2017. 11. 12.)

213)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p. 41

214) 최보영 외,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8.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186052](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186052)(검색일자: 2017. 9. 4.)

215) 러시아 신관세법 영문,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78en.pdf>(검색일자: 2017. 11.12.)

- 빈번한 수입관세율 변경으로 인한 무역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타결하기 위해 관세율을 6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기준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받고 있음<sup>216)</sup>
  - 기본 세율의 75%를 적용함
- 수출용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를 수입할 경우 세관 수출용으로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함<sup>217)</sup>
  - 제조업체로서 정부기관을 통해 자재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심사받아야 함
- 송장금액 강제 정정 제도가 있음<sup>218)</sup>
  - 강제로 기준 상품가 이상으로 송장금액을 조정해 관세 및 부가세를 징수함
  - 러시아 중앙세관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체의 세관신고 내용이 상세히 저장되어 있으며, 품목분류한 물품별로 기준 상품가를 책정하고 있음
- 착오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sup>219)</sup>
  -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4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착오로 인해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을 경우, 납입계좌로 자동환급이 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임<sup>220)</sup>
  - 반출 이전에 착오로 인한 물품 가격을 수정할 경우, 변경된 정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함<sup>221)</sup>

---

21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러시아 식품 수출입프로세스』, 2015. 1, <https://www.kati.net>(검색일자: 2017. 11. 23.)

217) 법한판토스, 『러시아 통관제도』, 2013

21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러시아 식품 수출입프로세스』, 2015. 1, <https://www.kati.net>(검색일자: 2017. 11. 23.)

219)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6

220)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10,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2.)

221) 러시아 신관세법 영문,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78en.pdf>(검색일자: 2017. 11.12.)

〈표 3-1-2〉 러시아 통관 지연 요인

	서류	가격 측정	세금	화물검사
세관 통과	-서류 -HS 코드 -허가사항 -인증서류	-계약서 정확성 -가격의 확정 -데이터의 증명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의 확정	-화물검사에 대비해 미리 위험사항을 숙지
세관 지연	-부정확한 서류 -잘못된 HS 코드 -허가서류 부족 -특정 위험품목	-계약서의 불일치 -가격 증명이 불충분 -특정 관리품목	-잘못된 세금계산 -감면에 대한 추가적 인 확인필요 시	-원산지증명서 부정확

자료: QUICK & EASY GUIDE TO CUSTOMS CLEARANCE IN RUSSIA, [http://www.dhl.com/.../g0/express/customs...russia/export\\_import\\_guidelines\\_to\\_russia](http://www.dhl.com/.../g0/express/customs...russia/export_import_guidelines_to_russia)(검색일자: 2017. 5. 5.)

## 2 기타 수입통관

### 가. 개인용품

- 개인이 직접 소지하여 이동한 개인용도 물품에는 비관세 및 기술 규정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개인용도 물품은 소지품, 운송업자가 배송하는 물품, 국제우편물로 분류됨<sup>222)</sup>
- 개인용품은 물품에 따라 이중 시스템(double corridor system)을 통과함<sup>223)</sup>
  - Green corridor를 통과하는 개인용품은 위험도가 낮은 물품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Red corridor를 통과하는 개인용품은 세관에 신고를 해야 통관이 됨

222) 러시아 신관세법 영문,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78en.pdf>(검색일자: 2017. 11.12.)

223)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37,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2.)

- 개인용도 물품의 세관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sup>224)</sup>
  - 개인용도 물품의 세관신고는 여객세관신고서를 적용하여 서면으로 하였으나 전자 신고로 바뀔 예정임<sup>225)</sup>
    - 여객세관신고서
    - 신상 증명 서류(미성년자 포함)
    - 미성년자의 양육인, 후견인 또는 보호인을 확인하는 서류
    - 신고된 개인용도 물품의 가격을 확인하는 서류
    - 운송(선적)서류
    - 개인용도 물품을 임시 반입(반출)했음을 확인하고, 관세납부금 혜택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비관세 및 기술 규정 조치를 제외한 제한 준수를 확인하는 서류
    - 개인용도 운송수단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를 기재한 서류
  
- 개인물품 가격은 세관이 소지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정함
  
- 개인이 현금을 10,000달러 초과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sup>226)</sup>
  - 해외로 10,000달러를 초과 반출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 한 상태로 10,000달러 초과금액을 반입했음이 적발될 시 10,0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됨
  - 처음 현금 반입 시 신고 및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됨

## 나. 특송물품<sup>227)</sup>

- 특송물품으로 통관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준수해야 함
  - 중량은 30kg
  - 최대규격 최대길이 1.5m 이하

---

224) 러시아 신관세법 영문,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78en.pdf>(검색일자: 2017. 11.12.)

225)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37, <https://www.alt.ru/tamdoc/>(검색일자: 2017. 11. 12.)

226)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6, <http://www.motie.go.kr/motie/py/td/tdtotal/bbs/bbsList.do>(검색일자: 2017. 7. 4.)

227) EMS, [https://www.emsonepack.com/user\\_introduce?page=customs#russia](https://www.emsonepack.com/user_introduce?page=customs#russia)(검색일자 2017.11. 15.)

- 최대길이+둘레 3m 이하
- 면세 한도 약 6만루블 이하(우편요금 포함)임
  
- 특송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육가공품
  - 유제품
  - 동물과 관련된 물품
  - 술
  - 예술품
  - 향수
  - 금전과 관련된 것
  - 화재성 및 기타 위험물질(성냥, 폭죽 등)
  
- 우리나라에서 러시아까지 특송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음<sup>228)</sup>
  - 모스크바 시내는 5일에서 7일 소요됨
  - 그 외 지역은 10일에서 14일 소요됨
  - 지연 시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 다. 항공운송

-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 세르메체보 2공항으로 항공운송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1일 임<sup>229)</sup>
  - 주로 중량이나 부피가 적은 화물에 적합함
  
-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은 2017년 4월부터 항공운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정보를 사전에 세관에 제공해야 함<sup>230)</sup>
  - 사전정보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sup>231)</sup>

---

228) EMS, [https://www.emsonepack.com/user\\_introduce?page=customs#russia](https://www.emsonepack.com/user_introduce?page=customs#russia)(검색일자: 2017. 11. 15.)

22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2012. 12

230)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수입제도 모니터링』, 2016. 9

231)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수입제도 모니터링』, 2016. 9

- 항공기 및 비행경로 정보
  - 항공기 국적마크 및 등록마크
  - 항공기 운행사 명칭
  - 출발 항공편 번호
  - 출발지점 및 출발공항 명칭
  - 도착지공항 이전 공항의 실제 출발시간
  - 도착지점 및 목적지공항 명칭
  - 예정된 도착시간
  - 중간착륙지점 명칭(있는 경우에 한함)
  - 항공기 내에 반입 금지 또는 제한되는 상품, 무기, 탄약 존재 항공기 내에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
- 운송서류에는 물품과 관련한 다음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sup>232)</sup>
- 서류 번호
  - 상품명
  - 상품 선적지점 및 하역지점 명칭
  - 수량
  - 상품 총중량(kg)
  - 상품 순중량(kg) 또는 부피
  - 6자리 이상의 상품코드
  - 상품 발송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 사전정보 제공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사전정보 심사 수락이 거부됨<sup>233)</sup>
- 사전에 보낸 정보와 운송서류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세관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재전송해야 함
  - 재전송된 사전정보는 새로운 고유식별번호를 받게 됨

232)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수입제도 모니터링』, 2016. 9

233)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수입제도 모니터링』, 2016. 9

## II. 수출통관절차

### 1 수출 전 준비

---

- 러시아 정부는 2000년부터 Passport of the Deal(거래허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Transaction Passport로 명칭만 바꾸어 시행 중임<sup>234)</sup>
  -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 수출자의 수출대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수출자가 허가증을 신청하고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승인하는 것으로써 수출 통관 시 세관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증서임
  - Passport of Deal의 경우 러시아가 19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해외자본이 이탈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과 세관 당국을 통해 수출상품 및 수출대금에 대한 거래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음<sup>235)</sup>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래허가증(Transaction Passport) 제도는 Passport of the Deal과 마찬가지로 수출허가증 및 수입허가증 두 종류가 있음

---

23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의 passport of deal 제도』, 2003. 9. 16

235) 관련 규정은 Instructions of the Central Bank of Russia and the State Customs Committee of the Russian Federation nos. 86-i and 01-23/26541 of October 13, 1999 on the Procedure for Exerting Currency Control over the Arrival to the Russian Federation of Proceeds from the Export of Commodities 임

- 수출허가증에는 수출자(수출자명, 주소, 거주지등록번호, 등록일, 납세번호), 계약 상대방(수입자명, 수입국명), 주요 계약내용(계약일, 계약통화, 계약금액, 계약만료일, 특이사항 등), 허가에 관한 사항(허가번호, 허가일, 허가금액, 허가유효기간 등) 및 기타 이전 허가번호, 타행 허가번호, 허가일자 등이 표시되어있음
  - 수출허가증을 통해 정부 관계부처에서 수출자의 은행계좌를 조사할 수 있고, 위법 시 수출자와 거래은행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수출자가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화물관세수리서 사본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사본 1부를 세관에 제출, 세관이 수출통관 후 세관에 통지하면 수출절차가 이루어짐<sup>236)</sup>
- 수출자는 수출통관을 위해 세관에 화물관세신고신청서(CCD)와 기타 수출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화물관세신고수리서 사본을 수출자에게 발급해줌
  - 수출자는 거래은행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수출허가증의 발행을 신청해야 함(발행 신청서 2부, 화물관세신고수리서 사본 1부, 수출계약서 원본, 사본 제출)
  - 거래은행은 거래허가증 2부를 승인한 후, 사본 1부를 수출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관세위원회에 제출(관세위원회 정보센터에서는 수출대금영수에 대한 정보 등록)
  - 수출자는 수출통관을 위해 세관에 수출허가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함
- 컨설팅 등 서비스 수출, 무상공여, 구상무역 등일 경우 수출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수출거래(특히, 리스계약에 의한 수출거래) 또한 수출허가서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음<sup>237)</sup>

2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러시아』, 2013. 12

23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의 passport of deal 제도』, 2003. 9. 16

## 2 수출통관절차

- 수출절차는 「EAEU 신관세법」 제4장 통관절차 중 제21절 수출통관절차에서 규정하고 있음
- 수출은 연합국 물품이 공통관세영역 밖으로 반출되어 해당 영역 밖에 위치하기 위한 절차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함
  - 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공통관세영역에서 사실상 반출된 물품은 연합국 물품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
- 러시아의 수출통관절차는 ① 수출신고 및 화물검사 ② 수출세 납부 및 선적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수출세를 납부하는 것이 특징임

### 가. 수출신고 및 화물검사

- 수출신고는 전자적으로 또는 문서로 모두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결정<sup>238)</sup>에 따라 지정된 형식의 전자문서를 작성해야 함
  - 특송화물의 경우 간소화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통관을 진행하고 있음
- 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선화증권, 패키리스트, 계약서, 적하목록, 각종 허가·승인·증명서 및 수출허가서 등임
- 수출신고는 전자신고 또는 서류신고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화물검사는 운송사가 물품을 세관 통제구역으로 이동한 후 진행됨
  - 단, 적재지에서 이루어지는 세관조사 및(또는) 수출세관검사는 감독 구역을 특별히 조성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음

238) Decision of the Board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of 12,11,2013 N 254 Edited on January 16, 2017 'On the structures and formats of electronic copies of customs documents'

- 수출세를 납부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갖추었을 시 기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전권을 확인하는 서류, 대외경제거래를 확인하는 서류, 수출 금지 및 제한 규정의 준수를 확인하는 서류, 대외경제활동 물품목록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에 기반이 되는 서류, 관세납부금 납부 및(또는) 보장을 확인하는 서류; 관세동맹 회원국의 「통화법」에 따라 환율감독 분야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 등
  - 단, 위에서 명시한 서류에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세관 신고서를 기재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타 서류를 별도로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일반적으로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에 수출할 물품 및 수출 신고서와 관련 문서를 제시하여 검사받아야 함
- 임시반출 또는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관세영역 밖에 장치되었던 물품은 해당 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에 실물을 제출하여 확인받지 않아도 수출 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심사·검사결과, 제출 서류가 기준에 부합할 시 3일 내에 세관 통제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해야 함
- 수출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을 장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수입관세납부 혜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입관세의 납부 조건
  - 금지 및 제한 준수 조건
  - 제3국에 대한 수입관세 문제를 규정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국제협약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작성한 통합 물품목록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
  - 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관세동맹 물품은 6개월 동안 보세창고에 보관이 가능함
- 세관은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제출한 후 2시간 안에 수출신고를 접수해야 함
- 세관은 다음의 경우 수출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 허가된 자가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정보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 허용된 형식이 아니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

- 수출신고의 경우 물품 반출 전 및 반출 후 모두 신고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며 정보의 수정 또는 보충은 세관의 허가하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함<sup>239)</sup>
  - 수정해야 할 정보가 관세 또는 물품의 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물품정보, 기술설명, 물품구성요소, 수량, 목적은 수정이 불가능함
  - 수정 가능한 정보는 연락처, 운송 관련 문서, 거래번호, 출발지, 목적지 등임

### 나. 수출세 납부 및 선적

- 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에 대한 수출관세 납부의무는 통관기관에서 세관증명서를 등록한 시점부터 수출 신고인에 대해 발생함
- 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에 대한 신고인의 수출관세 납부의무는 다음의 상황에서 중지됨
  - 수출세 면제 신청이 완료된 후 물품이 반출되었을 시
  - 관세 및 조세의 지불 또는 징수가 완료된 경우 납부의무가 중지됨
  - 물품의 이용 및(또는) 처분과 결부되지 않은 관세·조세 납부 혜택이 제공되었거나 국내소비를 위한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이 수출된 경우
  - 선택한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이동에 대하여 세관신고서를 등록할 시에 발생한 관세·조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선택한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 반출을 거부하는 경우
  - 수출신고의 철회 또는 물품반출의 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 연합국의 법에 따라 물품이 해당 연합국에 귀속되는 경우
  - 일시 수입절차에 따르거나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이 세관에 의해 구류, 압류 또는 행정 위반 또는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반환해야 하는 경우
- 러시아 국내법상에서 물품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을 시, 수출세는 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부해야 함
  - 수출세 납부 절차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국제협약으로 정함

---

239) 수출신고 정보 수정에 대한 규정은 Decision of the Collegium of the Customs Union of December 10, 2013 No. 289 'On Amending and (or) supplementing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for goods and recognizing lost force of some Decisions of the Commission of the Customs Union and the Board of 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임

- 주요 전략물품(원자재 등)은 수출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로 원유, 가스, 금속, 귀 금속, 다이아몬드, 광물, 특정 화학물질 등이 수출세 납부 대상임
  - 스포츠 경기, 훈련, 콘서트, 경기, 축제,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이벤트, 전시, 페어를 비롯하여 일시 수출절차에 따라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세가 면제됨
- 수출세 정산을 위하여 제3국에 대하여 수출세 적용을 규정하는 경제연합 회원국의 협약에 따라 「EAEU 신관세법」으로 정한 이율이 적용됨
    -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 조세 정산을 위하여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을 장치하는 영역 또는 국경을 통해 물품의 불법 이동 사실이 확인된 영역의 법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함
    -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장치된 물품이 다른 경제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것을 경제연합 회원국의 국제협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할(확인할) 경우, 조세 정산을 위하여 물품 소재하는 경제연합 회원국 법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함
    - 경제연합 회원국에 속한 국가들로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세가 면제되며 경제연합 회원국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될 경우 수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세의 반을 송금해야 함
- 초과 납부 또는 초과 징수된 수출세는 이를 징수하는 관세동맹 회원국 또는 수출세 납부와 관련한 담보를 받는 통관기관이 있는 관세동맹 회원국 법에서 정한 절차와 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 러시아는 수출 시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현금 또는 향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부가세 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됨
- 「러시아 신관세법」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 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이동한 물품은 보세운송 통관절차에 따른 장치 없이 관세동맹 관세영역을 경유하여 이동함
- 허위 신고로 물품을 불법 이동한 경우 관세·조세는 통관기관이 물품 이동을 위하여 발급된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지불했어야 했던 관세·

조세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해야함

- 이때 세관신고 시 실제로 지불한 관세·조세의 경우 다시 납부하지(징수되지) 않으며, 초과하여 납부한(징수된) 관세·조세 총액은 신고자에게 환급해야 함
- 수출 통관이 끝난 물품의 반출은 세관신고서 등록일 다음날 1일 내에 통관기관에서 완료해야 함
- 수입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되는 물품 및 임시 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되고 관세동맹 위원회가 그 목록을 정한 물품의 반출은 물품에 대한 신고서 등록일로부터 4시간 내에 통관기관이 완료해야 함
  - 물품 신고서가 통관기관 업무시간 종료 4시간 내에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통관기관의 업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완료해야 함
  - 상기 기간은 세관감독 시간을 포함한 시간임
  - 세관에서 통관이 승인되었다는(issue is authorized) 마크를 수출신고서에 표기하면 물품이 반출됨
  - 전자통관의 경우 자동적으로 물품 반출이 허가됨
- 물품이 수출을 예정하고 장치되었다면 공통관세영역으로의 도착 시기와 똑같은 개수 및 상태로 관세동맹 관세영역에서 반출되어야 함
- 자연적인 손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또는 정상적인 운송, 배송 및 보관 조건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화된 사유로 개수 및(또는) 상태가 변화되는 경우, 또한 운송수단의 잔존연료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개수 및(또는) 상태가 변화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물품의 손실 또는 변화가 사고 또는 불가항력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물품의 담당자는 이 규정을 미준수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 경제연합 회원국에서 유효한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에는 측정방법의 착오로 물품 개수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해당 조항을 미준수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 개별 종류의 물품을 공통관세영역에서의 반출할 시 경제연합 회원국의 법으로 정한 반출지에서만 가능함
- 사고, 불가항력적 행위 또는 물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기타 상황에 의하여 반출지에서 물품 인도가 중단되는 경우, 운송업자는 물품의 보관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한

후 가까운 통관기관에 관련 상황 및 물품 위치장소에 대해 통보해야 함

- 운송업자는 해당 물품을 가까운 통관기관 또는 통관기관이 지시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반하거나 해당 국제수송 운송수단이 파손된 경우 운반을 보장할 의무를 가짐
- 본 규정 준수를 위하여 운송업자 또는 기타 임의의 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통관기관이 보상하지 않음

□ 세관은 관세동맹의 결정<sup>240)</sup>에 따라 물품의 반출을 거부할 수 있음

### 3 기타 수출통관 관련 절차

□ 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하는 외국 물품은 통관기관의 허가를 통해 동등한 물품으로의 교체가 허용되며 이러한 물품 교체는 수출된 물품의 재반입 시에도 적용됨

- 동등한 물품이라 함은 내역,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외국 물품과 일치하는 관세동맹 물품을 의미함
- 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반출된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 부품, 조립을 보증 및 수리하기 위해 반입했을 시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반입된 물품과 일치하는 관세동맹 물품은 손실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한 물품으로 간주함

□ 현지에 사무소나 법인이 없이 외국에 위치한 수출업체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러시아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러시아 현지 세무서의 세무 조사(desk tax audit)를 받아야 함

□ 수출대금은 중앙은행의 특별허가가 없는 한 선적일로 부터 90일 내에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sup>241)</sup>

240) Decision of the Commission of the Customs Union of May 20, 2010 No. 262 'On Instructions on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refusal in the release of goods

24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의 passport of deal 제도』 2003. 9. 16

- 단, 일부기계류, 무기 등 특별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며 정해진 날짜에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세관에서 수출이행제한 또는 수출이행의무 면제의 조치를 취하게 됨
- 거래은행은 수출허가증 서명, 대금결제 등 관련 계약서 수령, 수출대금 영수 관리 등의 의무를 짐
  
- 러시아의 수출자가 운송책임이 있는 상품이 사고, 불가항력(forcemajeure), 기타 선적에 의한 사고 등으로 인해 파손 혹은 유실되었을 경우 수출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거래은행은 수출대금 관리 등 수출허가증에 대한 수수료로 수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수출대금의 0.15%를 징수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청의 직무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2012. 1.  
국세청, 『러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4.  
김연장, 『외국 관세청의 법령 제정·집행 및 그 기능에 관한 연구』, 2012.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수입제도 모니터링』, 2016. 9.  
범한판토스, 『러시아 통관제도』, 2013.  
세계에너지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2016. 10.  
이재영·이철원·민지영, 『한국의 대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투자 현황과 비즈니스환경 분석』, 2017. 5. 2.  
최보영·선주연·방호경·나승권·이보람·최유정, 『GTT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러시아 식품 수출입프로세스』, 2015.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의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러시아』, 201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브릭스 인사이트』, 2013. 10, p.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의 passport of deal 제도』, 2003. 9.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2.  
한국수출입은행,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과 우리의 협력방안』, 2017.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러시아』, 2013. 12.

- Agreement On Rules Of The Origin Of Goods, Originating From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12 December 2008.
- Decision of the Board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of 12.11.2013 N 254 Edited on January 16, 2017 'On the structures and formats of electronic copies of customs documents'
- Decision of the Commission of the Customs Union of May 20, 2010 No. 262 'On Instructions on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refusal in the release of goods.
- Decision of the Board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of August 18, 2017, No. 97.
- Decision of the Board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No. 96 of August 18, 2016.
- Evegeny Vinokurov, "Eurasian Economic Union: Current state and preliminary results,"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Volume 3, Issue 1, 2017.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F THE OTHER PART.
- ITCF, TRADING TODAY IN RUSSIA, "Alexey Aronov ITCF's International Symposium," 2013. 4.
- The federal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10.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 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16.

〈웹사이트 자료〉

- 뉴스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5\\_0000077425&cID=10101&pID=101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5_0000077425&cID=10101&pID=10100)(검색일자: 2017.9.1.)
-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Itemid=1835](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Itemid=1835)(검색일자: 2017.6.20.),  
<http://eng.customs.ru/index.php>(검색일자: 2017.7.25.),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86&Itemid=1908](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86&Itemid=1908)(검색일자: 2017.7.29.),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901&Itemid=2103](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901&Itemid=2103)(검색일자: 2017.11.20.),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576:2012-02-03-09-09-24&catid=188:2011-05-15-16-21-05&Itemid=1830&Itemid=210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576:2012-02-03-09-09-24&catid=188:2011-05-15-16-21-05&Itemid=1830&Itemid=2102)(검색일자: 2017.11.20.)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세관에서 검토한 불복사례),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newsfts&view=category&id=353&Itemid=229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newsfts&view=category&id=353&Itemid=2292)(검색일자: 2017.11.22.)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세관의 불복관련 결정사례),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69&Itemid=256](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69&Itemid=256)(검색일자: 2017.11.12.)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사전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례),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69&Itemid=256](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69&Itemid=256)(검색일자: 2017.11.12.)

러시아경제개발부, <http://economy.gov.ru/minec/main>(검색일자: 2017.7.9.)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https://verification.tpprf.ru/>(검색일자: 2017.11.20.)

러시아 연방 형법, [https://www.kic.re.kr/upload/savedata/research\\_report//html/16-06%EB%9F%AC%EC%8B%9C%EC%95%84%EC%97%B0%EB%B0%A9%ED%98%95%EB%B2%95\\_%EA%B9%80%EC%A0%95%ED%9B%88.htm](https://www.kic.re.kr/upload/savedata/research_report//html/16-06%EB%9F%AC%EC%8B%9C%EC%95%84%EC%97%B0%EB%B0%A9%ED%98%95%EB%B2%95_%EA%B9%80%EC%A0%95%ED%9B%88.htm)(검색일자: 2016.8.28.)

러시아 신관세법 영문,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78en.pdf>  
(검색일자: 2017.11.12.)

러시아의 자동차 역사 - 외국 선진 자동차 메이커와의 합작 적극,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21&wr\\_id=567&page=11](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21&wr_id=567&page=11)(검색일자: 2017.6.22.)

러시아 화장품 규정,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4lzGrJrwBBMJ:www.mfds.go.kr/jsp/common/download.jsp%3Ffileinfo%3DS\\*1\\*8\\_Regulation\\_Russia.pdf\\*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pdf\\*/files/upload/1/TB\\_F\\_INFODATA/22549/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265510\\*2016:03:22%252012:31:36+&cd=1&hl=ko&ct=clnk&gl=kr&safe=vss](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4lzGrJrwBBMJ:www.mfds.go.kr/jsp/common/download.jsp%3Ffileinfo%3DS*1*8_Regulation_Russia.pdf*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pdf*/files/upload/1/TB_F_INFODATA/22549/a03c0fba32c74762338626a657b62231*265510*2016:03:22%252012:31:36+&cd=1&hl=ko&ct=clnk&gl=kr&safe=vss)(검색일자: 2017.12.14.)

- 미국국제무역청, <https://www.export.gov/article?id=Russia-Labeling-Marking-Requirements>(검색일자: 2017.8.21.)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www.bukbang.go.kr/data/eurasia/?pageid=5&mod=document&uid=80>(검색일자: 2017.11.15.)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3/0200000000AKR20170623007600071.HTML?input=1195m>(검색일자: 2017.8.18.)
- 유라시아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rade/catr/nontariff/Pages/ediny\\_perechen.aspx](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rade/catr/nontariff/Pages/ediny_perechen.aspx)(검색일자: 2017.7.11.)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dotp/commonSytem/Documents/%D0%9F%D0%B5%D1%80%D0%B5%D1%87%D0%B5%D0%BD%D1%8C%20%D1%80%D0%B0%D0%B7%D0%B2%D0%B8%D0%B2%D0%B0%D1%8E%D1%89%D0%B8%D1%85%D1%81%D1%8F%20%D0%B8%20%D0%BD%D0%B0%D0%B8%D0%BC%D0%B5%D0%BD%D0%B5%D0%B5%20%D1%80%D0%B0%D0%B7%D0%B2%D0%B8%D1%82%D1%8B%D1%85%20%D1%81%D1%82%D1%80%D0%B0%D0%BD.pdf>(검색일자: 2017.8.28.),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D0%9F%D0%B5%D1%80%D0%B5%D1%87%D0%BD%D0%B8%20%D1%80%D0%B0%D0%B7%D0%B2%D0%B8%D0%B2%20%D0%B8%20%D0%BD%D0%B0%D0%B8%D0%BC%20%D1%80%D0%B0%D0%B7%D0%B2%20%D1%81%D1%82%D1%80%D0%B0%D0%BD%20\(%D1%81%20%D0%B8%D0%B7%D0%BC,%2035%20%D1%80%D0%B5%D1%88\).pdf](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D0%9F%D0%B5%D1%80%D0%B5%D1%87%D0%BD%D0%B8%20%D1%80%D0%B0%D0%B7%D0%B2%D0%B8%D0%B2%20%D0%B8%20%D0%BD%D0%B0%D0%B8%D0%BC%20%D1%80%D0%B0%D0%B7%D0%B2%20%D1%81%D1%82%D1%80%D0%B0%D0%BD%20(%D1%81%20%D0%B8%D0%B7%D0%BC,%2035%20%D1%80%D0%B5%D1%88).pdf)(검색일자: 2017.8.20.),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ett/Pages/default.aspx>(검색일자: 2017.11.15.),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Pages/quotas.aspx>(검색일자: 2017.11.20.),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S%20quota.pdf>(검색일자: 2017.11.20.),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quota%20rice%202018.pdf>(검색일자: 2017.11.20.),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podm/recomendacii/Pages/default.aspx>(검색일자: 2017.11.20.)

- 사전결정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osuslugi.ru/>(검색일자: 2017.11.7.),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quota%202018.pdf>(검색일자: 2017.11.20.)
- 사전결정 신청서,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am\\_sotr/department/tamojDocs/Documents/%D0%9F%D1%80%D0%B5%D0%B4%D0%B2%D0%B0%D1%80%D0%B8%D1%82%D0%B5%D0%BB%D1%8C%D0%BD%D0%BE%D0%B5%20%D1%80%D0%B5%D1%88%D0%B5%D0%BD%D0%B8%D0%B5%20%D0%BF%D0%BE%20%D0%BA%D0%BB%D0%B0%D1%81%D1%81%D0%B8%D1%84%D0%B8%D0%BA%D0%B0%D1%86%D0%B8%D0%B8%20%D1%82%D0%BE%D0%B2%D0%B0%D1%80%D0%B0%20%D0%B2%20%D1%81%D0%BE%D0%BE%D1%82%D0%B2%D1%82%D0%B5%D1%82%D1%81%D1%82%D0%B2%D0%B8%D0%B8%20%D1%81%20%D0%A2%D0%9D%D0%92%D0%AD%D0%94%20%D0%A2%D0%A1%20\(%D0%92%20%D0%A1%D0%9F%D0%98%D0%A1%D0%9A%D0%95%20E2%84%9619\).pdf](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am_sotr/department/tamojDocs/Documents/%D0%9F%D1%80%D0%B5%D0%B4%D0%B2%D0%B0%D1%80%D0%B8%D1%82%D0%B5%D0%BB%D1%8C%D0%BD%D0%BE%D0%B5%20%D1%80%D0%B5%D1%88%D0%B5%D0%BD%D0%B8%D0%B5%20%D0%BF%D0%BE%20%D0%BA%D0%BB%D0%B0%D1%81%D1%81%D0%B8%D1%84%D0%B8%D0%BA%D0%B0%D1%86%D0%B8%D0%B8%20%D1%82%D0%BE%D0%B2%D0%B0%D1%80%D0%B0%20%D0%B2%20%D1%81%D0%BE%D0%BE%D1%82%D0%B2%D1%82%D0%B5%D1%82%D1%81%D1%82%D0%B2%D0%B8%D0%B8%20%D1%81%20%D0%A2%D0%9D%D0%92%D0%AD%D0%94%20%D0%A2%D0%A1%20(%D0%92%20%D0%A1%D0%9F%D0%98%D0%A1%D0%9A%D0%95%20E2%84%9619).pdf)(검색일자: 2017.11.7.)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6, <http://www.motie.go.kr/motie/py/td/tdtotal/bbs/bbsList.do>(검색일자: 2017.11.4.)
- 세계무역기구(WTO) 통계 2016년 기준, <http://stat.wto.org/TariffProfile/WSDBTariffPFView.aspx?Language=E&Country=RU>(검색일자: 2017.8.24.)
- 세르콘스, [http://www.sercons.co.kr/ser/sub3\\_6.php](http://www.sercons.co.kr/ser/sub3_6.php)(검색일자: 2017.11.27.)
-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http://www.keei.re.kr/web\\_keei/pendingissue.nsf/0/4E5267D25DAB15CC4925804700470894/\\$file/21\\_%EB%9F%AC%EC%8B%9C%EC%95%84-%EC%A4%91%EA%B5%AD%20EA%B0%84%20EA%B0%80%EC%8A%A4%EB%B6%80%EB%AC%B8%20ED%98%91%EB%A0%A5%20EB%8F%99%ED%96%A5%20EB%B0%8F%20EC%A0%84%EB%A7%9D.pdf](http://www.keei.re.kr/web_keei/pendingissue.nsf/0/4E5267D25DAB15CC4925804700470894/$file/21_%EB%9F%AC%EC%8B%9C%EC%95%84-%EC%A4%91%EA%B5%AD%20EA%B0%84%20EA%B0%80%EC%8A%A4%EB%B6%80%EB%AC%B8%20ED%98%91%EB%A0%A5%20EB%8F%99%ED%96%A5%20EB%B0%8F%20EC%A0%84%EB%A7%9D.pdf), 제16-36호(검색일자: 2016.10.7.)
- 수산물수출정보 포털, <http://www.kfishinfo.net/kor/view.do?no=141&idx=9312&view=view&pageIndex=1&sv=&sw=>(검색일자: 2017.11.17.)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www.inebsc.com](http://www.inebsc.com)(검색일자: 2017.12.20.)
- 심층분석, 러시아의 인증제도, KOTRA, <http://eiec.kdi.re.kr/policy/domestic/view.jsp?ac=96954>(검색일자: 2017.8.17.)
- 쎄린스코리아, <http://www.cerins.net/trcu-ru/>(검색일자: 2017.8.22.)

- 유라시아위원회 법률포털 홈페이지, <https://docs.eaeunion.org/ru-ru>(검색일자: 2017. 11.20.)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5개 회원국 통합 세관법 서명 완료,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8366&searchNationCd=101093>(검색일자: 2017.11.11.)
- 주한러시아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087&seqno=1101756&tableName=TYPE\\_LEGATION](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087&seqno=1101756&tableName=TYPE_LEGATION), 검색일자 2017.8.28.,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087&seqno=1101756&tableName=TYPE\\_LEGATION](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087&seqno=1101756&tableName=TYPE_LEGATION)(검색일자: 2017.8.22.)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https://www.exportcenter.go.kr/supporter/support\\_info/guide\\_russia.jsp](https://www.exportcenter.go.kr/supporter/support_info/guide_russia.jsp)(검색일자: 2017.6.22.)
- 트레이드네비,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39&natnCd=RU>(검색일자: 2017.10.28.)
- 트레이드네비, 수입요건,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554&sInfmId=TB4RU00000000627&ftaNatnCd=99>(검색일자: 2017.8.20.)
- 트레이드네비, 수입세액계산, <http://www.tradenavi.or.kr/>(검색일자: 2017.11.10.)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http://www.custra.com/content.do?method=getContent&gcd=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18&cmscd=CM0385>(검색일자: 2017.10.28.)
- 한국기계시험연구소, <http://www.iso-ce.co.kr/global/index4.html>(검색일자: 2017.8.28.)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러시아」, 2012. 12, <https://kati.net/mag/selectMagBookView.do>(검색일자: 2017.11.23.)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자: 2017.5.20.),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Classification=11&sNo=1517](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Classification=11&sNo=1517)(검색일자: 2017.9.22.),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referDataView&num=34463>(검색일자: 2017.11.21.), <http://stat.kita.net>(검색일자: 2017.12.28.)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2, <http://keri>.

- 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isIframe=Y&menuid=007001003003&pagesize=10&boardtypeid=206&boardid=58199(검색일자: 2017.7.15.)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검색일자: 2017.9.15.),  
<http://keri.koreaexim.go.kr>(검색일자: 2017.12.20.)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자: 2017.10.29.)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자: 2017.11.12.)
- 코트라 기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6162>(검색일자: 2017.7.10.)
- 코트라 기사, 러시아 원산지증명서,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14036>(검색일자: 2017.11.20.)
- 코트라 기사, 러시아 원산지증명서,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14036>(검색일자: 2017.11.25.)
- 코트라 기사, 러시아 통관제도특성,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94346>(검색일자: 2017.11.23.)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39&natnCd=RU>(검색일자: 2017.6.12.)
- 필수 적합성 평가 히터, 열 절연 재료, 박격포 혼합물 및 안전 요구 사항, 러시아 정부 사이트, <http://government.ru/docs/28218>(검색일자: 2017.8.29.)
-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alta.ru/tamdoc/16bn0124/#st164>(검색일자: 2017.12.12.)
- ALTA 홈페이지 <https://www.alta.ru/taksa-online/en/>(검색일자: 2017.8.31.)
- ALTA Как получить классификационное решение, <https://www.alta.ru/clarres/kak-poluchit/>(검색일자: 2017.11.15.)
- ALTA News, [https://www.alta.ru/laws\\_news/](https://www.alta.ru/laws_news/)(검색일자: 2017.11.16.)
- CIEL, [www.clhs.co.kr](http://www.clhs.co.kr)(검색일자: 2017.11.7.)

- CIS 지역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0/usrReportsView.do?reportsIdx=6497>(검색일자: 2017.8.16.)
- DHL, [http://www.dhl.com/.../g0/express/customs...russia/export\\_import\\_guidelines\\_to\\_russia](http://www.dhl.com/.../g0/express/customs...russia/export_import_guidelines_to_russia)(검색일자: 2017.8.22.)
- Doing business in Russia: Russia trade and export guid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porting-to-russia/doing-business-in-russia-russia-trade-and-export-guide>(검색일자: 2017.8.31.)
- Departmental procedure for appealing decisions, actions (inaction) of customs authorities in the field of customs,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901&Itemid=2103](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901&Itemid=2103)(검색일자: 2017.11.17.)
- Department of Internal Market Protection,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podm/investigations/Measures/Inactive.aspx>(검색일자: 2017.11.17.)
- EAC certification: new TR CU 035/2014 on the safety of tobacco products, <http://www.gostrussia.com/en/2016/05/20/eac-certification-new-tr-cu-0352014-safety-tobacco-products/>(검색일자: 2017.8.22.)
- EAEU 신관세법, <https://www.alt.ru/codex/tkgl29.html>(검색일자: 2017.12.12.)
- EAEU 신관세법,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4. Origin of goods.
- EAEU 신관세법,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5. Customs cost of goods Chapter 61.
- EAEU 신관세법,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23.
- EAEU 신관세법, 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Chapter 61.
- EMS, [https://www.emsonepack.com/user\\_introduce?page=customs#russia](https://www.emsonepack.com/user_introduce?page=customs#russia)(검색일자: 2017.11.15.)
-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http://www.gost.ru/wps/portal/en/activity?WCM\\_GLOBAL\\_CONTEXT=/gost/gost/activity/technicalregulating](http://www.gost.ru/wps/portal/en/activity?WCM_GLOBAL_CONTEXT=/gost/gost/activity/technicalregulating)(검색일자: 2017.8.23.)
- Federal Law of November 27, 2010 No. 311-FZ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https://www.alt.ru/tamdoc/10fz0311/#d1f2e0f2fcff>

- 203130372e(검색일자: 2017.11.16.)
- GOST-R : Certificazione in Russia, <http://www.gost-r.info/gosgortekhnadzor.php>( 검색일자: 2017.11.27.)
- IFCG, <https://www.ifcg.ru/en/information/authorized-economic-operator-in-russia.html>(검색일자: 2017.11.10.)
- Import40, <http://ko.import40.ru/tamozhennoe-oformlenie/metody-opredeleniya-tamozhennoy-stoimosti.html>(검색일자: 2017.10.28.)
- Import40, <http://ko.import40.ru/tamozhennoe-oformlenie/metody-opredeleniya-tamozhennoy-stoimosti.html>(검색일자: 2017.10.30.)
- Import40, <http://ko.import40.ru/tamozhennoe-oformlenie/metody-opredeleniya-tamozhennoy-stoimosti.html>(검색일자: 2017.11.2.)
- KTL,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수출 신속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http://www.ktl.re.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2&pagesize=10&searchselect=boarddesc&searchword=%EC%9D%98%EB%A3%8C&boardtypeid=44&boardid=6591>(검색일자: 2017.8.30.)
-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5003-1 OF MAY 21, 1993 ON THE CUSTOMS TARIFF,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rus\\_e/WTACCRUS48\\_LEG\\_90.pdf](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rus_e/WTACCRUS48_LEG_90.pdf)(검색일자: 2017.8.31.)
- On export customs duties on oil and certain categories of goods produced from oil produced from oil for the period from November 1 to November 30, 2017", <https://www.alt.ru/tamdoc/17bn0068/>(검색일자: 2017.11.16.)
- OECD, <https://data.oecd.org/fdi/fdi-flows.htm>(검색일자: 2017.10.30.)
- Р о с с и й с к а я Г а з е т а, <https://rg.ru/2015/12/01/spisok-dok.html>  
(검색일자: 2017.8.28.)
- PWC, Importing and exporting, <https://www.investinregions.ru/en/investor/useful/import-i-eksport/customs-duties-incentives/>(검색일자: 2017.10.30.)
- PWC, Warehousing and storage,  
<https://www.investinregions.ru/en/investor/useful/import-i-eksport/customs-duties-incentives/>(검색일자: 2017.10.28.)
- PWC, <https://www.investinregions.ru/en/investor/useful/import-i-eksport/customs-duties/>(검색일자: 2017.11.2.)
- PWC, Federal Tax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ax Code of the

- Russian Federation, <https://www.investinregions.ru/en/investor/useful/import-i-eksport/customs-duties/>(검색일자: 2017.11.2.)
- Resolution No. 260 "On the Forms of Customs Documents" of the Commission of the Customs Union dated May 20, 2010,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am\\_sotr/departament/tamojDocs/Pages/default.aspx](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am_sotr/departament/tamojDocs/Pages/default.aspx)(검색일자: 2017.11.7.)
- Receiving a preliminary decision on the classification of goods on the TNEA VED EAE, [http://ved.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982:2016-05-05-11-09-05&catid=129:2016-04-29-12-03-43&Itemid=2026#doc/LAW/172458/4294967295/0](http://ved.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982:2016-05-05-11-09-05&catid=129:2016-04-29-12-03-43&Itemid=2026#doc/LAW/172458/4294967295/0)(검색일자: 2017.11.7.)
- RUSSIA' S ACCESSION TO THE WTO: MAJOR COMMITMENTS, POSSIBLE IMPLICATIONS, <http://www.intracen.org/uploadedFiles/Russia%20WTO%20Accession%20English.pdf>(검색일자: 2017.8.31.)
- Russia Special Economic Zones, <http://eng.russez.ru>(검색일자: 2017.10.10.)
- Russia - Ban of Agricultural and Alimentary Products - From EU, USA, Australia, Canada & Norway, [https://www.hapag-lloyd.com/ar/news-insights/news/2014/08/russia-ban-of-agricultural-and-alimentary-products-from-eu\\_35825.html](https://www.hapag-lloyd.com/ar/news-insights/news/2014/08/russia-ban-of-agricultural-and-alimentary-products-from-eu_35825.html)(검색일자: 2017. 8.20.)
- RUSTANDARD, <http://www.rustandard.com/en/news/69-certificati-dorigine-notizie.html>(검색일자: 2017. 11. 25.)
- Santandertrade, <https://en.portal.santandertrade.com/establish-overseas/russia/foreign-investment>(검색일자: 2017.10.22.)
- Surveys of citizen' s appeals, [http://reception.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section&id=6&Itemid=57](http://reception.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section&id=6&Itemid=57)(검색일자: 2017.11.17.)
- Table of compliance codes TN VED TS 2012 the year and HS EAEC 2017 the year, [https://www.alta.ru/tnved/2017\\_01\\_changes/#20172012](https://www.alta.ru/tnved/2017_01_changes/#20172012)(검색일자: 2017.8.31.)
-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80en.pdf>(검색일자: 2017. 8.28.)
- TN VED Online Service <https://www.alta.ru/tnved/>(검색일자: 2017.11.7.)
-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wipo.int/edocs/>

lexdocs/laws/en/ru/ru080en.pdf 비교하여 작성(검색일자: 2017.8.28.)

The new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or EEU) Customs Code is finally due to take effect on 1 January 2018, <http://www.condor.eu.com/news/new-customs-code-eeu%E2%80%A8/>(검색일자: 2017.12.26.)

П о л у ч е н и е   п р е д в а р и т е л ь н о г о   р е ш е н и я   п о   к л а с с и ф и к а ц и и   т о в а р о в   п о   Т Н   В Э Д   Е А Э С ,  
[http://ved.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982:2016-05-05-11-09-05&catid=129:2016-04-29-12-03-43&Itemid=2026](http://ved.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982:2016-05-05-11-09-05&catid=129:2016-04-29-12-03-43&Itemid=2026)(검색일자: 2017.11.15.)

С т а т ь я   117.   О с о б е н н о с т и   т а м о ж е н н о г о   д е к л а р и р о в а н и я   т о в а р а ,   п е р е м е щ а е м о г о   ч е р е з   т а м о ж е н н у ю   г р а н и ц у   С о ю з а   в   н е с о б р а н н о м   и л и   р а з о б р а н н о м   в и д е ,   в   т о м   ч и с л е   в   н е к о м п л е к т н о м   и л и   н е з а в е р ш е н н о м   в и д е ,  
<https://www.alta.ru/codex-2017/R3/GL17/ST117/>(검색일자: 2017.12.26.)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러시아 편 -

---

발 행 2017년 12월 29일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주)정인애드  
인 쇄  
I S B N 978-89-8191-911-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